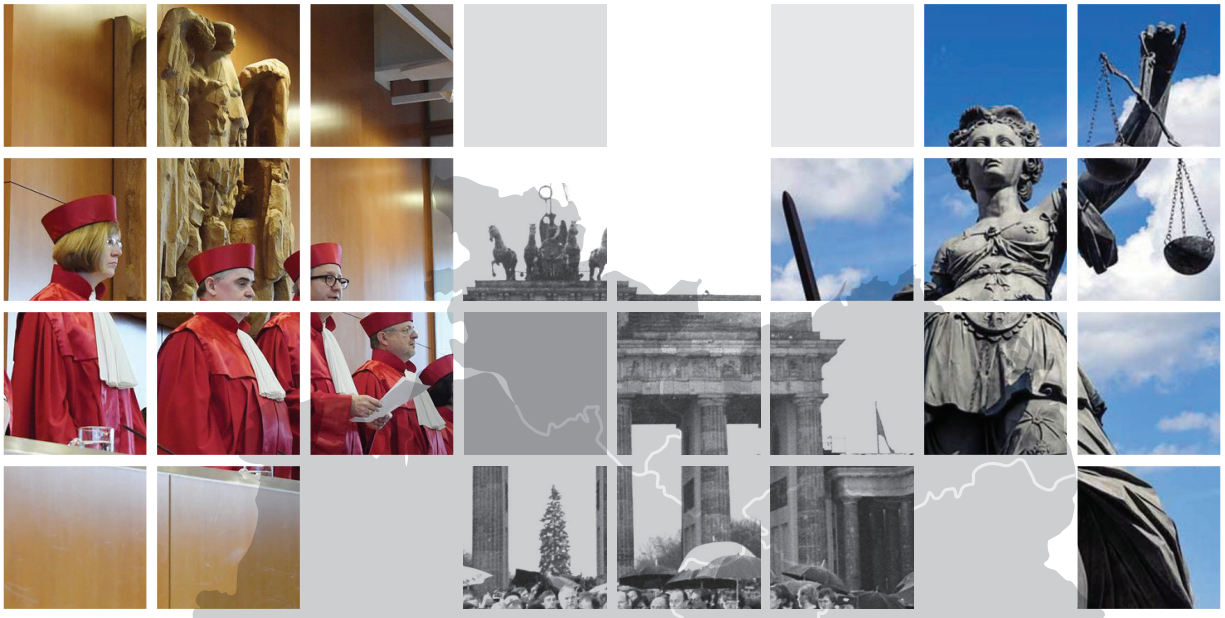


28 독일통일 총서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8

독일통일 총서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케이앤케이컴
전화 070-4773-7761

CONTENTS



I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 12

제1절 서독의 사법제도 12

1. 법원제도 12
2. 검찰제도 19
3. 변호사제도 20
4. 법무부 20

제2절 동독의 사법제도 21

1. 법원제도 22
2. 검찰제도 33
3. 변호사제도 35
4. 법무부 37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비교 37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사법제도 분야 통합 41
제1절 개관 41
제2절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 43
1. 통일단계 이전의 노력들 43
2. 국가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45
3. 통일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50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의 특징 66

제4장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68
제1절 북한의 사법제도와 동독의 사법제도 비교 68
1. 북한의 사법제도 68
2. 동독 사법제도와의 비교 72
제2절 한반도 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73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법제도의 구축

들어가며 78

제1장 사법제도의 이전 81

제2장 사법 인력의 선발과 교육 87

제3장 사법적 과거청산 95

나가며 101

CONTENTS

Ⅲ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04

문서 요약 124

문서 요약(문서번호 1~143) 12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2-1〉 동독 사법제도의 개혁 경과 81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박 원 규
(경찰대학)



제1장

서론

최근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더라도 동서독 정부,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서독의 실질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제도의 통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이란 해당 사회의 문화·역사·인식을 반영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은 문화적·사회적 현상이며, 한 국가의 법을 이해한다면 그 국가가 어떠한 국가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2] 과거 동서독의 경우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분단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동서독 상호 간의 차이가 남북한의 그것에 비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1972년 12월 21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 조약', 소위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동서

1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4; 제성호, 남북통일과 법체계 통합,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 pp.101-102.

2 Ulrich Karpen, '통일, 통합 및 법의 통일-독일과 한국',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23.

독이 상호 교류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직, 인력의 통합·조화·동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우리의 경우 분단 후 70여 년이 지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남북의 사법제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 및 그 제도 또한 상이할 것이다. 향후 있을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상이하게 발전해 온 법원, 검찰 등 사법제도 및 법의 동화(Rechtsanpassung)가 특히 중요하다. 법이란 해당 사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법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舊)동서독의 사법제도 및 통합과정을 살펴본 후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독 및 서독의 사법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통일조약을 중심으로 사법조직, 인력, 법률 등 사법제도 통합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서독의 사법제도 통합 노력이 한반도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

이번 장에서는 독일 사법제도 통합과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법원, 검찰청 등 사법조직 및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인력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제1절 서독의 사법제도

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은 연방제 국가로서 사법권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주의 관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의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독일의 사법제도는 과거 서독의 그것이 큰 변화 없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서독의 사법제도는 현 독일 사법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아래에서는 법원, 검찰청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독의 사법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원제도

1) 개관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우리의 헌법에 해당) 제30조에서는 기본법에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국가 권한(staatliche Befugnisse)의 행사 및 국가 임무(staatliche Aufgaben)의 수행은 주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권한 및 국가 임무에는 사법권도 포함되며, 따라서 각 주는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주는 각급 법원의 설치·조직, 법관·법원 직원의 임용, 사법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3] 서독의 법원은 민사·가사·형사 등에 관한 통상사법과 행정·노동·재정·사회 등에 관한 특별사법으로 재판권이 나뉘어 있다.[4]

2) 법원조직

(1) 연방법원

가)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수호자(Hüter der Verfassung)라고도 불린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92조에 따라 규범통제,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탄핵심판, 기관쟁송, 연방과 주 간의 쟁송, 선거 및 의원 자격에 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실효에 관한 심판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재판부(Senat)로 나뉜다.[5]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며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재판부는 '기본권재판부(Grundrechtssenat)'라고도 불리며, 독일 기본법 제1조에서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등 국민과 국가 간의 기본권에 대한 다툼을 담당한다. 제2재판부는 '국가법재판부(Staatsrechtssenat)'라고도 불리며,

3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27.

4 독일의 법원조직에 대해서는, 문병효, 법원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9권, p.227 이하 참고.

5 연방헌법재판소 초기에는 각 재판부별로 12명의 재판관이 있었으나, 1963년 이후 8명으로 줄었다.

헌법기관 간의 기관쟁송, 정당해산 등을 담당한다.

나)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대법원은 서독의 최고법원(das oberste Gericht)으로서 민·형사사건의 상고심 법원이다. 연방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서독 내에서의 법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방대법원은 민·형사사건에 대해 심판하는 통상법원이며,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등 특별법원과 함께 서독의 최고법원 중 하나라는 것이다(독일 기본법 제95조 제1항). 연방대법원은 주로 각 주의 지방법원(Landgericht)과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담당한다. 여타의 상고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률해석상의 하자(Rechtsfehler)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각 재판부는 1명의 재판장과 6~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재판부의 수는 유동적이며, 법원조직법 제130조에 따라 연방법무부 장관이 그 수를 정한다. 현재는 12개의 민사재판부와 5개의 형사재판부가 있다. 형사재판부는 각 고등법원별로, 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되며, 민사재판부는 특허법, 가족법, 상속법 등 법 영역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다) 연방특별법원

서독에는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행정법원 등 민사·형사 외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 영역에서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했다.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은 비헌법적인 공법상 쟁송을 담당하는 최종심 법원이며, 외국인법, 건축법, 자연보호법, 위험방지법, 환경법, 도로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관할한다. 행정청(Be-

hörde)으로서의 연방행정법원은 법무부에 속했으며, 그의 직무감독을 받았으나, 재판기관으로서의 활동은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은 노동법 관련 사건의 최종심 법원이다. 행정청으로서는 연방노동사회부의 직무감독(Dienstaufsicht)을 받았으나, 재판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연방노동법원은 주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은 세금 및 관세와 관련 쟁송의 최종심 법원이다. 다만 세금·관세 관련 형사사건은 연방재정법원이 아닌 연방통상법원이 담당한다. 1970년까지는 연방재무부의 직무감독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연방법무부로 변경되었다.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은 주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 법원으로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다. 연방사회법원은 그 성격상 연방노동사회부의 직무감독을 받으나, 재판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다.

(2) 주법원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2조에 따라 주 단위에서의 보통 재판권은 구법원(Amtsgericht)[6], 지방법원(Landgericht), 주고등법원(Oberlandesgerichte)에 의해 행사된다.

가) 주헌법재판소(Landesverfassungsgericht)

서독에서는 각 주별로 주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연방주의원칙에 따라 각 주별로 헌법(Verfassungsgesetz)이 있었으며, 이에 상응하여 각 주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 및 법치원칙을 보장하는 별개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만 그 명칭은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 혹은 Verfassungsgerichtshof), 주헌법재판소(Landesverfassungsg-

[6] 우리의 법원조직에 맞게 '지방법원 지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ericht), 국가재판소(Staatsgerichtsfhof) 등 상이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추상적·구체적 규범통제, 기관쟁송,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였다.

나) 구법원(Amtsgericht)

구법원은 통상재판권과 관련된 제1심법원이다. 구법원의 조직 및 설치에 관해서는 연방이 아닌 주에서 담당하였다. 구법원은 대개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되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한 개 이하의 구법원이 있으나,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카를스루에, 슈투트가르트 등에는 여러 개의 구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독의 구법원은 6,000마르크 이하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4년 미만의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사사건, 독촉, 강제경매 등 비송사건을 제1심으로 관할하였다.[7]

다) 지방법원(Landgericht)

지방법원은 구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있는 통상법원으로 민사부(Zivilkammer), 상사부(Handelskammer), 형사부(Strafkammer), 형집행부(Strafvollstreckungskammer)로 구성되었다. 지방법원은 구법원과 주고등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4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6,001마르크 이상의 경우에 제1심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으로 재판할 수 있었다.

라) 주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주고등법원은 민사재판부(Zivilsenat)와 형사재판부(Strafsenat)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원조직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

[7]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32.

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주고등법원이 제1심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밀누설죄, 반역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한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법원조직법 제122조 제2항). 그러나 사건의 성격 및 경중을 고려할 때, 법관 2명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고등법원이 제1심 재판을 담당하더라도 3명의 법관으로 재판할 수 있었다.

주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구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항고사건(Beschwerde),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Berufung) 및 항고사건을 관할하였다. 형사사건은 국가안보사건(Staatsschutzsachen)에 대한 제1심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지방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한 사건에 대한 제3심 재판,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에 대한 제2심 재판을 담당하였다.

마) 특별법원

서독의 각 주에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행정, 재정, 노동, 사회법원 등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이 제1심 사건, 고등행정법원(Oberverwaltunggericht)이 제2심 사건을 관할하였다. 노동사건은 노동법원(Arbeitsgericht)이 제1심 사건, 주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이 제2심 사건을 담당하였다. 사회사건은 사회법원(Sozialgericht)이 제1심, 주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이 제2심을 관할하였다. 재정사건은 여타의 특별법원과는 달리 주재정법원(Finanzgericht)이 제1심 사건을,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이 제2심 사건을 관할하였다.

3) 법원 인력

(1) 법관

서독의 법관은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직업법관(Berufsrichter) 외에 일반 시민들도 참심원(Schöffe), 명예법관(Ehrenamtlicher Richter)의 형태로

재판에 참여하였다. 참심원과 명예법관은 심급 및 법원에 따라 일정 수 재판부에 참여하였으며, 판결에 있어 직업법관과 동일한 평결권을 행사하였다.

직업법관(Berufsrichter)은 1차 국가시험을 통해 졸업하는 대학 법학과정과 2차 국가시험의 합격을 통해 수료되는 수습근무(Vorbereitungsdienst)를 통해 자격을 갖추게 된다(독일법관법 제5조). 1차 국가시험은 대학에서 치르는 전문 분야 시험(Schwerpunktbereichsprüfung)과 주 관할 행정청에서의 필수 분야 시험(Pflichtfachprüfung)으로 이루어진다. 국가고시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주별로 상이하며 주사법시험청(Landesjustizprüfungsamt) 혹은 주고등법원의 시험청(Prüfungsamt)에서 담당한다. 대학과정은 기본적으로 4년이 소요되며, 그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은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수습근무는 2년 동안 이루어지며,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수료된다. 이를 통해 법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서독에서는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법관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을 '완전한 법조인(Volljurist)'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직업법관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여 바로 종신법관(Richter auf Lebenszeit)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법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법관시보(Richter auf Probe)로 임명한 후 3~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관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종신법관으로 임명되었다.[8] 법관시보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임 가능하였으며, 3~4년의 기간 동안은 만약 대상자가 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법관법 제7조에 의거하여 대학 법학교수에게도 법관 자격을 부여하였다.

직업법관 외에 명예법관(Ehrenamtliche Richter)도 있었다. 이들은 법관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다. 형사사건에서는 참심원(Schöffen),

[8]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종신이 아닌 12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상사사건에서는 상사법관(Handelsrichter)으로 불렸다.

(2)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사법보좌관은 1900년대 초반 법관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는 등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부동산등기사건, 강제경매사건 등의 영역에서는 권한이 전면적으로 위임되어 사법제도 내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9] 특히 사법보좌관은 그 사무에 있어서는(sachlich) 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며 법(Recht)과 법률(Gesetz)에만 구속된다(사법보좌관법 제9조). 다만 직업법관의 경우 동의 없이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를 못하는 등 인적인(persönlich) 독립성 또한 보장되었으나, 사법보좌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즉 사법보좌관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의 없이도 전보가 가능했다.

2. 검찰제도

서독에는 각 주의 통상법원 및 연방대법원에 상응하여 각급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구법원에는 구검찰청(Amtsanwaltschaft), 지방법원에는 지방검찰청(Staatsanwaltschaft), 주고등법원에는 대검찰청(Generalstaatsanwaltschaft), 연방대법원에는 연방대검찰청(Generalbundesanwaltschaft)이 설치되었다.[10]

서독의 검찰은 형사소추(Strafverfolgung) 및 형집행(Strafvollzug)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형사소추 등에 있어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의 지시(Weisung)에 구속된다. 이러한 지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것

[9] 정선주, 독일 사법보좌관제도의 발달,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p.146.

[10] 독일은 법원조직법 제141조에 따라 모든 법원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시를 포함한다. 수사지휘 및 공소제기 등 검사의 업무는 사법제도의 일부라는 점에서 검사의 이러한 구속성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형사절차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구검찰청에는 검사 외에도 검찰 업무를 수행하는 구검사(Amtsanwalt)가 있었다(법원조직법 제142조). 구검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사법공무원, 혹은 상급직 경찰관 중에서 약 1년의 추가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구검사는 검사와는 달리 종합대학(Universität)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공무원 관련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임명 가능했다. 이들은 절도, 사기, 상해, 교통사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영역에서는 검사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변호사제도

서독은 통합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교육과정 및 자격 요건은 법관, 검사와 같았다. 즉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한 후 1차 국가시험, 수습근무, 2차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완전한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자격 또한 취득하였다.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연방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구법원,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여야 했다.[11]

4. 법무부

서독의 경우 연방 및 주에 법무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연방주의하에서는

[11] 현재는 연방변호사법 제12a조에 따라 해당지역 변호사회(Rechtsanwaltskammer)의 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사법행정, 형사소추, 재판은 주 관할이었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와 주법무부는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서독 내에서의 법치주의 보장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연방법무부의 각 부서에서는 전통적인 법 영역, 즉 민법, 형법, 상법, 공법 등을 전담하였으며, 다른 부처에서 발의한 법률 및 법규명령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대검찰청 등에 대한 사법행정도 담당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사법행정 업무를 행정 부처인 연방법무부에서 담당한다면 법원을 포함한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본법 제97조에서는 법관은 독립적이며,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독립성이 준수되었다.

서독 각 주에도 법무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방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주법원, 주검찰청에 대한 사법행정과 법률사무를 담당하였다.

제2절 동독의 사법제도

동독의 사법제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법 이론에 기초하여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집행기관(Vollstreckungsorgan)으로 인식되었다. 즉 법을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인식하여 법의 제정·개정뿐만 아니라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도 국가 권력이 독점하였다.[12] 이에 따라 동독에서는 법과 재판의 독립성이 사실상 부정되었으며, 사법부는 당의 지시에 종속되어 있었다.[13]

[12]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42.

[13]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5.

동독 사법기관은 사회주의 국가 이념의 달성을 위해 비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였으나,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당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극단적인 경향을 띠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사전에 검열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은 사법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외에도 동독 독재 정권은 사형제도를 정치적 형사사법(politische Strafjustiz)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4] 다음에서는 동독의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원제도

1) 개관

동독 법원조직법 제45조에서는 법관의 기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관 및 참심원은 그의 판결에서 사회주의적 적법성(Gesetzlichkeit)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적 법을 해석하고, 노동자(Werktätigen)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규율(Staatsdisziplin)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에 비해 동독의 법관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실현 및 당이 정한 국가규율에 종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

[14] BT-Drs.13/11000, Schulß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19.

[15] §45 GVG der DDR : Die Richter und Schöffen sind verpflichtet, in ihrer Rechtsprechung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zu verwirklichen und sich aktiv für die Erfüllung der Aufgäben des Gerichts einzusetzen, das sozialistische Recht zu erläutern, eng mit den Werktätigen zusammenzuarbeiten und das Vertrauensverhältnis zu ihnen ständig zu festigen, aktiv am gesellschaftlichen Leben teilzunehmen und die Staatsdisziplin zu wahren.

원조직법 제17조에서는 법원이 해당 지역 인민회의(örtliche Volksvertretung)와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16] 이에 군법원과 지방법원은 그 지역의 인민회의와 그 기관에서 한 결의내용을 관철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활동을 하여야 했다. 또한 법관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실현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인민회의에 보고하여야 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17조 제2항).

동독 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적 질서, 규율, 안전 보장과 관련된 임무수행에 있어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안전기관(Sicherheitsorgan)과 협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18조).[17]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안전부, 즉 슈타지(Staatssicherheitsdienst, Stasi)와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특히 동독 법원조직법 제3조에서 법원의 재판 및 그와 관련되는 활동은 사회주의적 국가 권력(sozialistische Staatsmacht)의 임무를 해결하는 데 기

16 §17 GVG der DDR : Zusammenarbeit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1) Die Bezirks- und Kreisgerichte sind verpflichtet, in ihrer Tätigkeit zur Durchsetzung der Beschlüsse der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r Organe beizutragen. Sie unterstützen mit ihren Erkenntnissen und Erfahrungen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 Organe bei de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für den Schutz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der Rechte der Bürger, für die strikte Einh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für die Festigung der Sicherheit und Ordnung im Territorium und für die allseitige Förderung gesellschaftlicher Initiativen zur Vorbeugung von Rechtsverletzungen. (2) Die Richter haben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ie sie gewählt haben, Bericht über die Erfüllung Ihrer Pflichten zur Durchsetz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und zur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zu erstatten.

17 §18 GVG der DDR : Zusammenarbeit mit anderen Organen. Die Gerichte arbeiten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den anderen Justizorganen und den Sicherheitsorganen zusammen. Sie unterstützen mit ihren Erkenntnissen und Erfahrungen die anderen Staatsorgane, die wirtschaftsleitenden Organe, Kombinate, Betriebe, Genossenschaften und Einrichtungen, die Vorstände des FDGB und die ander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sowie die Ausschüsse der Nationalen Front bei de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für die Festig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die Durchsetzung von Ordnung, Disziplin und Sicherheit sowie die allseitige Förderung gesellschaftlicher Initiativen zur Vorbeugung von Rechtsverletzungen.

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질서와 사회질서, 사회주의적 경제활동, 사회주의적 재산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과 국가,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계를 신장시키고, 주민의 사회주의적 국가의식 및 법의식을 함양하고, 국가기관, 경제기관의 장 등이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조).

한편 동독 헌법 제95조에서는 법관은 그들을 선출한 인민대표자 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8] 즉 동독 인민회의는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성 보장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2) 법원조직

동독은 서독과는 달리 별도의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원화된 법원(Einheitsgericht)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동독의 법원은 최고법원(Das oberste Gericht), 지구법원(Bezirksgericht), 군법원(Kreisgericht)으로 구성되었다. 법원조직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일치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즉 1개의 지구에 하나의 지구법원이, 1개의 군에 하나의 군법원이 설치되었다.[19] 이 외에도 동독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사회적 법원(gesellschaftliches Gericht)이 있었다.

[18] Verfassungsgesetz DDR Art. 95 : "Alle Richter, Schöffen und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werden durch die Volksvertretungen oder unmittelbar durch die Bürger gewählt. Sie erstatten ihren Wählern Bericht über ihre Arbeit. Sie können von ihren Wählern abberufen werden, wenn sie gegen die Verfassung oder die Gesetze verstoßen oder sonst ihre Pflichten gröblich verletzen".

[19]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6.

(1) 군법원(Kreisgericht)

동독의 군법원은 서독의 구법원(Amtsgericht)에 상응하는 최하급심 법원이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행정구역에 하나의 군법원이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군법원이 관할하기도 하였다. 동베를린과 같이 하나의 도시 안에 우리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구별로 하나의 군법원이 설치되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22조). 서독의 구법원과는 달리 단독재판부는 없었으며, 한 명의 법관과 두 명의 참심원으로 재판부가 구성되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25조 제2항).

군법원은 민사·가사·노동·형사사건을 1심으로 관할했으며, 동독 후반부에는 행정 관련 사건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Einspruch)에 관해서도 재판하였다. 또한 사회적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가능선언(Vollstreckbarkeitserklärung)도 담당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23조).

한편 군법원의 법원장에게는 많은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동독 법원조직법 제26조에서는 법원장이 군법원을 이끌고, 재판에 참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군법원이 검찰, 국가안보국 등 다른 국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 법원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즉 군법원 법원장은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및 국가 권력의 지침에 의거하여 재판부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독 군법원은 주민들에게 법률정보(Rechtsauskunft)를 제공하였다. 즉 법원조직법 제28조에 따라 군법원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적 법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의 실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지구법원(Bezirksgericht)

지구법원은 동독의 행정구역에 상응하여 동베를린을 포함한 각 지구(Bezirk)별로 1개씩 설치되었으며, 총 15개의 지구법원이 있었다. 지구법원은 분단 이전의 지방법원(Landgericht)의 역할을 하였다.

지구법원은 군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제2심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으로 재판하였다. 예를 들면 동독의 주권, 평온을 해치는 죄, 모살, 기타 사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지구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 등을 지구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0조 제1항). 또한 민사·가사·노동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지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0조 제2항).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사건은 라이프치히 지구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서 전속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지구법원의 재판부는 Senat라고 불렸으며,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직업법관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장은 1명의 법관을 추가할 수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2심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 1명과 직업법관 2명, 총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제2심이라 하더라도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참심원이 재판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3조 제3항).

(3) 최고법원(Oberstes Gericht)

최고법원은 동독 사법부의 최고재판기관(höchstes Rechtsprechungsorgan)으로서 베를린에 설치되어 있었다. 최고법원은 동독 사법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공조하여 여타의 하위법원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20]

최고법원은 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을 관할하는 제2심으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검찰 총장(Generalstaatsanwalt)이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1심이자 종심재판을 하였다. 이 외에도 최고법원, 지구법원, 군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파기법원(Kassationsgericht)으로서의 기능도 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7조 제1항). 또한 최고법원은 재판 기능 외에도 내각(Ministerrat)의 요청이 있으면 법률자문서(Rechtsgutachten)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7조 제2항).

한편 최고법원에는 합의기구(Kollegialorgan)로서 총회(Plenum)와 부장회의(Präsidium), 형사·민사·가사·노동 등 분야별 협의체(Kollegien)가 설치되어 있었다. 총회(Plenum)는 최고법원 법원장·부법원장·법관, 지구법원장, 고등군사법원(Militärobergericht) 법원장으로 구성되었으며(동독 법원조직법 제39조 제3항),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 개최되었다.

최고법원은 각급 법원들이 법률을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Richtlinie)'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침은 동독의 모든 법원을 구속하였다. 지침 제정 신청권은 최고법원 법원장,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FDGB, Freier Deutscher Gewerkschafsbund) 대표에게 부여되었으며,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 대표는 총회 구성원은 아니었으나 총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총회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최고법원의 참심원 3명이 참가하도록 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39조 제4항). 부장회의(Präsidium)는 법원장, 부법원장, 고등법관(Oberrichter)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0조 제5항). 부장회의는 총회 및 총회에서 제정될 지침을 준비하였으며, 결정(Beschluss)을 통해

[20]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6.

각급 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방향을 설정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0조 제1항). 또한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최고법원에 제기된 파기신청과 국민청원을 검토하였다.

형사·민사·가사·노동 등 분야별 협의체(Kollegium)는 총회 및 부장회의의 지침 및 결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임무를 담당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1조 제1항). 협의체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등법관, 법관들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협의체 내에 재판부(Senat)가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장(고등법관) 1명과 2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고, 노동사건의 경우 1명의 재판장과 1명의 법관 그리고 3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고법원 재판장은 최고 인민회의(Volkskammer)와 국가평의회(Staatsrat)가 설정한 임무들의 시행과 다른 중앙 국가 기관, 특히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기관장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었다(동독 사법조직법 제42조 제1항). 이를 볼 때 동독의 사법부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슈타지 등 중앙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그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적 법원(Gesellschaftliches Gericht)

동독 기본법 제92조에서는 최고법원, 지구법원, 군법원 외에 '사회적 법원'이 법률이 부여한 임무 범위 내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사회적 법원은 군법원의 하위법원으로 군법원의 지도를 받았다.[21]

사회적 법원의 임무 및 구성 등에 관해서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법원법(Gesetz über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회법원법 제3조에서는 사회주의적 합법성(sozialistische Gesetzlichkeit)의 관철과 질서, 규율,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21]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6.

적 법원의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 법원은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국가의식 및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사회적 법원은 분쟁위원회(Konfliktkommission)와 중재위원회(Schiedskommission)로 구분되었으며,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을 담당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인들은 직업법관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 독립적이고,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었다(사회적법원법 제2조 제1항). 통상법원과는 달리 이들에 대해서는 '참심원', '명예법관'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률에서는 단지 '위원(Mitglieder)'이라고 규정하였다. 사회적 법원의 위원은 18세 이상으로서 직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 모범(Vorbild), 존경(Achtung), 신뢰(Vertrauen)를 받는 사람 중에서 선출하였다(사회적법원법 제6조 제1항). 이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인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사회적법원법 제6조 제2항). 사회적 법원의 위원들은 직접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사회적 법원은 노동사건, 수사기관·검찰 등에서 이송한 경미한 죄, 질서위반 행위, 단순 민사사건(einfache zivilrechtliche Streitigkeiten), 교육의무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였다(사회적법원법 제13조, 제14조). 또한 사회적 법원 위원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법률자문을 해주었다(사회적법원법 제17조 제1항).

사회적 법원은 신청이나 이송결정(Übergabeentscheidung)에 근거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의 참여하에 숙의하고(beraten), 결정(entscheiden)하였다(사회적법원법 제18조). 이러한 절차는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사회적 법원의 판결은 결정(Beschluss)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했다(사회적법원법 제19조). 즉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 중 경미한 분쟁 사안들은 정식 법원이 아닌 사회적 법원에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 항소하는 경우에만 군법원 등 통상의

국가법원으로 이관하였다.[22]

3) 법관 양성 및 선발

(1) 법관 양성

1950년대까지는 동독에서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2차에 걸친 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 베를린, 예나, 라이프치히, 할레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한 후 1년간의 법관시보(Richterassistent)로 실무수습을 수료하면 직업법관 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디플롬 법조인(Diplomjurist)' 제도를 운용하였다. 즉 독일의 전통적인 학위제도인 디플롬을 법학 분야에서 취득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법관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동독에서는 단지 4개의 법과대학이 있었으며, 매년 약 36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다.[23] 1960년대에 들어서는 각 대학별 전문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는 법관, 변호사, 공증인, 예나대학에서는 검사, 라이프치히와 할레대학에서는 경제법률가를 양성하였다. 즉 서독은 '완전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나, 동독에서는 법관, 검사 등 직역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였다. 한편 베를린, 예나, 라이프치히, 할레 등 종합대학 외에 포츠담-아이헤 국가공안부대학(Hochschule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in Potsdam-Eiche)에서도 슈타지 간부와 함께 디플롬 법조인도 양성하였다. 그러나 국가공안부대학에서는 실질적인 법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기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통일조약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 보고서에

22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6.

23 M. Löwisch, Juristenausbildung in Deutschland, Ritsumeikan law review: International edition 7 (1992), S. 71

따르면 포츠담-아이헤 국가공안부대학은 단지 법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24] 또한 국가공안부대학 외의 법과대학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 등 다수의 비법학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했다.[25]

(2) 법관 선발 및 해임

동독 헌법 제95조에 따라 모든 법관, 참심원은 인민회의(Volksvertretung)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으며, 그들을 선출한 자들에 대해 활동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들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민회의 및 주민은 그들을 해임할 수 있었다(동독 헌법 제95조).

비록 헌법에서 법관과 참심원, 사회적 법원의 위원은 그 판결에 있어 독립적이며, 헌법과 법률, 기타 법규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동독 헌법 제96조 제1항),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이 법관의 선출 및 법원조직 운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의 결정 및 지침은 사법조직의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26] 특히 동독의 상당수의 법관들은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다고 한다. 즉 동독은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통합의 원칙(Prinzip der Gewalteneinheit)에 따라 사법과 주민 간의 통합이 요구되었으며, 주민의 대표자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이 사법기능 전체를 지배하였다. 특히 헌법에서는 주민 및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신의를 준수하는 사람만이 법관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동독 헌법 제94조 제1항).

---

24 BT-Drs. 11/7817, S. 23.

25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18.

26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3. Kap. A. II.

군법원(Kreisgericht)과 지구법원(Bezirksgericht)의 법원장 및 법관은 각급 인민회의(Volksvertretung)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의회의 임기와 동일하였으며, 다음 선거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6조). 참심원은 노동자 총회(Versammlungen der Werktätigen)에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직업법관과 동일하였다. 새로 구성된 각급 인민회의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장, 법관, 참심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6조 제4항).

최고법원(Oberstes Gericht)의 법원장, 부법원장, 법관, 참심원은 국가평의회(Staatsrat)의 추천에 따라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가 선출하였다. 이때 인민회의는 새로 구성된 지 3개월 이내에 법원장, 법관 등을 선출하여야 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48조). 여타 재판부의 참심원과는 달리 노동재판부(Senat für Arbeitsrecht)의 경우에는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FDGB, Freier Deutscher Gewerkschafsbund) 연방대표가 국가평의회에 추천을 하고, 다시 국가평의회가 인민회의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임기 내라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하였다.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법원장과 법관은 법무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최고법원의 법원장, 부법원장, 법관, 참심원은 국가평의회의 제의에 따라 인민회의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53조 제1항).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참심원은 해당 법원의 법원장의 제의에 따라 각급 인민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53조 제2항).

이러한 직업법관의 선출 및 해임 절차는 법관의 독립성에 있어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관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반해, 동독의 법관은 국가 권력 및 당의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반민주적인 기관(anti-

demokratische Institution)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27]

2. 검찰제도

동독의 검찰은 법원조직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지구검찰청, 군검찰청으로 구성되었다. 서독과는 달리 동독의 검찰조직은 중앙집권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검찰청은 검찰 총장(Generalstaatsanwalt)의 지휘를 따라야 했으며, 검찰 총장은 국가평의회의 추천으로 인민회의가 선출하였다(동독 검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임기는 그를 선출한 인민회의와 동일한 5년이었다. 검찰 총장은 인민회의와 국가평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졌으며, 인민회의는 언제든지 그를 해임할 수 있었으며, 국가평의회는 임시해임조치(vorläufige Abberufung)를 명할 수 있었다(동독 검찰청법 제5조 제3항).

동독 검찰은 '단일지휘의 원칙(Prinzip der Einzelleitung)'에 따라 검찰 총장이 모든 검찰청 및 검사에 대하여 지시와 지휘를 하였다(동독 검찰청법 제6조 제1항). 이뿐만 아니라 검찰 총장은 인민회의 회의 및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다른 국가 기관에 법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하고, 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다(동독 검찰청법 제7조).

또한 동독 검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형사소추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 경제 기구 등에 대한 '일반적 적법성 감독권한(Allgemeine Gesetzlichkeitsaufsicht)'까지 가지고 있었다(동독 검찰청법 제3조). 이에 검찰은 합법성의 준수, 통일된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국가 기관, 경제 기구, 노동조합 등이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관철하고 질서 및 안전 보장이라는 책임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감독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독 검찰청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검찰은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중앙기관(ein zentrales Organ)이

[27]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3. Kap. A. II.

며, 당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적법성 준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다.[28]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검찰의 핵심적인 임무인 형사소추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동독 독재 정권에서는 검찰을 형사소추기관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당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의 검사시보를 거친 후 검찰 총장이 임명하였다.[29] 앞서 법관의 양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듯이 동독에서는 법관, 검사, 변호사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역별로 '디플롬 법조인'을 양성하였으며, 서독과는 달리 별도의 국가고시 없이 법학 영역에서 디플롬 학위를 취득하면 법관, 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특히 동독의 4개 법과대학 중 예나대학에서 검사 양성을 담당하였다.

동독 검찰청법 제35조에는 검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급(Arbeiterklasse)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신의를 준수하고,

---

28 §1. (1) Die Staatsanwal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ein zentrales Organ der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Sie wacht in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auf der Grundlage der Verfassung, der Gesetze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strikte Einh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2) 동독 검찰청법 제1조 : "(1) Die Staatsanwal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st ein zentrales Organ der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Sie wacht in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auf der Grundlage der Verfassung, der Gesetze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strikte Einh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2) Die Staatsanwaltschaft leitet den Kampf gegen Straftaten. Sie ist verpflichtet, gegen Rechtsverletzer die gesetzlich vorgesehenen Maßnahmen zu ergreifen, und sichert, daß Personen, die Verbrechen oder Vergehen begangen haben, vor Gericht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Sie wirkt darauf hin, daß Rechtsverletzungen anderer Art von den zuständigen Organen oder Leitern entsprechend den Rechtsvorschriften geahndet werden."

29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57.

높은 정도의 정치적·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임명한다. 모든 검사는 검찰 총장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되며, 대검찰청 부총장은 검찰 총장의 추천을 통해 국가평의회에서 임명한다(동독 검찰청법 제37조). 동독의 검사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지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다(동독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검사는 사회주의 합법성을 실현하고, 노동자 계층과 협력하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동독 검찰청법 제36조 제2항). 법률적·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식'도 갖춘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동독의 검찰조직은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변호사제도

변호사는 법과대학에서 디플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간 변호사시보로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각 지역 변호사회(Kollegium)의 입회결의(Aufnahmebeschluss)가 있으면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사회주의통일당, 슈타지 등에서 사전 검열을 한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동독의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30] 변호사회를 통한 활동 외에도 법무부의 허가를 통해 개별 변호사(Einzelanwalt)로도 등록 가능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동독변호사법(Gesetz über die Kollegien der Rechtsanwälte der DDR) 제1조에서는 변호사는 변호활동에 관해 '자발적으로' 협회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7조에서도 변호사회의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30]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S. 152.

규정하였다. 또한 제10조에서는 변호사회 스스로 변호사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사회에 가입된 경우에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31] 이러한 규정을 볼 때 동독의 변호사 활동은 법관과 검사에 비해 어느 정도 독자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회를 통제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특히 법무부는 변호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권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회의 정관도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변호사회의 결의가 헌법, 법률 등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에 부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독의 변호사회는 법무부에 의해 중앙 집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32]

동독의 변호사는 법원, 검찰청 등과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정부기관, 특히 국가공안부(MfS)와 협력할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비공식적으로 국가공안부와 협력을 하였으며, 그들에게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33] 이에 국가공안부는 변호사를 다양한 동독 주민들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변호사들은 국가공안부와의 협력의 대가로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에 동독 사회에서는 국가공안부 출신의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도 존재하였다고 한다.[34]

한편 동독의 변호사 숫자는 서독에 비해 매우 적었는데, 1990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15개 변호사회에 602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19명의

31 Festschrift für Karlheinz Quack zum 65. Geburtstag am 3. Januar 1991, S. 697f.

32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S. 152.

33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S. 154.

34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S. 154.

개인 변호사가 있었다고 한다.[35]

4. 법무부

동독의 법무부는 최고법원, 대검찰청, 국가공안부 등 여타 기관에 비해서는 미약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최고법원을 제외한) 군법원, 지방법원을 지도하고, 이들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21조 제1항). 또한 법무부는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의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각료회의(Ministerrat) 및 최고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최고법원에 대하여 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었다(동독 법원조직법 제21조 제3항). 법무부는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고법원, 대검찰청, 국가공안부와 협력하여야 했다.

이 외에도 동독 법무부는 군법원과 지구법원 법관, 참심원의 수를 정하였다. 반면 최고법원의 법관의 수는 최고법원장의 제안으로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였다. 이를 볼 때, 동독 법무부는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관여하였고, 최고법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비교

지금까지 구동서독의 사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동서독 사법제도의 차이점은 크게 사법조직, 인력, 독립성에 있다.

첫째, 사법조직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제의 여부에서 기인한다. 서독은 연방주의하에 연방 사법조직과 주 사법조직을 구분하고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반해, 동독은 기존의 연방제 조직을 폐

[35] Helmut Irmen, Stasi und DDR-Militärjustiz, 2014, S. 153.

지하고 법원, 검찰청, 법무부 등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주고등법원, 구법원 등의 연방 및 주 법원조직과 이에 상응하는 검찰조직이 존재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도 연방법무부와 주법무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동독에는 별도의 연방법원, 주법원 구분 없이 최고법원, 지구법원, 군법원의 단일화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검찰청도 법원에 상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별도의 주가 없었기에 동독에는 하나의 법무부만 설치되어 있었다.

둘째, 특별법원의 설치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서독에는 통상법원 외에 연방 및 주에 각각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동독에는 별도의 특별법원이 없었으며 최고법원, 지구법원, 군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을 관할하였다. 동독의 경우 노동사건은 '사회적 법원'에서 다수 처리하였으나,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이 분쟁에 대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적 의미에서의 법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외에도 서독에는 연방 및 주에 헌법재판소가 있었으나 동독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서독은 '완전한 법조인(Volljurist)' 양성을 목표로 법과대학에서 수학 후 1차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실무수습을 거치게 된다. 그 후 2차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완전한 법조인으로서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즉 서독은 법조인 교육을 통해 모든 법조 분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예비 법조인에 대한 2단계에 걸친 시험을 거친 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였다.[36]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서독과는 달리 법과대학에서 디플롬 과정만 수료하면 실무수습을 거

[36]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17.

친 후 법조인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즉 법과대학 디플롬 학위 취득이라는 1단계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위 '디플롬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동독에서도 실무수습 후 서류 시험을 통과하여야 했지만, 서독의 제2차 국가시험과는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서독과는 달리 법학교육 과정에서 특정 법조영역만을 특화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넷째, 사법부의 독립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서독의 법원조직은 행정부,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었으며 그들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였다. 특히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년을 보장하였으며, 법관의 동의 없는 전보도 할 수 없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과 국가 권력에 예속되어 있었다.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슈타지 등 국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했다. 또한 법관은 각급 인민회의가 5년이라는 임기인 동안만 선출하였으며, 임기가 경과하면 재차 법관 선출 절차를 거쳤다. 임기 이내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법관은 언제든 해임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웠다. 검사의 경우에도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보다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일반적 적법성 감독 권한이 더 우선시되었다. 즉 슈타지라는 비밀정보·경찰기관과 같이 사회주의통일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조직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동서독의 사법제도는 40여 년이라는 분단의 기간 동안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동독의 사법제도는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인력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는 국가 체제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통합이 중요하였으며, 동서독 간 통일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동독의 사법제도와 법률을 어떻게 서독의 그것에 동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노력이 이



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국가조약, 통일조약 등을 중심으로 동서독 사법제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사법제도 분야 통합

제1절 개관

1989년까지 동독의 사법은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사법기관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즉 사회주의통일당은 법률 제정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재판에도 개입하였다. 또한 법관·검사 등 사법 각 영역에서 당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37] 즉 동독의 독재 정당은 입법부터 행정, 사법까지 모든 국가 영역에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관,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또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회(Kollegien)에 속해 있었으며, 협회는 개별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독 법무부는 변호사회를 감독하고 변호사회가 한 결의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37] https://deutsche-einheit-1990.de/ministerien/ministerium-der-justiz/die-reformierung-des-justizwesens/

있었다.

동독 사법제도의 변화는 1989년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동독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총리는 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선언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 공안에 관한 죄 등 정치적 형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인민회의 자유총선 및 사법 각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SED 관련자들의 반발로 즉각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 초에 이르러서야 모드로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한스-요아힘 호이징어(Hans-Joachim Heusinger)에서 쿠르트 뷘쉐(Kurt Wünsche)로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1990년 3월 인민회의 자유총선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인사교체만 이루어졌다.

1990년 3월 18일 인민회의 총선 이후부터는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것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사법 영역에서는 서독지역의 법체계를 동독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작업은 동독 법무부가 주도했으며, 1990년 5월에는 서독지역의 법무부 조직에 맞추어 동독지역에서도 법무부 조직을 재편하였다.

법률동화(Rechtsanpassung)를 위한 첫 단계는 1990년 5월 18일 체결된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소위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조약은 동독 형법을 서독의 형법에 맞게 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정치적 형법은 조약이 발효하는 1990년 7월 1일까지 폐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정치적 형법(politisches Strafrecht)이란, 서독으로의 탈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비판 등을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을 의미한다.

1990년 7월에는 동독 법관법(Richtergesetz)이 개정되었으며, 특히 제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동독의 법원조직 또한 새로운 질서에 맞게 개편되어야 했다. 이는 당시까지 존재하던 최고법원(obertes Gericht)-지구법원(Bezirksgericht)-군법원(Kreisgericht)이 폐

지되고 새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7월 22일 제정된 '동독에서의 주(州) 구성에 관한 조직법(Verfassungsgesetz zur Bildung von Ländern in der DDR)'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8] 이 법률에 따라 동독의 군법원과 지구법원은 구법원(Amtsgericht), 지방법원(Landesgericht),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으로 재편되었으며, 최고법원은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과 함께 폐지되었다.

제2절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

이번 절에서는 동서독 사법제도의 통합과정을 통일단계 이전의 노력, 특히 기본조약의 체결 그리고 통일단계에서의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의 체결과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단계 이전의 노력들

1) 사법공조 관련 법 규정

동서독은 1989~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던 시기 이전에도 사법공조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서독은 1953년 5월 2일에는 '형사사건에 있어 내독 간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hilfe und Amtshilfe in Strafsachen)'을 제정하여 동서독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에서는 동독과 서독 간의 관계를 국외가 아닌 국내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는 1. 연방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 2. 사법공조가 법치국가적 원칙에 부합할 것, 3. 사법공조로 인해 대상자가 법치국가적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되었다(형사사건에 있어

[38] 이 법률의 약칭은 '주 도입에 관한 법률(Ländereinführungsgesetz)'이다.

내독 간 사법공조 및 행정공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외에도 동독에서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또한 만약 대상자 인도에 대한 불허 결정이 있다면 본안심리를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이유로 인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이러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허가는 관할 대검찰청의 장이 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한편 동독도 서독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외국에 대한 동독법원의 국가 간 사법공조에 관한 법무부 지침'을 제정하였다. 사법공조에 있어 동독과 서독의 차이점은 서독은 상호 사법공조를 내독 간의 문제, 즉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 내부의 문제라고 파악한 반면, 동독은 국제사법공조의 하나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39] 또한 서독 측에서 사법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독 법무부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사법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사법공조는 사법공조를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사법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상 사법공조를 어렵게 하였다.

2) 기본조약

1972년에는 '서독과 동독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소위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혹은 Grundvertrag)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서독에서는 이듬해 5월 11일, 동독에서는 6월 13일 인준, 1973년 6월 21일 발효되었다. 기본조약

[39]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66.

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3조 및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가 있었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동등한 권리하에 정상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제1조), 갈등은 평화적 수단만을 통해 해결하며(제3조),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대표해서는 안 되며(제4조), 각자의 권력은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제6조),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학술, 기술, 무역, 사법, 문화, 스포츠, 환경 보호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제7조), 양국이 상대방의 정부 소재지에 대표부를 설치하는(제8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4호에서는 법률관계, 특히 민법과 형법 영역에서의 법률관계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고(einfach)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zweckmäßig) 추가적인 조약을 통해 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은 서로 간의 이념, 사법 현실의 차이 등을 이유로 사법공조를 위한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통일 전까지도 지속되었다.[41]

2. 국가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1) 국가조약 개관

독일의 통일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법통합을 위한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동서독 간의 사법통합은 1990년 5월 국가조약(Staatsvertrag)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조약은 '통화·경제·사회동맹에 관한 국가

[40] 기본조약 제7조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4호: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erklären ihre Bereitschaft, im Interesse der Rechtssuchenden den Rechtsverkehr, insbesondere in den Bereichen des Zivil- und des Strafrechts, vertraglich so einfach und zweckmäßig wie möglich zu regeln".

[41]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pp.67-68.

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의 약어로, 독일통일의 신속한 완성을 위하여 통화·경제·사회동맹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조약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조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에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했으며, 따라서 국가조약은 사법통합에 관한 일반원칙들에 대한 합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화를 동독지역에서도 도입함으로써 공동의 통화지역을 형성하고(국가조약 제1조 제1항), 사유재산, 자유경쟁 등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주의(die Soziale Marktwirtschaft)가 공동의 경제 질서임을 선언하였다(국가조약 제1조 제2항). 특히 국가조약은 동독지역에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적인 기본질서를 도입하고, 이에 반하는 동독 헌법 규정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선언하였다(국가조약 제2조). 국가조약의 명칭과 기본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약은 통일의 전 단계의 경제적 통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추구하는 통화, 경제, 사회동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법 및 법률통합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가조약 제4조에서는 법률조정(Rechtsanpassung)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의 법률들을 제2조에서 밝힌 원칙들, 즉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국가적인 원칙들에 부합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제3부속의정서에서는 통화동맹을 결성하기 전까지 폐지 혹은 개정하여야 할 법규에 대해, 제4부속의정서에서는 새로 제정하여야 할 법규들을 규정하였다(국가조약 제4조 제1항). 또한 제5부속의정서에서는 서독지역에서 개정되어야 할 법규를, 제6부속의정서에서는 서독지역에서 향후 제정

할 규정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국가조약 제4조 제2항). 제7부속의정서에서는 개인정보 전달 시 적용되는 기본원칙들을 규정하였다(국가조약 제4조 제3항). 또한 제6조에서는 국가조약을 통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 보호(Rechtsschutz)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에서 노동법원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중재소(Schiedstelle)에서 분쟁에 대해 결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국가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동서독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되,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법원(Schiedsgericht)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국가조약 제7조). 국가조약에 대한 중재법원은 법원장과 4명의 위원(Mitglieder)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약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동서독 정부는 각각 2명의 위원과 2명의 위원대행을 임명하여야 했으며, 법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법원장 및 위원은 여타의 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어떠한 지시에도 따를 의무가 없었다. 제8부속의정서에서는 중재법원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듯 국가조약은 통화 및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통합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동화 및 조화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Gemeinsames Protokoll über Leitsätze)', 부속의정서(Anlage) 등에서 사법통합에 관한 내용들 또한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2) 국가조약에 근거한 사법통합

(1) 기본원칙

국가조약 중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에서는 동서독 통합에 있어서 일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의 법률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주의, 사회국

가적 질서 및 유럽공동체(Europäische Gemeinschaft) 법질서에 부합하게 새로 규정되어야 했다. 특히 동독에서는 법원, 검찰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사회주의적 법질서,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법적인 의무와 권리는 선량한 풍속, 신뢰원칙 등에 의해 제한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동독에서의 많은 활동은 국가 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는 자유주의 사상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제를 규정하도록 하였다(국가조약 공동의정서 A. I.).

또한 동독의 법원은 인민회의나 다른 국기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원조직법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한 판사의 보고 의무도 폐지되었다(국가조약 공동의정서 B. I. 2).

동독 형법 중 사회주의적 합법성과 사회주의적 국가 및 사회질서와 관련된 원칙과 조항들은 향후 독일통합을 어렵게 하고 자유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조약 발효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국가조약 공동의정서 B. I. 4).

국가조약 중 '기본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동서독 사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동독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동서독 사법통합의 핵심은 통일조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조약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조약의 총 9개의 부속의정서 중 상당수의 의정서도 동독에서 개정, 폐지되어야 할 법규, 동독에 적용될 서독의 법규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조약을 통해 사법통합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법제도 관련 법 개정

동독은 국가조약을 근거로 1990년 6월 17일 총 10개항으로 구성된 '헌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다가올 독일통일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동독 헌법을 보충함을 선언하였으며, 여기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에 반하는 헌법 규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함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주의적 기본질서(제1조), 사유재산(제2조), 경제활동의 자유(제3조), 임금협상(제4조), 사법의 독립성(제5조), 환경 보호(제6조), 근로 보호(제7조) 등이 있다. 특히 제5조에서는 법관은 독립적이며,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며, 국가 혹은 사회기관에 의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급법원에 의한 하급법원에 대한 지시를 금지하였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체제하에서는 최고법원의 지구법원, 군법원 등에 대한 지휘권이 인정되었으나, 헌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권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 외에도 1990년 6월 29일 제정된 '제6차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6. Strafrechtsänderungsgesetz)'을 통해 기존 형법 중 사회주의적 이념 및 정치적 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특히 동독형법 제1조에서는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및 사회주의적 사회의 보장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상급법원에 의한 지휘 및 인민회의, 국가평의회에 의한 사법 통제에 관한 내용들도 폐지되었다.

1990년 7월 5일에는 '법원조직법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최고법원과 고등검찰청에 관한 내용이 삭제, 해당 기관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동독에서의 법관은 인민회의에서 그들의 임기 동안만 '선출'되었는데, 동독 법원조직법 제95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법관은 '임명'되며, 법관의 지위와 임명 등에 대해서는 법관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동독에서는 법관을 인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도 5년만 보장하되, 임

기 내의 기간이라도 인민회의에서 해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 독립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즉 법관의 인적인 독립성(persönliche Unabhängigkeit)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선발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외에도 1990년 7월 5일 제정된 '검찰청법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setzes der Staatsanwaltschaft)'을 통해 검사의 '일반적 감독권한'도 폐지되었다.[42] 또한 검찰청은 법무부 내에 편재되었으며, 임무는 형사절차 위주로 조정되었다.

1990년 7월 22일에는 주설치법(Ländereinführungsgesetz)이 제정되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튜링겐주가 부활되었으며, 베를린도 주의 권한을 취득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동독도 서독과 같이 분권화된 연방제 국가임을 명확히 하였다(주설치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권한 행사 및 임무수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의 권한이라고 규정하였고, 입법권 또한 주에 부여되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권도 명시되었다(주설치법 제3조 제2항).

3. 통일조약을 통한 사법통합

1) 통일조약 개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은 1990년 8월 13일에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 3일 발효하였다. 통일조약은 1990년 9월 20일 동독 인민회의에서 찬성 299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서독 연방의회에서도 같은 날 찬성 440표, 반대 47표, 기권 3표로 의회 동의를 받았다. 국가조약이 경제 및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통일조약을 통해서는 정치적, 국가적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42] Peter Rieß, Die Strafprozess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sskommentar, Einl. Abschn. E. Rn. 178.

동독 주의 서독에의 가입은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통일조약 제1조 제1항), 따라서 이 조항을 '가입조항(Beitrittsartikel)'이라고도 한다. 기본법 제23조는 "이 기본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가입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43] 독일통일 후 기본법 제23조는 삭제되었다.

국가조약을 근거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주가 서독에 가입하였으며 동독은 해체되었다. 이들 주를 '신연방주(neue Bundesländer)'라고도 표현한다. 한편 통일조약 제2조에서는 통일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며, 10월 3일이 '독일통일의 날(Tag der Deutschen Einheit)'임을 명시하였다.

이렇듯 통일조약은 동서독통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약으로서 독일통일을 완성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통일조약이 국제법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일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Vertrag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소위 '2+4 조약'의 체결이 전제되었다. 이 조약에는 동서독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1990년 9월 12일 참가국들이 조약에 최종 서명, 전승국이 그들의 보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독일통일을 위한 장애가 제거되었다.[44]

통일조약은 본문과 제1부속의정서, 제2부속의정서, 제3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부속의정서는 연방법의 확장적용에 관한 특별규정(Be-

[43] 당시 독일 기본법 제146조를 근거로 통일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기본법 제146조는 "독일의 통일과 자유의 완성(Vollendung) 이후 모든 독일 민족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 민족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결의된 헌법(Verfassung)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법 제146조는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기본법'을 폐지하고, 독일 전체에 적용될 '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2+4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sondere Bestimmungen zur Überleitung von Bundesrecht), 제2부속의정서는 동독법의 계속적용에 관한 특별규정(Besondere Bestimmungen für fortgeltendes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제3부속의정서는 미해결 재산문제의 규정에 관한 동독과 서독 정부의 공동선언(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을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사법제도 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은 통일조약 본문 제3장의 법의 동화(Rechtsangleichung), 제1부속의정서 및 제2부속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다. 특히 제1, 제2부속의정서의 경우 각각 '제3장 연방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이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내용이며, A부문(Sachgebiet)은 사법(Rechtspflege), B부문은 민법, C부문은 형법 및 질서위반법, D부문은 상법, 회사법, 보험계약법, E부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F부문은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것이다.

한편 동서독 정부는 통일조약의 실행과 해석을 위하여 1990년 9월 18일 추가합의서(Zusatzvereinbarung)[45]를 체결하였다.

2) 법의 동화(Rechtsangleichung)[46]

서로 상이한 체제하에서 운영되던 동서독의 실질적 통일을 위해서는 법의

[45] 추가합의서의 원래 명칭은 '독일통일 달성을 위해 동서독이 1990년 8월 31일 베를린에서 서명한 조약의 실행과 해석을 위한 동서독 간 합의서(Vereinbarung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Durchführung und Auslegung des am 31. August 1990 in Berlin unterzeichneten 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이다.

[46]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법의 동화에 관해서는 통일조약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통일조약 제3장에서는 동서독 간의 법의 동화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8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독으로의 가입과 동시에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연방법이 확장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반면 제9조에서는 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방지하고 동독지역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적용되는 동독법에 대해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독일 기본법상 권한규정에 따를 때, 주법(Landesrecht)에 해당하고 연방법과 유럽공동체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독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또한 동독에 적용되던 법이 기본법상 권한규정에 따를 때 연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방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까지는 주법으로서 지속된다. 한편 통일조약 체결 이후에 제정된 동독법은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다(통일조약 제9조 제3항).

이처럼 통일독일은 동독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기본법과 유럽공동체법에 반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는 등 점진적인 법의 동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법조직 통합

(1) 개관

동서독 사법조직의 통합은 연방 차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주가 상호 자매결연, 즉 파트너주를 형성하여 서독의 주가 동독의 주에 대해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47] 구체적으로는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작센-안할트주와 니더작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브레멘·함부르크주 등 3개 주, 튜링겐주는 헤센·라인란트-팔츠주 등 2개 주, 작센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47]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p.136.

바이에른주 등 2개 주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통일과정에서는 연방주의원칙에 따라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 및 사법조직은 해체하고 각 주에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의 개편 및 통합을 진행하였다. 다음에서는 사법제도 통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통일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동독 최고법원의 해체

통일조약을 통해 하급심 법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중앙집권적 사법조직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동독 최고법원을 해체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 최고법원에 계류 중이던 제1심 사건은 각 사건별 관할 군법원 혹은 지구법원으로 이송하였다.[48] 상고사건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등 사건 유형별 관할 최고법원으로 이송하였다.[49]

나) 사회적 법원의 해체

사회적 법원 또한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앞서 동독의 법원조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법원은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재판을 하는 등 법치국가적 의미의 법원이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

[48]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y) (1) : Beim Obersten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hängige Strafverfahren im ersten Rechtszug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as nach Maßgabe l) Abs. 1 zuständige Gericht über: Dieses kann die Sache mit bindender Wirkung an das Bezirks- oder Kreisgericht abgeben, wenn es dessen Zuständigkeit für begründet hält.

[49]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y) (2) : Beim Obersten Gericht anhängige Revisionsverfahren, Berufungsverfahren, die als Revisionsverfahren fortgesetzt werden, sowie Berufungsverfahren, die Entscheidungen der Spruchstelle für Nichtigkeitserklärungen des Patentam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treffen, gehen in der Lage, in der sie sich befinden, auf den zuständigen obersten Gerichtshof des Bundes über. Richtet sich die Zulässigkeit der Revision nach neuem Recht, so entscheidet dieser auch über die Zulässigkeit.

에 해체하였다. 사회적 법원에 계류 중이던 형사사건은 검찰로 이송하였다. 검사는 이송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절차의 시작 혹은 계속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50]

사회적 법원에서 계류 중이던 일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소(Schiedsstelle)를 설치하여 이송하였다. 중재소에서는 독일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른 화해관청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형사법원의 업무를 감경하는 기능도 하였다.[51]

다)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잠정적 존치

동서독의 통일은 1989년 시작된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 이후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동독의 법원조직을 전면적으로 서독의 그것에 맞추어 개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물론 최고법원 등과 같이 연방주의, 법치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기관은 통일과 동시에 즉각 폐지하였으나, 군법원과 지구법원은 잠정적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52] 각 주들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적·물적 조건(personelle und sachliche Voraussetzungen)을 갖추게 되면 서독과 같은 형태의 사법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53]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혼란 또한 피할 수 있었다.

---

50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4호 a) :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anhängige, an ein gesellschaftliches Gericht abgegebene Verfahren sind von der Staatsanwaltschaft zu übernehmen. Die Staatsanwaltschaft entscheidet über die Einleitung eines Ermittlungsverfahrens oder dessen Fortführung nach Maßgabe der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war das Verfahren bereits bei einem Gericht anhängig gewesen; so ist es diesem zuzuleiten.

51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pp.138-139.

52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a) (1) : Die ordentliche streitige Gerichtsbarkeit der Länder wird in den in Artikel i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Ländern durch die Kreisgerichte -und die Bezirksgerichte ausgeübt.

53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a) (2).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에 상이한 명칭의 법원이 존재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일조약에서는 동등지위조항(Gleichstellungsklausel)을 통해 과도기에서의 사법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등지위조항에 따라 동독의 군법원(Kreisgericht)은 서독의 구법원(Amtsgericht)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동독의 지구법원(Bezirksgericht)은 서독의 지방법원(Landgericht)과 주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권한을 행사하였다.[54] 또한 동독 지구법원의 Senat라는 명칭의 재판부는 지방법원의 Kammer라는 명칭의 재판부에 상응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동베를린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서베를린에 서독 법원조직이 존재하였고,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 소재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당원들이 많았기에, 서베를린 소재 법원들의 관할권을 동베를린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법통합을 이루었다.[55] 즉 동베를린 지역의 사법조직들을 통일과 동시에 폐지하였다.

라) 특별재판부의 설치

동서독의 법원조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독의 경우 행정·재정·노동·사회사건 등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동독의 각 주들에도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등 특별법원이 종국적으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인적·물적·시간적 제약으로 당장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동서독은 동독지역에서 특별법원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군법원과 지구법원에서 특별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 또한 담당하기로 하였

54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b) (1) : Wo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oder andere Rechtsvorschriften die Zuständigkeit der Gerichte regeln, den Gerichten Aufgaben zuweisen oder Gerichte bezeichnen, treten die Kreisgerichte an die Stelle der Amtsgerichte und die Bezirksgerichte an die Stelle der Landgerichte und der Oberlandesgerichte,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55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23.

다.[56]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장기적으로 용인되지는 않았으며 동독 지역의 각 주들은 인적·물적 여건이 조성되는 즉시 서독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원을 설치하여야 했다.[57] 여러 노력 끝에 동독지역에서의 특별법원 설치는 1993년에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58]

다만 동독의 모든 군법원·지방법원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아니다. 전체 223개의 군법원 중 관할 구역 내에 지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14개 군법원과, 전체 14개의 지구법원 중 관할 구역 내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5개의 지구법원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이 설치되었다.[59] 특히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구법원(Bezirksgericht)에서는 고등행정법원, 주재정법원 등 제2심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한편 다른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노동재판부의 경우에는 사건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군법원 및 지구법원에 설치되었다.

마)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해체

통일조약 제13조 제1항에서는 동독지역의 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행정, 사법기관은 주정부 산하에 설치된다고 규정하였다.[60] 이 규정에 따라 동독 중

56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t) (1) : Die Kreis- und Bezirksgerichte verhandeln und entscheiden bis zur Errichtung einer selbständigen Verwaltungs-, Finanz-, Arbeits- und Sozialgerichtsbarkeit als Gerichte der Länder auch in den in deren Zuständigkeit fallenden Sachen.

57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t) (4) : Die Länder richten baldmöglichst durch Gesetz für die in Absatz 1 Satz 1 genannten Sachgebiete Gerichte der Länder ein, soweit hierfü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dürfnisse einer geordneten Rechtspflege jeweils die personellen und sachlichen Voraussetzungen geschaffen werden können

58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24.

59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호 t), u), v), w), x).

60 통일조약 제13조 : Verwaltungsorgane und sonstig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oder Rechtspflege dienende Einrichtungen in dem in Artikel 3 genannten Gebiet unterstehen der Regierung des Landes, in dem sie örtlich gelegen sind.

앙집중형 중앙 행정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는 해체되고 주정부 산하의 주법무부가 신설되었다. 동독 법무부는 동베를린지역에 소재하였는데, 과도기에는 독일 연방법무부 차관 직속의 외청을 동독 법무부 청사에 설치하여 신연방주의 법무부 창설, 사법조직 개편, 법률 통합 및 조화 등을 총괄하였다.[61] 새로 신설된 주법무부는 법원 등에 대한 사법행정, 검찰행정, 변호사 및 공증인 감독업무 등을 관할하였다.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동독 대검찰청도 연방주의하에서는 중앙집권형 검찰청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해체되고 주검찰청이 창설되었다. 한편 동독 검찰청은 형사소추 업무 외에도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일반적 적법성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통일과정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 공소제기, 형 집행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4) 법조 인력 통합

(1) 개관

동독에서는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사람, 즉 디플롬 학위 취득자에게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반면 서독에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후, 1차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의 법조실무수습을 하도록 하고,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차이점은 동독은 교육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종별로 상이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교육과정 수료 후 해당 영역에서만 법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서독에서는 소위 총체적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법관, 검사, 변호사 등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동서독은 상이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동독 출신의 법조인에게 서

[61]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p.140.

독 출신 법조인과 마찬가지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자격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법조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동독 법조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조약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 출신 법조인의 자격 인정 및 법관·검사 재임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규정한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동독 법관의 자격 인정

통일조약이 발효할 당시, 즉 1990년 10월 3일 기준으로 이미 동독에서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국가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격을 그대로 보유했다.[62] 비록 동독의 법관들이 서독 법관들에게 적용되는 기준들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통일 후 동독지역의 안정유지와 법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법치국가적 활동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인정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판사선출위원회·검사선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정식으로 재임용될 수 있었다.

한편 서독의 경우 법과대학 교수에 대해서도 법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63] 이와 관련하여 동독지역 법과대학 교수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법관 자격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했다.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호 y) dd)에서는 동독지역 법과대학의 교수들 중 대학기본법 제44조의 임용조건을 충족하고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후 임용된 경우,

---

62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aa) des Einigungsvertrages : “Wer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die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erworben hat oder demnächst erwirbt, behält diese Befähigung. (...)”.

63 물론 독일의 법과대학 교수는 1, 2차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법조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는 법과대학 교수이면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학기본법에서는 법과대학 교수의 경우 법조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즉 통일 후에 재임용되었다면 법관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64]

또한 1991년 12월 31일까지 법관시보, 검사시보, 변호사시보, 공증인시보이거나 예정인 사람은 동독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다면 해당 영역에서의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였다.[65]

이 외에도 서독에 가입할 당시에 동독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디플롬 법조인으로서 최소 3년 동안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1년의 실무수습을 수료하면 동독지역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66]

이처럼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통합을 위하여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하였으며, 법조인 직업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과대학생 혹은 졸업생에 대해서도 제2차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었다.

(3) 동독 출신 법과대학 졸업생·재학생의 자격 인정

동독지역 대학에서 디플롬-법조인(Diplom-Jurist)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64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dd) : "Hochschullehrer an rechtswissenschaftlichen Fakultäten oder Fachbereichen von wissenschaftlichen Hochschulen oder Universitäten in dem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die die Einstellungsvoraussetzungen für Professoren nach § 44 des Hochschulrahmengesetzes erfüllen und nach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berufen worden sind, sind zum Richteramt befähigt."

65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ee) : "Wer bis zum 31. Dezember 1991 Richter-, Staatsanwalts-, Rechtsanwalts- oder Notarassistent ist oder wird, beendet seine Ausbildung nach den in dem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geltenden Bestimmungen und erwirbt mit dem erfolgreichen Abschluß die in diesen Bestimmungen vorgesehene Befähigung."

66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ff) des Einigungsvertrages : "Diplom-Juristen, die ihr Diplom nicht an der Juristischen Hochschule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tung erworben haben und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eine mindestens dreijährige Berufserfahrung besitzen, erwerben nach einer erfolgreichen Einarbeitungszeit von einem Jahr bei einem Gericht in dem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die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대해서는 통일독일에서 적용되는 제1차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67] 통일 이전에 법학 공부를 시작한 법과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동독식의 학위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았다.[68]

앞서 동독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간의 실무수습 후 법관 자격을 부여한 것과 비교하면 통일 당시 법학공부를 하고 있던 재학생들이나 직업 경험이 없는 졸업생들은 서독의 제1차 국가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법조실무수습과 제2차 국가시험에 추가로 합격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독지역의 모든 법과대학 수료자에 대하여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조약 제1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의 여러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die Juristische Hochschule Potsdam-Eiche), 즉 국가공안부대학(Hochschule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졸업생 혹은 재학생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법관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여타의 대학과는 달리 학문적 의미에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수학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비밀정보기관인 슈타지, 즉 국가공안부의 부속기관으로서 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에서 법학과정을 수료한 경

67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gg) : "Der Abschluß eines rechtswissenschaftlichen Studiums als Diplom-Jurist an einer Universität oder wissenschaftlichen Hochschule in dem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mit Ausnahme eines an der Juristischen Hochschule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tung erworbenen Diploms - wird der ersten Staatsprüfung im Sinne der §§ 5 bis 6 gleichgestellt".

68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hh) : "Wer vor dem 1. September 1990 in dem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ein Studium der Rechtswissenschaften - mit Ausnahme eines Studiums an der Juristischen Hochschule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tung - aufgenommen hat, kann das Studium nach den fortgeltenden Bestimmungen abschließen. Der erfolgreiche Abschluß der Ausbildung gilt als erste Staatsprüfung im Sinne der §§ 5 bis 6."

우에는 법조 관련 직업(juristischer Beruf)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69]

(4) 법관·검사 등의 재임용

가) 법관 재임용 과정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호와 1990년 7월 5일 개정된 '동독 법관법(Richtergesetz der DDR)', 1990년 7월 22일 제정된 '법관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은 법관의 재임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조약 제2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1절에서는 계속 시행될 동독법으로 법관법과 법관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통일 이후에도 이들 규정들을 바탕으로 동독 법관들의 재임용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관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독 법관법에 의해 직업법관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법관재임용 절차를 거쳐 직업법관으로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관선출위원회는 4인의 법관 또는 검사, 1인의 연방의회 의원, 5인의 주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만약 법관선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동독 출신 법관들은 통일 이후 법관직이 정지되었다가 법관선출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는 법관직을 유지하다가 법관선출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법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해 동독 출신 법관을 일괄 해임한 후 적격성 심사를 거쳐 법관직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69]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y) jj) des Einigungsvertrages : "Ein an der Juristischen Hochschule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tung erworbener Abschluß berechtigt nicht zur Aufnahme eines gesetzlich geregelten juristischen Berufs."

동독지역에서의 사법제도 유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는 못했다. 다만 동베를린지역의 경우 동독 수도라는 특성상 사회주의통일당(SED)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법관이 다수였으며, 서베를린에 이미 서독 법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베를린지역 법관을 모두 해임시킨 후 법관선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만을 재임용하였다.[70]

법관의 경우 법치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임용에 있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연방주의,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도덕적·정치적 완전성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다. 특히 법관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정치적 형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경우에는 탈락시켰다. 반면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

통일조약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종신법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한시법관(Richter auf Zeit) 혹은 수습법관(Richter auf Probe)으로 3~5년간 근무한 후, 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종신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임명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었다.[71]

통일조약은 한시법관이나 수습법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도 종신법관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7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법관이

---

70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p.188.

71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h) des Einigiungsvertrages : "Die Ernennung oder Berufung eines nach den Vorschriften des Richter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Verbindung mit der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berufenen Richters auf Probe oder auf Zeit ist außer in den Fällen des § 19 Abs. 1 Nr. 2 bis 4 zurückzunehmen, wenn nachträglich Tatsachen bekannt geworden sind, die seine Berufung nicht gerechtfertigt hätten".

72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d) des Einigiungsvertrages : "Richter, die nach den Vorschriften des Richter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7) in Verbindung mit der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나 수습법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법원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법원장은 주로 서독 출신의 법관들이 맡았다. 한편 사법조정법은 구동독 법관이 서독 주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배석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독 출신 법관들이 서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사법통합을 도모하였다.

한시법관은 법관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었으며, 해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년, 3년의 단위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직무법원(Dienstgericht)에 제소가 가능하였다.[73]

참고로 통일 전 동독법관 1,580명 중 1,124명이 재임용 지원을 하였으며, 그중 약 62%인 701명이 재임용되었다. 다만 베를린주의 경우 145명의 신청자 중 22%인 33명만이 재임용되어 동독지역에서 재임용률이 가장 낮았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동독지역의 경우 사회주의통일당, 국가안보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관들이 많았으며, 낮은 재임용률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나) 검사 재임용 과정

검사의 경우에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통일 후에도 잠정적으로 그 직을 유

der Richterwahlausschüss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Juli 1990 (GBl. I Nr. 49 S. 904) in ein Richterverhältnis auf Zeit oder auf Probe berufen worden sind, dürfen dieselben Aufgaben wahrnehmen wie Richter auf Lebenszeit".

73 Anlage I Kap. III A Abschn. III Nr. 8 k) des Einigiungsvertrages : "Ein nach den Vorschriften des Richtergesetz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Verbindung mit der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berufener Richter auf Zeit kann außer aus den in § 21 genannten Gründen entlassen werden, wenn er für das Richteramt nicht geeignet ist. Die Entlassung kann nur zum Ablauf des sechsten, zwölften und achtzehnten Monats oder zum Ablauf des zweiten oder dritten Jahres erfolgen. § 22 Abs. 4 und 5 findet auf die Entlassung wegen Nichteignung entsprechende Anwendung; § 21 Abs. 3 findet keine Anwendung. Die Entlassungsverfügung kann beim Dienstgericht angefochten werden".

지하다가 재임용 심사를 거친 후 지속해서 근무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였다. 재임용 심사는 검사임용위원회(Staatsanwaltsberufungsausschuss)를 통해 실시하였다. 재임용 검사는 법관과 유사하게 3~5년에 이르는 수습검사(Staatsanwalt zur Anstellung)를 거쳐 정식 검사로 임용되었으며 단독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74]

한편 통일 전 동독 검사 1,237명 중 765명이 재임용에 지원하였으며, 그중 51%에 해당하는 393명만이 재임용되었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베를린주의 경우 재임용 신청자 131명의 7.6%인 10명만이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여 다른 주에 비해 낮은 재임용률을 보였다.

다) 변호사 자격 인정

변호사의 경우 애초에는 별다른 심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통일 당시에 변호사로 허가받아 활동하고 있었다면, 연방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변호사 허가 신청을 법원에 했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동안 변호사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다.[75] 다만 연방변호사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독 출신 변호사는 서독지역에서의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었다.

한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국가안보부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관, 검

74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p.203.

75 Anlage I Kap. III A Abschn. IV Nr. 1 a) aa) des Einigungsvertrages : “Rechtsanwälte, die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mit Kanzlei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zugelassen sind, gelten als nach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zur Rechtsanwaltschaft zugelassen. Sie gehören der Rechtsanwaltskammer Berlin an. Sie haben den Antrag auf Zulassung bei einem Gericht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des Landes Berlin zu stellen. Wird der Antrag nicht binnen drei Monaten hach de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gestellt; ist die Zulassung zur Rechtsanwaltschaft zu widerrufen,”.

사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92년 7월 24일에 제정된 '변호사 허가, 공증인 임명에 대한 심사를 위한 법률'을 바탕으로 인도주의나 법치국가 원칙에 현저히 위배됨으로써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의 특징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조직 통합에 있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연방주의에 반하는 조직은 경과규정 없이 통일과 함께 즉시 폐지하였다. 동독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이 그 예이다. 동독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연방주의에 반하였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사법의 독립성을 추구했다기보다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노선을 관철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합법성' 준수에 대해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최고법원의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조직은 형사소추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한 일반적 적법성 감독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형사소추보다도 적법성 감독권한이 더 우선시되기도 하였다. 당시 동서독, 특히 서독 정부는 동독의 사법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사회주의적 국가 권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법조직은 과감하게 폐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사법제도 분야에 있어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통합은 사법조직뿐만 아니라 법조 인력 통합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최

고법원을 제외한 군법원, 지구법원은 통일 초기에는 동독 당시의 형태로 유지하되, 인적·물적 여건이 충족되는 때에 서독식의 법원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독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법원, 재정법원 등 특별법원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법관·검사·변호사 등 법조 인력의 경우에도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우선은 동독의 기존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재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직무에서 배제하였다. 다만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지역의 경우 서베를린지역에 서독식 법원조직이 존재하였고, 동베를린지역 법조인의 경우 사회주의통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가 많았기에 동베를린의 사법조직을 폐지하고 서베를린 사법조직의 관할을 통일과 동시에 확장 적용하였다.

셋째,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동독의 기존 법조인 양성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물론 통일독일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연방주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동독의 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였다. 동독 법관의 경우 통일 당시에 법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면 법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물론 동독 법관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시법관, 수습법관으로 3~5년 근무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법관 자격 요건'은 인정하였다. 동독 법과대학 졸업생, 재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과정을 졸업하면 제1차 국가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서독의 경우 법과대학 학부 과정을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졸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당시 동독 법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동독 법조인 교육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동독 변호사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도 동서독은 통일단계 이전에도 사법공조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사법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4장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제1절 북한의 사법제도와 동독의 사법제도 비교

2016년 7월에 출판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의하면 '법은 인민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공동의 행동규범'이며,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고 완성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법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이해는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강조하였던 동독의 법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에 대한 이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북한의 사법조직, 인력 등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동독의 사법제도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사법제도

1) 개관

북한의 사법제도는 사회주의 법 이론을 기초로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선군사상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제도의 경우 민중적 중앙집권과 조선노동당의 영도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5조에서는 모든 국가

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사법조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76]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북한 주민(인민)이 북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최고인민회의가 각급 재판소, 검찰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인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은 부정되었으며 권력통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사법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가주석, 최고인민회의에 집중되었으며, 이들의 지도하에 사법기관들이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였다.[77] 따라서 북한의 법원과 검찰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에 북한에서는 헌법재판, 행정재판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타의 법치국가와는 달리 법관 개인의 독자성이 아닌 재판소, 즉 법원의 독자성만이 인정되었다.[78]

아래에서는 북한헌법 및 재판소구성법, 검찰감시법, 변호사법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재판소

북한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된다(북한헌법 제159조). 여기서 특별재판소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해당한다(북한 재판소구성법 제3조). 북한의 재판소는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북한헌법 제162조). 북한의 경우에도 동독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

76 이효원,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p.69.

77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35.

78 윤대규·김동한·하태영,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998년 4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135.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최고재판소 및 각급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및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북한 재판소구성법 제4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북한헌법 제160조). 또한 임기 이내라 하더라도 판사 및 인민참심원을 선출한 기관은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북한 재판소구성법 제8조).

제1심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북한 재판소구성법 제9조). 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북한의 판사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 독자적이며 법에 근거하여 재판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헌법 제166조).

한편 최고재판소는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다른 모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해 감독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북한헌법 제167조). 동독 최고법원이 하급심 법원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최고재판소는 그들을 선출한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진다.

3) 검찰소

북한의 검찰소는 우리의 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최고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있다.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북한헌법 제154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해임한다(북한헌법 제155조). 최고검찰소는 각급 검찰소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에 복종한다는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진다(제158조).

북한 검찰소의 임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국가의 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시,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 국방위원회 결

정, 지시 등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감시, 범죄자를 비롯한 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형사소추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북한헌법 제156조).

특히 검찰소의 감시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찰감시법(1998)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북한의 검사는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나 주민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법원 등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감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검찰감시법 제10조에서는 검사가 수사, 예심 활동을 바로 하는지에 대해 감시하며, 제11조에서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에 따라 정확하게 심리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며, 제12조에서는 확정된 판결, 재결, 결정 등이 정확히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함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검사는 심리에 참가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며, 검사의 감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심리 날짜를 검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법 제26조).

4) 변호사

북한헌법 제164조에서는 피소자는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임무, 자격, 변호사 조직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임무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자문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하는 것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이 외에도 변호사는 주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고 주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법 제11조). 변호사의 비밀준수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다(법 제15조).

변호사법 제3장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1.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2. 법 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였던 사람, 3. 해당 분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

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이 요구된다(법 제20조). 또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 법학학위직 소유자는 겸직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제21조). 변호사 자격 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서 하며,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법 제22조, 제23조). 다만 외국의 변호사는 외국의 법인, 개인의 법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가 법 위반을 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자격박탈 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법 제24조).

한편 북한에는 변호사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가 있는데 이들은 변호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며, 변호사들에게 법과 규정을 알려주며,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도·통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30조).

2. 동독 사법제도와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사법제도는 동독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동독의 사법조직은 모두 중앙집권형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최고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시(구역)·군인민재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다른 법원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독의 경우에도 최고법원-지구법원-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법원은 북한의 최고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지구법원·군법원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둘째, 북한과 동독의 법관은 모두 인민회의가 선출한다. 또한 자신을 선출한 인민회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임기도 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며, 두 국가 모두 법관의 임기 내라 하더라도 인민회의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렇듯 동독과 북한의 법관은 서독·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 업무를 함에 있어 그들을 선출한 인민회의에 종속되며, 사실상의 독립성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북한과 동독 검찰 모두에게 '일반적 감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특히 두 국가의 검찰 관련 법률에서는 형사소추보다는 감시업무를 더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국가 간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법문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동독의 검찰보다 북한의 검찰이 더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감시법에 따르면 북한 검찰은 다른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등에 대한 감시도 하고 있으며, 법원은 검사들의 감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리기일을 미리 검사에게 알릴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

넷째, 동독과는 달리 북한에는 특별법원이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북한의 특별재판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북한의 변호사 자격 요건은 동독에 비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동독은 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만 북한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며, 법과대학 교수가 아닌 학위 소유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여섯째, 북한과 동독 모두 법관의 독립성과 헌법 및 법률에의 구속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2절 한반도 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동서독의 사법제도 및 통합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사법제도를 동독이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 기본법 제23조에 기하여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흡수 통일의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반도통일도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은 급격한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흡수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이 이루

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민주의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는 포기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이념을 우위에 두고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사법제도는 구동독과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인민회의에서 법관을 선출하고, 그 임기 동안만 신분이 보장되며, 검찰은 일반적 적법성 감독권한을 가지는 등 두 국가는 여타의 법치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사법제도를 취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서독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상당히 유사하다. 예를 들면 두 나라 모두 통상법원 외에 행정법원 등 특별법원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남북한과 각기 유사한 사법제도를 취한 동서독의 통합과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독일통일의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사법공조 및 법의 동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현재의 남북관계와는 달리 동서독 주민들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호 교류를 해왔고, 사법 부문에서도 사법공조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 왔다. 이렇게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교류를 해옴으로써 동서독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일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둘째, 국가조약(Staatsvertrag)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통해 통일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상하고 규정하였다. 특히 통일조약은 통일을 위한 전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 간에 국가조약을 체결하여 사법통합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한다면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법의 동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반자유주의적, 반민주적, 반법치국가적 조직·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폐기 절차를 진행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통일과 동시에 해체된 동독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협상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과도기적 상황을 이해하고 점진적인 사법제도 통합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동독의 군법원과 지구법원을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다섯째, 동독 전역에 서독의 사법제도가 이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서의 법관 경력, 교육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통일 후에도 법조인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사법 분야에서의 동서독통일 과정은 한반도통일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다가올 남북한통일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법제도의 구축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알렉산더 페니히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과 함께 통일된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동독의 개혁 정부는 사법제도를 서독의 사법제도에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사회주의적 법체계의 개정작업은 이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구성된 과도개혁 정부 1기의 한스 모드로우 수상하에서 시작되었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사법제도는 계급투쟁과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존재했지만 그들은 법조인이기 이전에 모두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적 지배를 충실하게 따르는 당원이었다. 동독 형법에는 주민의 정치적 이탈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별도의 집행유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복역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복역 후에 원래 근무했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했다. 나아가 구타, 조롱, 상점 절도와 같은 경범죄는 법원이 아니라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해 처벌이 결정되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 징계되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전과자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이런 법문화에 익숙해 있던 동독의 주민들이 통일과 함께 서독의 사법제도에 그대로 편입되었다.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의 주민이 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서독의 사법제도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새로운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것은 신연방주의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독일통일 이후 자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동독을 '불법국가(Unrechtsstaat)'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동독을 불법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통일조약에 언급된 것처럼 동독이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 정권 또는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불법국가라는 표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독의 지배 체제를 정치적, 도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지배 체제, 특히 지배 정당의 특성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런 표현을 통해 동독 체제하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삶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과도개혁 2기에 동독 정부를 이끌었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의 회고록을 통해 이런 심정을 잘 볼 수 있다: "프란츠 크롭펜슈테트 연방법무부 차관과의 대화를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동독에서 내려진 행정 결정 중 별로 쓸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농담 삼아 '그렇다면 동독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모두 취소해야겠군요. 그럼 약 500만 건에 달하는 혼인도 모두 무효화되어야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1]

사실 1990년에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까지도, 서독의 사법제도를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규모와 그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었다. 로타 드 메지에르에 따르면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동서독의 협상 대표들이 화폐통합조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두 개의 법질서가 존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사법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통일조약의 협상 대표였던 귄터 크라우제와 볼프강 쇼이블레가 합의하고 선호했던 동서독 법질서의 양립 원칙은 그 둘이 여름휴가를 가 있는 동안 폐기되었다. 이들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통일조약의 협상을 이끌기로 되어 있었던 법무부

[1] Lothar de Maizière,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ügen müssen. M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Einheit). Freiburg im Breisgau: Herder, 2010, p.289.

차관 클라우스 킹켈이 장기간 병으로 인해 협상에서 빠진 상태에서, 연방재무 장관이었던 테오 바이겔이 두 개의 법질서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협상의 방향이 변경된 것이다. 테오 바이겔은 공동의 화폐와 경제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법질서도 완전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크라우제와 쇼이블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크게 분노했지만 그 방향을 다시 바꾸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로타 드 메지에르는 1990년 여름에 협상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된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자신이 경험한 입법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아마도 1990년 통일 이후 완전한 사법통일을 이루기까지 분명히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서독 법제도의 엄격한 관료주의적 규정들이 1990년 10월부터 신연방지역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신연방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2]

통일조약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신연방지역에 1990년 10월 3일부터 서독의 사법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신연방주는 자체적인 주정부와 주의회를 구성하고 주헌법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사법기구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 권에 수집된 정책문서들은 5개의 신연방주에서 진행된 사법제도 구축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주의 사례를 선별해서 설명할 것이다. 신연방주의 사법제도의 구축과정은 제도와 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제도와 인력 부분을 분류해서 설명할 것이다. 신연방지역 사법 체계의 출발조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동독의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2] 위의 책 p.287.

제1장

사법제도의 이전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의 법제도를 조율하기 위한 작업은 사실상 장벽 붕괴 직후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스 모드로우는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6일에 이미 사법개혁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나아가 정치적인 형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희생자들, 즉 정치범들이 복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0년 1월 4일에는 서독 연방법무부에 '내독관계실무단'이 설치되었다.

표 2-1〉 동독 사법제도의 개혁 경과

1989.11.16	사법 개혁 및 정치 형법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복권에 관한 비텐벡 동독 법무부 차관의 발표
1989.11.30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된 연방-주-실무단'을 설치 결정 1989년 12월 5일 제1차 회의, 1990년 1월 18일 사법 지원을 주제로 한 회의
1990.01.04	예정된 동독과의 협상에 연방법무부가 참여하는 사안에 관한 연방법무부 측의 내부회의 '내독관계실무단' 설치
1990.01.24	동독의 새 법무부 장관으로 쿠르트 뷘쉐(Kurt Wünsche) 취임 정치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만~6만 명에 대한 복권 발표
1990.02.01	킹켈 서독 법무부(BMJ) 차관과 펠러(Peller) 동독 법무부 차관 간 회동
1990.02.13	형법 지원에 관한 동서독 법무부와 주정부 간 제1차 전문가 회담
1990.03.05	사법통일 실무단의 제1차 보고서 제출
1990.03.26	미해결 재산 문제를 연방내독관계부가 담당하기로 결정
1990.04.25	연방법무부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화폐통합 협상 속행, 사법통일과 개혁에 관한 동서독 법무부 간의 회담 속행

1990.04.28	동독 법조인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체결
1990.05.01	미해결 재산 문제를 연방법무부가 관할하기로 변경
1990.05.09	동독 사법제도 구축 지원 및 입법 자문을 위한 5개항 프로그램: 뷘쉐 동독 법무부 장관과 엥겔 하르트 연방법무부 장관 간 협정 체결 서독의 법무부 전문가들이 동독 법무부의 업무에 협조 의무
1990.10.03	통일조약 효력 발효

통일과 동시에 동서지역에서 동일한 사법제도가 적용되게 된다는 것은 신연방지역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요구하는 독일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균등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정이 새로 구축될 신연방주의 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통일조약을 통해 서독의 복잡한 사법제도를 그대로 신연방지역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결정이 실제로 신연방주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법무 장관이 사법제도의 이전작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과 같은 법률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서독의 법제도를 동독지역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3] 통일조약의 부록 1,000페이지 중에서 약 200페이지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법률이 신연방지역에 도입되어야 하는지와 함께 예외적인 경우 어떤 동독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동서독 사법제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합의되어야 할 문제들은 법제도 이전의 속도와 우선순위, 이전 절차 및 예외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법제도의 이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치적 의미-사안의 시급성-법적 필요-국제법 및 EU법과의 조화를 위한 필요-재정적 영향

3 독일통일의 사법정치적 영향(문서번호 17).

4 통일조약 제3장-사법통일(문서번호 16).

등이었다.[5] 1990년 초, 서독의 연방정부가 구성한 '독일통일 내각위원회' 산하에 사법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인 사안을 전담할 실무팀이 구성되었다.[6] 이 실무팀에서는 사법통일의 구조적 문제, 동독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3월 6일에 연방수상청의 부쎄 국장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연방법무부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즉 과도기 동안에만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여하고, 통일 이후에는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통합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입장이 정리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고,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연방주와 동일한 형태의 연방주가 설립된다면, 동독지역에서도 연방주의 독립적인 사법권이 보장받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이 문서를 통해 1990년 3월까지만 해도 통일과정에서 서독 연방정부의 내독성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미해결된 재산 문제를 내독성이 담당하기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5월에 미해결 재산 문제는 내독성이 아니라 연방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연방법무부는 통일과 함께 동독의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를 전담할 부서도 설치했다.[7] 동시에 동독의 법과 규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법령에 관한 특별 데이터뱅크를 설치해서 신연방주의 주정부 업무를 지원했다.[8]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지원한 예산은 총 2억 9,750만 유로였다.[9]

동독과 서독의 사법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사실 동독에서 개혁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 3월 18

5 기본법 제23조 2항에 의거한 가입과 관련해 서독법의 동독지역 이전 시 적용 기준(문서번호 10).

6 부쎄(Busse) 국장의 메모(문서번호 4).

7 독일통일이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문서번호 25).

8 주정부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될 구동독 법의 확정과 개정 관련 연방법무부 측의 신연방주 지원-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42(문서번호 105).

9 1991-1994년 사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법치국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개요(문서번호 109).

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신속한 통일의 실현이 새로 구성된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입법활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동독의 법령을 서독의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었다.[10] 7월에는 동독의 민법이 서독의 민법에 부합하게 개정되었다.[11] 1990년 4월에 서독 연방정부도 법제도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에서 과도규정을 마련해서 통일과 동시에 동독지역에서 연방공화국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논의했다. 과도규정을 준비할 책임은 연방내무부가 맡았다. 연방내무부는 모든 부처에게 담당하는 법률과 시행령, 행정명령, 조약 등을 파악해서 통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규정과 통일 이후 시간을 두고 적용해도 될 규정들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조약 또는 법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당시 연방내무부의 입장이었다. 연방내무부는 통일 직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만 전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12]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절차를 거쳐 도입된 법률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유효하거나 또는 9월 13일에 발효된 동독 변호사법처럼 통일 이후 몇 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다.[13]

사법제도의 통일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1. 국가적 차원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제도를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문제, 2. 유럽적 차원에서 유럽공동체의 법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문제, 3.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법상의 조약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문제 및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문제.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0년 전반기에는 특히 국제법적인

10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개정 또는 새로 도입한 법령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27권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참조.

11 동독 민법(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문서번호 12).

12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서독 가입 이후 서독의 국제조약 관련 규율(문서번호 7).

13 변호사 허가, 공증인 허가, 명예판사 임명 검증을 위한 법(문서번호 88).

차원에서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통일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연방외무부가 통일이 실현될 경우 변경이 필요한 국제법적 조약에 관한 분석을 진행했다.[14] 연방경제부에서는 동독지역을 서독의 일부로서 유럽공동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유럽공동체법의 어떤 조항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다.[15]

동독과 서독의 사법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초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동독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동독의 법률이 서독의 법률과 상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개혁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고, 10월 3일 이후에는 동독지역에도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 단위의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통일조약에는 신연방주 각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을 설치하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지방법원, 주법원, 주고등법원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신연방주에서 법원과 검찰, 법조 인력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만 했고, 그를 바탕으로 법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 구조가 구축되어야만 했다.[16]

이 과정에서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이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

14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문서번호 6),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서독 가입 이후 서독의 국제조약 관련 규율(문서번호 7),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보고(문서번호 8), 서독 정부가 2+4 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문서번호 9),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 여부 문제(문서번호 11),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문서번호 13).

15 동독을 서독의 일부로서 유럽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유럽공동체법의 변경(문서번호 5).

16 작센주 법무원법 실행에 관한 법의 초안(문서번호 28), 작센주 판사법 초안(문서번호 30), 튜링겐주 법원조직규정법 초안(문서번호 40), 작센-안할트주 노동법원법 초안(문서번호 41).

원들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실무를 도와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지역의 판사, 검사, 법무사 등을 신연방지역으로 파견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법조 인력 파견을 위한 재원은 각 지역의 인구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경우 70명의 퇴직 법조인, 140명의 판사, 검사, 70명의 법무사가 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17] 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이 신연방지역에서 새로운 행정과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방법무부의 경우 통일과 동시에 동독 정부의 법무부를 해체하는 업무와 함께 동독 공권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제를 맡았다.[18] 그 결과 연방법무 장관이 동독의 법률 관련 기관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동독의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해체작업은 연방법무부와 함께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동독 검찰에 보관된 기록 또한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이 인수하게 되었다.[19] 나아가 동독 법무부로부터 87명의 직원이 인수되었다.

1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법 인력구조 개선방안(문서번호 33).

18 제29차 사법위원회 회의 결의 회의록(문서번호 15).

19 독일통일이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문서번호 25).

제2장

사법 인력의 선발과 교육

사법통일은 새로운 시스템의 인수와 구체제의 요소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도와 절차의 변화, 즉 법 실무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법 실무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사법통일은 즉 직원의 검증과 인수, 교육, 직급 강등, 해고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공무원과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동독 공공 관청에서의 직무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급여 등급과 봉급, 퇴직금 및 연금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동독 공공 관청의 공무원과 직원들은 서독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그 직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직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구동독 공공 행정의 모든 분야(부처에서부터 지자체 행정, 교회가 수행한 공공 업무 포함), 경찰 및 소방서 근무, 정치국 장교를 제외한 국가 인민군 근무, 유치원과 학교, 대학(교회 운영 포함)과 같은 교육 분야 직무, 인정되지 않은 직무는 동독 국경수비군과 국가보위부에서의 활동이었다.[20]

연방법무부로 인수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런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통일과 함께 신연방주에 새롭게 구축될 사법 기구에서 근

[20] 독일통일 실현 후 임금법의 과도 규정에 관한 제2차 규정(문서번호 96).

무할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작업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나아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비밀경찰과의 연루 여부에 따라 직급을 강등하거나 해고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개혁작업은 1990년 초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판사와 검사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 검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모든 판사와 검사들은 비밀경찰 협력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서독의 잘츠기터에 소재한 중앙기록보관소의 문서를 토대로 한 검증작업을 거쳐야만 했다.[21]

동독의 판사와 검사들이 통일된 독일에서도 계속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일 전부터 서독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동독 체제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 통일된 독일에서 판사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1945년 이후 서독에서 나치 체제에서 근무했던 판·검사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에서 모든 판사들이 완전히 교체되었던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모든 판사들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22]

그러나 통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동독 체제하에서 활동했던 법조 인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작한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에게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있었던 논의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출범한 5개의 신연방주 주정부는 모두 동독 체제하에서 판사와 검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하에서 다시 검사와 판사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

21 제29차 사법위원회 회의 결의 회의록(문서번호 15).

22 독일통일의 사법정치적 영향(문서번호 17).

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23] 국가보위부,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이었거나, 사통당의 지구당 이상 기관의 지도위원, 국가전선조직의 고급 간부, 동독 고등법원의 검사, 지역 법원장, 지역 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다른 상급 법률기관의 간부급 지도자 등과 같은 지위를 보유했던 사람들만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지만, 그런 직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정치적 자유화를 위해 기여한 것이 분명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임명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법조 인력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 그리고 직급 분류에 관한 결정은 5개의 신연방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나왔다. 만프레드 슈톨페 주총리가 '화해와 협력'을 정부의 모토로 내세운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다른 신연방주에 비해 합의를 구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작센주의 경우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다른 신연방주에서는 평가 대상자의 절반 이하만 재임용됐으나,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55%가 재임용되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베를린시에서 평가를 받았던 동베를린지역의 판사는 11%만이 재임용되었다.[24]

이러한 검증작업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았다. 통일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1991년 9월에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법조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정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직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검토는 통일조약을 통해 결정된 합법적인 업무이며, 판사 또는 검사가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과제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의회에서 설명했다. 그때까지의 경력과 함께 그들이 주관

23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문서번호 24).

24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문서번호 60).

했던 재판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판사나 검사가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피의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다.[25]

튜링겐주 주의회에서는 1991년 9월에 동독 체제하에서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의결했다.[26] 그 이유는 과도개혁기에 크렌츠와 모드로우 개혁정부하에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던 경력으로 인해 판사 임용에 탈락한 사람이 변호사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장관이 해당 인물의 비밀경찰 문서를 참조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통일조약에 따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변호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결정이 튜링겐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체제 밖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민사당의 비판과 공직과 무관한 자영업에 대한 사상 통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노이에스포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튜링겐 주의회는 기민당이 제안한 법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유사한 논의에서 연방법무부는 동독에서 1989년 11월 9일과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변호사 허가를 새롭게 발급받은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략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변호사 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력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허가를 받은 변호사들이 동독 시절에 어떤 행

2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조인에 대한 수사(문서번호 44).

26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에 대한 주의회 총회(문서번호 46).

위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어떤 경우든 사통당 체제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변호사 허가가 추가로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27] 독일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개업 허가를 받은 변호사를 검증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과거 경력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야만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28] 이러한 논란은 연방정부가 연방변호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제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연방변호사협회는 1992년 3월에 연방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을 환영하며,[29] 이 법에 따라 변호사가 인간 존엄성 혹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였을 경우 변호사 허가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했다.[30]

사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법원의 사무직원을 비롯해 교도관, 법무사 등 법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신연방주의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바로 법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튜링겐주의 법무부가 1992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1월 현재 튜링겐주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총 501명 중에서 373.5명만이 채용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튜링겐주 법무부는 앞으로 통일조약이 허용하는 조항, 동독 체제하에서 이미 법집행을 담당했던 인력, 특히 법원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로 한 조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7 전 사통당 간부와 비밀경찰 요원의 변호사 허가(문서번호 58).

28 신연방주지역의 변호사 검증에 대한 독일변호사협회의 입장(문서번호 59).

29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정부의 입장표명(문서번호 69),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의회 총회 토론(문서번호 7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초안(문서번호 8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 초안(문서번호 85), 변호사 허가, 공증인 허가, 명예판사 임명 검증을 위한 법(문서번호 88).

30 변호사 허가 및 공증인 임명 검증에 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입장(문서번호 73).

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60%는 동독에서 법원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충원될 것이며, 1992년 11월 1일 현재 구동독지역 출신으로 재교육을 받고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05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4명은 판사와 검사선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과거 경력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53명은 서독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보고했다.[31]

신연방주지역의 사법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 능력의 수요는 서독지역 연방주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32]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법치국가 구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총 2억 9,749만 독일 마르크가 연방정부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 중 2억 7,135만 8천 독일 마르크가 인력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1991년 2월에 당시 법무부 장관 클라우스 킹켈은 시니어 모델을 제안하고, 실무 경험과 연륜 있는 법조인, 은퇴한 판사와 검찰, 법무보조원들이 신연방주지역의 사법 체제 구축을 위해 몇 년간 근무에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었다.[33]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임용된 동독지역 출신 법조인들은 포괄적인 재교육을 받았다.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미 1990년 9월에 조율된 계획에 따라 동독 출신의 판사를 위한 직무 병행 재교육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동독 판사의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서독지역 연방주들 간의 행정협정에 따르면 재교육은 일반 코스와 속성 코스로 분류해서 개별 과목별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최하는 주정부가 부담하고, 연방정부는 강사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34] 1992년 이후에는 신연방주 주정부들과 베를린 시정부가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해 다양한 재교육을 제공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베를린시는 임용된 판검사

31 튜링겐지역의 법집행 현황(문서번호 94).

32 튜링겐주 법원 및 검찰의 업무부담(문서번호 104).

33 통일 후 사법 인력 구축(문서번호 95).

34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문서번호 121).

들을 포함한 새로운 법무 인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총 12개 과정으로, 매달, 1주일씩, 1년에 걸쳐 교육이 제공되었다.[35]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 판사 아카데미의 재교육학회를 통해 판사를 재교육하고, 임용된 판사와 검사들을 위한 콜로키움(일상적 직무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문제를 선배 동료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민법과 행정법을 위한 별도의 입문과정을 도입하고, 형사와 판검사들을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기초과정을 도입했다. 작센주는 1991년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의 협력하에 기초과정을 제공했고, 작센-안할트주는 자체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다. 튜링겐주는 1991년에 바이에른주, 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의 지원을 통해 기본 재교육을 실시했다.[36]

경우에 따라서는 동서지역의 법무 인력이 함께 재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었다.[37]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출신 법무 인력을 한 공간에서 교육한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서로 섞이지도 않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38]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으로 파견된 서독의 공무원들이 모두 인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그런 교감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파견 공무원'으로 불리는 서독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파견 공무원'들이 신연방주에서 행정과 사법제도의 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통일과 동시에 7,753개의 지역 행정단위가 개편되고, 행정기구도 재

35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문서번호 60).

36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검사 재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정협약(문서번호 107), 신연방주 사법보좌관의 재교육-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31(문서번호 108),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문서번호 121).

37 튜링겐 법무부 중간급 공무원을 헤센주 풀다시 행정대학에서 연수시키기 위한 조약에 관한 법-튜링겐주 주정부 작성 초안(문서번호 101).

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법집행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진 전독일 법무 교육(문서번호 138).

편되어야만 했다.[39] 주정부 차원의 행정제도 또한 완전히 새로 구축되어야만 했다. 1992년 당시 신연방주의 지역 행정기구에서 근무하던 총인원 170만 명 중에서 약 35,000명이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동독 지역의 새로운 환경에 문제없이 적응한 것은 아니었다.[40] 그로 인해 협력을 위한 기관 내의 분위기가 악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41]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완벽주의가 신연방주의 제도 구축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미 정착된 관료주의에 익숙한 이들이 아주 많은 상세한 규정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동독 체제하에서 근무하다가 인수된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보면 완벽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42]

39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문서번호 114).

40 통일 당시 서독의 공무원들이 동독지역으로 파견되는 것을 선호했다고는 할 수 없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필요보다 적은 인원을 파견할 때도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행정지원(문서번호 119).

41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문서번호 114).

42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문서번호 114).

제3장

사법적 과거청산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 것이 동독 체제하에서 국유화되었던 재산을 '선반환 후보상'의 원칙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재산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신연방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43]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동독 체제하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었다. 통일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은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등기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주총리는 1994년 9월에 발표한 정부성명서를 통해 1992년부터 1994년 9월 사이에 브란덴부르크주의 관청들이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를 처리했으며, 중요한 투자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44]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통일 30주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2018년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해 '선반환 후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정한 것이 통일과정에서 범한

43 독일통일 총서 4권 구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11권 신탁관리청 분야 참조.

44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문서번호 111).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의 독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면, 동독 체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의 적법성 문제와 사통당 정권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과 같은 과거문제와 관련된 법적 처리 문제는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을 주도했거나, 변혁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세력에게는 통일 이후 정의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문제였다. 동독 체제하에서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형사처벌에 대한 원심파기를 포함해 정치적 판결의 피해자들을 위한 복권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비밀경찰에 근무했거나 협조했던 과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도 공직에 있는 문제는 2017년에 불거진 베를린 시정부의 건설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안드레 홀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45]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에서는 2011년에 야당인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의원들이 800명의 판사들이 비밀경찰에 연루된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46]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한 과제는 아니었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연방법무 차관으로 참여했던 클라우스 킹켈이 1992년 2월에 연방법무 장관으로 행한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40년간의 사통당 지배 체제를 청산하고자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47] 그는 특히 복수를 위해 국가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

45 안드레 홀름은 1970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출생했다. 1989년에 국가보위부의 장교 후보생이 되었고, 비밀경찰의 지시에 따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현재 훔볼트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6년 베를린 시정부의 건설부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임명했을 때 1989년에 비밀경찰에 채용되었던 경력으로 인해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는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퇴했다.

46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문서번호 137).

47 통일과 형법(문서번호 82).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신연방지역의 주민들도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하며, 독일의 형법이 국가조직의 불법 행위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법치국가와 인도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독 체제하에서도 가해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동독 체제하에서 행해진 범법 행위는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킹켈 법무 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는 나치 체제하에서 활동했던 판사와 검사가 처벌되지 않았는데, 통일 이후 동독의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과거의 실책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나아가 동독의 법규범에 권력자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동독의 형법과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의 처벌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기간이 짧은 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40년 동안 동독 체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법 행위의 경우 통일조약 315조에 따라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고 했다. 그러나 과거청산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청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통일 직후에 신연방주와 연방법무부는 먼저 동독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형사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동독 체제하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들의 복권 신청과 형 집행 취소와 중단, 사면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상담과 함께 검증작업을 담당했다.[48] 이 위원회가 1994년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사면을 권고한 경우와 수감 기간의 중단 또는 단축을 결정한 경우가 있었다.[49] 나아가 이 위원회가 개별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수감자들이 법률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변혁기의 흥분된 상황에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독 체제하에서 정권에 의해 행해진 불법 행위와 그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1990년 10월 3일에 베를린에 설립된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주로 다루게 되었다.[50]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동독의 정치범에 대한 판결 또는 비밀경찰 소속 요원들의 범법 행위, 동서독 국경에서 행해진 무력 행위 등이었다.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초기에 베를린주 검찰청 소속 검사 7인으로 구성되었다가 1992년에는 60명까지 인력이 증원되었다. 수사본부에 접수된 약 23,000건 중 16,503건은 중급(中級)의 정권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슈타지 소속 인물에 의한 도핑, 법 왜곡 행위, 무력행사 등이 속했다. 이 중 261건은 기소 처리되었고, 동서독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된 6,429건 중에서는 112건이 기소 처리되었다. 2005년 모든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다. 수사본부의 활동으로 피의자 총 1,731명에 대한 1,20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중 753명에게 벌금형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51]

특별수사본부의 활동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구가 니더작센주 잘츠기터시에 있던 동독 정권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문서를 수집·관리하던 중

48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문서번호 23).

49 동독 사법부의 형사처벌 판결 재검토 위원회-신연방주에서 처리된 사건 목록(문서번호 106).

50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문서번호 37).

51 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사실과 통계(문서번호 133).

앙조사처였다.[52] 이 기구는 1961년 11월 15일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제안으로 설립되었고,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이 공동으로 재정을 담당했다. 중앙조사처의 임무는 예를 들어 국경 살인, 정치적으로 부당한 판결, 형집행 파행과 같은 동독 정권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수집·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런 조사를 위한 주요 정보원은 34,000명에 달하는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석방된 사람들이었다. 이 기구의 마지막 소장이었던 그라제만 박사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동독의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이 가혹 행위를 할 경우 서독의 잘츠기터에 기록을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는 국경 장벽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에 대해 총격이 가해지고 난 후에 국경수비대의 한 사람이 장벽 너머로 지금 총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준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동독의 군인들과 형사, 교도소의 교도관들도 잘츠기터 중앙조사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동독 정부는 중앙조사처의 활동이 주권 개입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폐지할 것을 요구했었다.[53] 아이러니한 사실은 1989년 가을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되자 서독의 연방정부가 중앙조사처의 폐지를 고려했었다는 것이다. 동독의 민권운동가들이 잘츠기터 중앙조사처에 수집된 문서를 보존할 것을 서독 연방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이 기구는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까지 존속될 수 있었다.[54] 이후 보관되었던 42,000여 건의 문서는 코블렌츠에 있는 연방문서국으로 옮겨졌다.

동독 정권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안 중에 동서독 국경에서 탈출하려는 주민에게 총격을 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52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문서번호 134).

53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문서번호135).

54 동독 인권침해 범죄행위 관련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제공 요청(문서번호 3).

통일 이후 국경에서 있었던 총격살인으로 피소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유효했던 동독의 형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베를린 주법원은 유효한 사격명령이 없었으며, 베를린 장벽에서의 총격살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현저하게 모순되므로 병사들이 양심을 무마시키는 주입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55]

동서독 국경 총격명령과 관련해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동독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그들은 국경에서의 총격으로 인한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시행법(EGBtGB) 제315조 1항과 형법(StGB) 제1조에 의거하여 동독법, 특히 동독국경법(DDR-GrenzG) 제27조를 적용해야만 하며, 이 법에 따르면 당시의 모든 행위는 행위 시점에 이미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경 문제에 있어 소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위의 재량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56]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소원을 기각하면서 기본법 제103조 2항에 의거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충실한 민주적 입법자가 제정한 형법에 담겨 있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를 통해 그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만, 국가 권력자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범죄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 그것을 가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기본법 제103조 2항에 근거한 엄격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헌법소원 청구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는 국제법의 일반적 규칙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면책권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의 면책권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의 존립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55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문서번호 63).

56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국경 난민에 대한 발사 명령) 가벌성(문서번호 124).

나가며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1995년경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 10월 이후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독 국가에 의해 행해진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억압당한 피해자들을 복권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며, 동시에 신연방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사법 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독에서 법학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또는 평화적인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독의 법조인들과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서독지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신연방지역으로 이주해 온 젊은 법조인들이 협력해서 신속하게 신연방지역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독일판사연맹 회장 크리스토프 프랑크는 201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주정부가 있는 슈베린시에서 열린 신연방주 독일판사연맹 구성 2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했다.[57] 짧은 시일 내에 통일된 법률 체계를 독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법률 공간을 형성한 것은 분명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문서번호 140).

독일통일 총서 28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중재법원 규약	1952년 5월 26일	서독 정부, 영국 정부,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9–77
2	연방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베를린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아–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패트릭, 연방수상 겸 연방외무 장관 아데나워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242–243
3	동독 인권 침해 범죄 행위 관련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제공 요청	1989년 12월 20일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 한스–위르겐 그라제만	Der Spiegel, Ausgabe 51/1989
4	부쎄(Busse) 국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연방법무부 실무단	Küsters, Hanns Jürgen/ 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Nr. 208, S. 918–919
5	동독을 서독의 일부로서 유럽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유럽공동체법의 변경	1990년 3월 16일	연방경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6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	1990년 4월 12일	서독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및 실무단 단장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뢰쉬너, 외무부 법무국(국제 조약 담당) 501과, 외무부 법무국(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 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서독 가입 이후 서독의 국제조약 관련 규율	1990년 4월 12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서독 내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6313E
8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보고	1990년 5월 14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9	서독 정부가 2+4 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	1990년 5월 21일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0E
10	기본법 제23조 2항에 의거한 가입과 관련해 서독법의 동독지역 이전 시 적용 기준	날짜 미상–1990년 7월 초경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Küsters, Hanns Jürgen/ 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Nr. 328 B, S. 1274
11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 여부 문제	1990년 7월 6일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3E
12	동독 민법(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72a. 22.07.1990.
13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7월 20일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14	동독이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에 즉시 가입하는 것이 가져올 국제법적 영향	1990년 8월 6일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힐겐베르크,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5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	제29차 사법위원회 회의 결의 회의록	1990년 8월 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법사위원회, 구(Bezirke) 판사 및 검사	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index.htm, 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mets/17482/index.html?target=midosaFraContent&backlink=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xml/inhalt/e17cbd30-2280-480f-9286-9f4699f2867e.htm
16	통일조약 제3장-사법통일	1990년 8월 31일	서독, 동독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stz, Juristisches Informationssystem für die BRD (juris).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Kapitel III bis V; (https://www.gesetze-im-internet.de/einigvtr/EinigVtr.pdf (Stand: 19.07.2018)
17	독일통일의 사법정치적 영향	1990년 9월 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사민당 슈라이버 의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ß, 2. Sitzung, Ausschußprotokoll 11/3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점령법의 폐지	1990년 9월 13일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 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연방법무부, 연방경제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19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 해지에 대한 성명	1990년 9월 18일	서독 외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20	신연방주의 판사선발심의위원회	1990년 10월 24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기민당 클로제 의원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 ß, 3. Sitzung, Ausschu ß protokoll 11/74
21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법적 지위 존속 문제(동유럽 해양 채굴산업 국제해양금속 컨소시엄)	1990년 10월 24일	외무부, 법무부 (남극회의 및 해상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특수 부분 담당) 504과, 연방재무부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22	통일 이후 국가 간의 조약과 국제 민사법 및 재판	1990년 11월	하이델베르크대학 하인츠-페터 만젤	Juristische Rundschau, November 1990, Heft 11, S. 441-448
23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	1990년 11월 6일	연방법무부, 신연방주 사법행정기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01-302
24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25	독일통일이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	1991년	연방법무부 디트리히 벨프 실장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1.
26	독일통일과 국제법	1991년 1월 3일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프란스 폰 더 던크, 레이덴대학교 페터 H. 코이만스	Faculty Publications, Paper 7,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Spring 1991, S. 510-55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의 신연방주 파견을 위한 기준	1991년 1월 1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내무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재무부	Ministerialblat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991, Nr. 7, 06.02.1991 (Runderla ß des Ministeriums für Inner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II A 1 – 1.11.00 – 18/90, Runderla ß des Finanzministerium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B 1708 – 2 – IV B 2)
28	작센주 법무원법 실행에 관한 법의 초안	1991년 1월 24일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14
29	(신연방주 재건 및 부흥 지원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의 독일 프로그램	1991년 1월 28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329
30	작센주 판사법 초안	1991년 1월 29일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71
31	독일통일 이후 사법 재판	1991년 1월 31일	연방법무부 국장 겸 괴팅겐대학 교수 피터 리스	Deut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Insolvenzrecht, 1991, Heft 1, S. 10-18
32	인건비 지원금 보장에 관한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간의 조약	1991년 3월 13일	브란덴부르크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재무 장관 하인츠 슐로이써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991, Nr. 23, 04.06.1991, S. 237-239, Nr. 27, 26.06.1991, S. 27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법 인력구조 개선방안	1991년 3월 19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n 1/201 und 1/262
34	튜링겐주 사법 관련 공무원 및 판사의 정년 규정법 초안	1991년 5월 14일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노이에스포럼 그룹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32
3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노동법원 업무상황	1991년 5월 17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기민당 의원 리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57
36	튜링겐주 판사 및 법무 인력의 정년 규정법 초안-개정안	1991년 6월 3일	튜링겐 주의회 노이에스포럼 그룹,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93
37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6월 4일-6일	연방주 법무장관회의, 연방수상, 각 연방주 총리, 베를린시 법무 장관	62. Konferenz der Justizminister und -senatoren der BRD vom 4. bis 6. Juni 1991 in Berlin
38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와 관련 주의회에 제출된 발의	1991년 6월 4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법사위원회,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04; Thüringer Landtag
39	튜링겐주 명예판사들의 비밀경찰 연루 여부에 관한 검토 제안	1991년 6월 4일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05
40	튜링겐주 법원조직규정법 초안	1991년 6월 12일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46
41	작센-안할트주 노동법원법 초안	1991년 6월 13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기스, 작센-안할트주 법무 장관 레머스,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54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검사 채용을 위한 인적검사 질문지	날짜 미상–1991년경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4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의 인적 구성	1991년 7월 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41
4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조인에 대한 수사	1991년 9월 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의원 그람코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718
45	신연방주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제공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사용처	1991년 9월 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재무부 장관 하인츠 슐로이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가구 및 재무위원회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879, Band 2: Anlagen, S. 138–141
46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에 대한 주의회 총회	1991년 9월 26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30. Sitzung, Plenarprotokoll
47	튜링겐주 사법부의 중간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2일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총리, 튜링겐주 법무부 장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0–551
48	신연방지역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검토–신문보도 및 도표	1991년 10월 6일	서베를린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 기자 프랑크 파바써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49	튜링겐주 사법부의 하급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11일	튜링겐주 법무부 장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2–56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공증제도	1991년 10월 1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840
51	튜링겐주의 사법 구축 사례	1991년 11월	라인란트-팔츠주 법무부, 튜링겐주 법무부	Neue Justiz 11/1991. S. 475-478
52	시효 문제-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11월 5-6일	연방주 법무장관회의	Herbstkonferenz der Justizminister und -senatoren. 05.-06.11.1991
53	서독지역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된 공무원 및 판사의 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1991년 11월 18일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디체, 튜링겐 내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904
5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동독 국가공인 공증사와 법무사의 채용	1991년 11월 19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켈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00
55	작센-안할트주 행정법원법 초안	1991년 11월 19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958
56	브란덴부르크주 재건 프로그램 초안-4, 5장 사법(Rechtsprechung)	1991년 12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법무 장관 오토 브로이티감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5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변호사 허가	1991년 12월 1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5
58	전 사통당 간부와 비밀경찰 요원의 변호사 허가	1991년 12월 23일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 킹켈, 연방의회, 연방의회 사민당 의원 다수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187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9	신연방주지역의 변호사 검증에 대한 독일변호사협회의 입장	1992년	독일변호사협회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79
60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	1992년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베를린주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30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drig/gesamt.pdf
61	신연방주 사법 체계의 조정에 관한 법 초안	1992년 1월 3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 법무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Bundesrat, Drucksache 10/92
62	변호사 허가 및 공증사 허가 시험 법 초안	1992년 1월 9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연방법무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튜링겐주	Bundesrat, Drucksache 20/92
63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 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년 1월 20일	베를린 주법원	JuristenZeitung (JZ), Jahrgang 1993.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S. 691- 696
64	베를린법원 기록 인력 부족 문제	1992년 1월 23일	베를린 시의회 기민당 하이데 의원, 베를린 시정부 법무 장관, 베를린 시의회	Abgeordnetenhaus von Berlin, 12. Wahlperiode, 22. Sitzung, Plenarprotokoll 12/22
65	작센-안할트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2년 1월 23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48
66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14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울리히 보른	Bundesrat, Plenarprotokoll der 639. Sitzung, S. 84C-85B
67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연방정부 법무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14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 법무부 풍케 차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울리히 보른	Bundesrat, Plenarprotokoll der 639. Sitzung, S. 85B-85D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8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연방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26일	연방정부, 연방회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168
69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26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169
7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실행령 초안	1992년 2월 2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대리 골레어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459
7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 인력 현황 및 절차 조건	1992년 2월 2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그람코프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6
7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보안법 개정안 초안	1992년 3월 1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551
73	변호사 허가 및 공증인 임명 검증에 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입장	1992년 3월 11일	연방변호사협회	Pressemitteilung der Bundesrechtsanwaltskammer vom 11.03.1992
7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의회 총회 토론	1992년 3월 12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법무부 풍케 차관, 사민당 비트 의원, 기민당 루터 의원, 녹색당 울만 의원, 자민당 클라이너트 의원, 민사당/좌파당 호이어 의원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2/82, S. 6834C–6840C
7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의 임시청사를 위한 예산–주정부 신청서	1992년 3월 27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실 실장 첸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63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의 임시청사를 위한 예산-주의회 결정	1992년 5월 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예산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3
77	튜링겐주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	1992년 5월 5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2, Nr. 11, 25.05.1992, S. 187
78	작센-안할트 검사 및 법원 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1992년 5월 6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64
79	브란덴부르크 법무부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업무 보고	1992년 5월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차관 라이너 파우펠	Faupel, Rainer: Der Neuauf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Baden-Baden 1992
80	작센-안할트주 법원구조법의 실행령 초안	1992년 5월 21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1
81	작센-안할트주 법원조직법 초안	1992년 5월 21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3
82	통일과 형법	1992년 5월 22일	연방외무 장관 클라우스 킹켈	JuristenZeitung, 47. Jahrgang, Nr. 10, S. 485-489
83	작센-안할트주 금융법원 규정 실행 초안	1992년 5월 25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4
8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초안	1992년 5월 25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연방의회 민사당/좌파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670
85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 초안	1992년 6월 16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의회 민사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811
86	신연방주 내 사법통일을 위한 법(1992.06.26)-(사법-통일법(Rechtspflege-Anpassungsgesetz)-RpflAnpG)	1992년 6월 26일	연방의회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2. Teil I Nr. 29, 30.06.199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7	튜링겐 행정법원규정 실행법-1차 개정안	1992년 7월 2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주 내무 장관 뵈크 ,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444
88	변호사 허가, 공증인 허가, 명예판사 임명 검증을 위한 법	1992년 7월 24일	연방의회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2, Teil I, S. 1386-1388
89	법무부의 재편과 브란덴부르크주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구상	날짜 미상-1992년 7, 8월경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90	브란덴부르크주 지역노동법원의 1992년 1월 1일-1992년 6월 30일 사이의 노동재판권 업무 및 통계적 공람의 체계화에 대한 보고	1992년 8월 3일	브란덴부르크주 노동법원 대표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91	튜링겐주 노동법원법 실행령	1992년 10월 9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613
92	작센-안할트주 헌법재판소법 초안	1992년 11월 2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80
93	튜링겐의 변호사 현황	1992년 11월 30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62
94	튜링겐지역의 법집행 현황	1992년 12월 2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
95	통일 후 사법 인력 구축	1993년	클라우스 비히만, 위르겐 토마스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72-74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S. 50-5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6	독일통일 실현 후 임금법의 과도 규정에 관한 제2차 규정	1993년 1월 6일	연방정부/연방내무부	http://vwvbund.juris.de/bsvwvbund_14041993_DII42217311.htm
97	튜링겐 판사법	1993년 3월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24
98	튜링겐 검찰 및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	1993년 3월 10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52
99	튜링겐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3년 3월 18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Thüringer Landtag, Parlamentsdokumentation, 1. Wahlperiode: Drucksache 1/2090
100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의 새로운 규정	1993년 4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1900
101	튜링겐 법무부 중간급 공무원을 헤센주 풀다시 행정대학에서 연수시키기 위한 조약에 관한 법-튜링겐주 주정부 작성 초안	1993년 5월 10일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29
102	튜링겐 사법 체계의 전환 및 법원설립법 시행령, 법원구조법 시행령-주정부 초안	1993년 5월 25일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8
103	튜링겐 금융법원법 실행령	1993년 3월 9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48
104	튜링겐주 법원 및 검찰의 업무부담	1993년 11월 19일	튜링겐주 법무부,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866
105	주정부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될 구동독 법의 확정과 개정 관련 연방법무부 측의 신연방주 지원-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42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연방법무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44
106	동독 사법부의 형사처벌 판결 재검토 위원회-신연방주에서 처리된 사건 목록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신연방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295-29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7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검사 재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정협약	1994년 2월 8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사법행정기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hang Nr. 37) S. 338–340
108	신연방주 사법보좌관의 재교육–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31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신연방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34–335
109	1991–1994년 사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법치국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개요	1994년 2월 8일	서독, 신연방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82
110	신연방주 법치국가 체계 구축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내무 장관 칸터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50–58
111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신연방주, 신연방주 주정부 사법 행정부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324–329
112	튜링겐 헌법재판소법–초안	1994년 3월 17일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205
113	독일통일 과정에서 민법의 역할	1994년 6월	쾰른 대학 법학부 노르베르트 교수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194. Band, Heft 2/3, 1994, S. 177–230
114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	1994년 6월 17일	클라우스–헨닝 로젠, 연방내무부	Das Parlament. 17.06.1994. S. 10
11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헌법재판소법	1994일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1994, S. 734
116	튜링겐주–판사 임용 절차 문제	1994년 8월 1일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567
117	과거 비밀경찰에 연루된 경력이 문제가 된 튜링겐주의 변호사	1994년 9월 9일	튜링겐 주의회 자민당 의원 슈테푸타트,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1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8	비밀경찰 연루 경력이 있는 튜링겐주의 공증사	1994년 9월 9일	튜링겐 주의회 자민당 의원 슈테푸타트,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20
119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행정 지원	1995년 3월 1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 ß, 49. Sitzung, Ausschu ß protokoll 11/1567
120	노동재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법률 초안-노동재판-노동신속화법	날짜 미상-1995년 중반 추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121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	1995년 7월 8일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브레멘 자유 한자시, 함부르크 자유 한자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27-329
122	브란덴부르크 주노동법원의 대표 한스 아이제만이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그라페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1995년 9월 5일	브란덴부르크 주법원 대표 한스 프리드리히 아이제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그라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123	사법 업무의 협력에 관한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시 간의 조약에 관한 법 초안	1995년 11월 28일	베를린 시정부,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딥겐,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법무 장관 브로이티감	Abgeordnetenhaus von Berlin, 13. Wahlperiode, Drucksache 13/4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4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국경 난민에 대한 발사 명령) 가벌성	1996년 10월 24일	연방헌법재판소, 구동독 군정책 지도부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Verfassungsbeschwerden am 24. Oktober 1996, zitiert in: Marxen, Klaus / Werle, Gerhard: Strafjustiz und DDR–Unrecht – Dokumentation, Band 2/2, Teilband: Aufrechterhaltung des Grenzregimes – Nationaler Verteidigungsrat. Berlin 2002. S. 608–641
125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민법 통합	2000년 11월 15일	로타 드 메이제르 변호사	Erste Internet–Zeitschrift für Rechtgeschichte, http://rewi.hu–berlin.de/FHI; Vortrag gehalten am 15.11.2000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Potsdam
126	통일과정 연대기–1989.5.2–1989.11.1	2001년	동독, 서독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221–232
127	국가협약을 토대로 하는 사법 분야의 법 개정	2001년	서독 법무부, 동독 법무부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59–6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8	사법보좌관법	2001년	클라우스 비히만, 위르겐 토마스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7;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rpflg_1969/gesamt.pdf
129	연방법무부의 동독 판사와 검사 인수	2001년	연방법무부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8-74
130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바이에른주의 경험	2003년 4월 24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Hanns-Seidel-Stiftung, Electronic Working Paper, Nr. 06-03
131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날짜 미상-2005년 추정	각 연방주 법무 장관, 정권범죄수사본부장 겸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베른하르트 얀츠	Jahntz, Bernhard: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s SED-Regimes seit dem Herbst '89 und ihre Grenzen. http://www.fes.de/magdeburg/pdf/d_27_10_5_3.pdf
132	1945년 이후 정치적 탄압에 대한 보상의 차이	2006년 5월 10일	울리케 글라이니히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Symposium zur Verbesserung der Unterstützung der Opfer der SED-Diktatu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atur, Berli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3	동독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사실과 통계	2007년	법무부, 정권범죄수사본부, 신연방주 검찰청 중점수사부	Klaus Marxen/ Gerhard Werle/ Petra Schäfter (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134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	2008년	니더작센 검찰	Staatsanwaltschaft Niedersachsen (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 Stand 11.08.2011)
135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	2009년 6월 26일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 전 고등검사 한스–위르겐 그라제만	Vogel, Bernhard / Piepenschneider, Melanie / Arnold, Klaus Jochen: „Orte der Freiheit und der Demokratie in Deutschland". in Konrad Adenauer Stiftung (Hrsg.). Sankt Augustin, 2009
136	뉴욕에서 포츠담으로–한스 오토 브로이티감의 기억	2010년	브란덴부르크주 전 법무 장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Bräutigam, Hans Otto. Von New York nach Potsdam – Ein Diplomat wird Landespolitiker. in: Von Gersdorff, Andrea / Lorenz, Astrid (Hg.), Neuanfang in Brandenburg. Potsdam 2010.
137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2011년 7월 21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야당(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경찰	Metzner, Thorsten. 2011. Opposition: Jetzt auch Stasi–Check für die Justiz. In: Potsdamer Neueste Nachrichten, 21.07.2001, S. 16.
1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법집행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진 전 독일 법무 교육	2011년 10월 1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전문대학교 마틴 클래쎈	Fachhochschule für Rechtspflege Nordrhein–Westfalen. (Hrsg.). Erinnerungen 1991–2011. Bad Münstereifel, 201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9	신연방주로의 판사 파견	2011년 11월 2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에르빈 젤레링	Deutscher Richterbund, http://www.drb.de/cms/fileadmin/docs/20_jahre_rede_sellering.pdf
140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011년 11월 24일	독일 판사연맹 회장 크리스토프 프랑크	Deutscher Richterbund, http://www.drb.de/cms/fileadmin/docs/20_jahre_rede_frank.pdf
141	작센-안할트의 20개 법원 건물	2012년 10월 1일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마틴 루터 대학교 교수 하이너 뤽	Ministerium für Justiz und Gleich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Referat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Hrsg.); https://mj.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J/MJ/publik/20_gerichtsgebaeude.pdf (Download 25.04.2018)
142	브란덴부르크주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 검토 문제	2012년 10월 26일	슈타지문서관리국 특임관 크리스티안 보스	Deutschland Archiv, 45. Jahrgang, 10/2012,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40072/schwierigkeiten-mit-der-wahrheit
143	통일 이후 사법 체계의 개편	2015년 8월 16일	전 작센-안할트주 법무 장관 쿠어트 베커	Becker, Curt: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vor koreanischen Beamten am Institut für Koreastudie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unveröffentlicht, 2015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143)

문서 번호 1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의 중재법원 규약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정부, 영국 정부,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내용_

서독과 서방 전승 3개국 간에 독일조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다룰 권한을 지닌 중재법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재법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인은 연방정부가, 전승 3개국이 각각 1인씩 총 3인을,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3인의 '중립적 구성원'을 지명한다. 구성원의 지명에 있어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제법원의 원장에게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구성원은 임기 기간 및 그 이후에 면책권을 누린다. 독일 국적이 아닌 법원의 판사들은 서독 영토 내에서 외교 사절 단장에 상당하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 법원에서의 협상은 공개로 하나, 자문은 비공개로 한다.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이 법원은 그 판결의 집행 만기일을 규정할 수 있다. 법원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69-77

문서 번호 2

연방수상 앞으로 보내는 전승국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3인의 베를린에 대한 서신

1952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미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맥클로이, 프랑스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프랑수아-퐁세, 영국 주독일 주둔지 최고위 특임관 커크패트릭, 연방수상 겸 연방외무 장관 아데나워

내용_

이 문서는 서방 연합국 3개국으로 구성된 통치위원회 3인의 특임관들이 1952년 5월 26일에 서독 수상에게 보낸 서신으로, 서베를린에 대한 서방 연합국 점령권 행사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베를린에 대한 서방 연합국의 점령권 행사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서베를린에 대한 점령권의 행사는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 연방정부가 서베를린과 서베를린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방 연합국은 서베를린이 서독의 법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통화, 신용 및 여신, 국적, 여권 부문, 입출국 및 수송, 관세 및 무역지역의 단위, 상품교역과 국제무역 그리고 지불협정의 자유 등에 대한 법률에 적용될 것이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54, Nr. 3, 29.03.1954, S. 242-243

문서 번호 3

동독 인권 침해 범죄 행위 관련 서독 문서보관소의 문서 제공 요청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 한스-위르겐 그라제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잘츠기터에 설치된 동독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앙문서보관소의 마지막 소장 그라제만이 작성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1989년 12월에 동독 민권운동가들은 1961년부터 중앙조사처에 수집된 동독의 인권 침해 등 범죄 행위에 관한 문서를 계속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이 동독의 과거청산 작업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독 정부는 이 조사처를 폐지할 것을 계속 요구했었다. 사민당이 집권한 주들은 재정지원을 중단했고, 기민당이 이끄는 주들은 유지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제는 기민당도 이 기관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라제만 소장은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_ Der Spiegel, Ausgabe 51/1989

문서 번호 4

부쎄(Busse) 국장의 메모

1990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실무단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수상청의 부쎄 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동독과 서독의 법률을 통합하기 위한 실무그룹의 업무 진행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무단은 현 사법문제와 사법통일의 구조적 문제, 동독의 개혁 노력에 대한 가능한 지원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 연방법무부의 문서는 다양한 서독 부처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조율된 문서가 아닌 연방법무부의 문서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설명이 필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연방법무부의 문서가 주정부들에게 공개되어도 되는가?
- 연방법무부 문서의 적용 범위: 연방법무부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인 '과도기'까지만 관여하고, 그 이후의 통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미해결 재산문제: 구체적인 전문 업무는 연방내독관계부가 담당한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Nr. 208, S. 918-919

문서 번호 5

동독을 서독의 일부로서 유럽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유럽공동체법의 변경

1990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경제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유럽공동체에 포함될 때 유럽공동체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포함되면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이 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전환규정도 도입되어야만 한다. 전환규정의 적용기간은 경제화폐통합이 이루어진 후 최종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 문서의 결론에서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럽공동체의 법규정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 유럽공동체 법규정의 대부분은 조정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전환규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 공동체의 법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통일독일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개정과 전환규정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유럽공동체법에 근거하게 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문서 번호 6

독일통일 달성 시 국제법 조약들의 변경

1990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법무국 산하 '국제법적 문제' 담당 실무단 및 실무단 단장 아이텔 국장, 외무부 법무국(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과장 뢰쉬너, 외무부 법무국(국제 조약 담당) 501과, 외무부 법무국(전후 문제-군대 주둔, 외국자산, 외채, 보상, 서독 영토 범위 등의 전쟁 및 점령으로 비롯된 문제 담당) 503과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이 실현될 경우 필요할 국제법적 조약의 변경에 대해 서독 외무부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실무안에서는 다양한 조약들의 현재성과 그것의 서독에 대한 각각의 의미가 검토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의미가 큰 서독(서독)의 조약들'이라는 제목의 제1조 1항 '서방 측에의 통합' 장에서는 서방 측 전승 3개국과의 조약들이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독일조약과 전환협정이 여기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군사적 조약들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1954년의) 외국 군대의 서독 주둔에 대한 조약, 나토 조약, 브뤼셀 조약, 나토군 지위협정 및 나토군 지위 추가협정이 그것이다. 그 외 런던채무협정과 유럽 경제공동체 조약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 조약 등이 논의되었다. 인권에 대한 조약들 중에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및 그 추가 협약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술되었다.

그다음으로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 조약을 포함한 서독 정부와 동구권과의 조약들(Ostverträge)이 검토되었다. 또한 서독과 동독, 국제기구 및 비제도적 다자간 조약들도 다루어졌다.

제2항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큰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조약들'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이 논의되었다. 우선 '양자 간 조약'에서는 동독의 친선 조약들 및 외국군 주둔 협정이 논의되었다. '다자간 조약들' 항목에서는 바르샤바 조약 및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가 다루어졌다. 다음 항목들에서는 동독의 무역에 관한 합의들 및 동독의 영토와 관련된 조약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동·서독이 조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독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약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39E

문서 번호 7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서독 가입 이후 서독의 국제조약 관련 규율

1990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과장 람바흐, 서독 내무부

내용_

통일 이후 연방법을 동독지역에 도입하는 내용의 연방법 과도규정(Überleitungsgesetz)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동독지역에도 통일이 달성되는 것과 동시에 연방법의 효력이 즉각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 연방내무부가 이 법안을 준비할 책임을 맡았다. 연방내무부는 다른 모든 연방 부처들에 대해 각 부에서 담당하는 법률, 명령, 행정지시 및 조약들을 파악한 후 다음 두 범주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범주 1: 통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

범주 2: 통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 까닭은 통일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법규정 혹은 조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이들에 대해 서독 혹은 그 조약의 상대국이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무부는 '통일된 독일의 가장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연방법들만을 위의 첫 번째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6313E

문서 번호 8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한 보고

1990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진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을 논의하였다. 즉, 1) 통일 시 먼저 베를린에 2) 독일 전체는 이후 과도기 중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1, 2단계의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이 가능하게 보이기는 하나, 서독 외무부가 추구해 온 전 권한 및 책임의 동시 소멸 방식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의 내용 및 그 범위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 4개국들은 민주적으로 통일된 독일을 자신의 법적 권리 행사에 있어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즉, 독일이 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며 그로써 전승 4개국의 권한 및 책임도 그 목표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이들의 점령 권한은 통일 시점까지 계속 해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문서 번호 9

서독 정부가 2+4 회담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통일을 선언할 경우 그것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에 대해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의 내부 문서로 2+4 회담의 틀에서 서독 정부가 일방적인 성명으로 독일통일을 발표할 경우 그것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외무부는 이 문제를 3가지 관점에서 고려하였다.

첫째, 한 국가가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했을 경우 그 국제법적 구속력은 한편으로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Estoppel-Prinzip,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명을 발표한 국가가 얼마나 국제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둘째, 2+4 회담의 틀에서 서독 외무부가 통일독일을 선언했 때 그것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kumulative Voraussetzungen). a) 통일된 독일과 서독 간의 동일성 b) 그 일방적인 선언이 월권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 4개 전승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독 외무부 단독으로도 통일된 독일에 대한 성명으로서 발표할 수 있다. b) 4개 전승국의 권한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들 4개 전승국의 승인 혹은 제3국과 4개 전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서독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이 이러한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0E

문서 번호 10

기본법 제23조 2항에 의거한 가입과 관련해 서독법의 동독지역 이전 시 적용 기준

날짜 미상–1990년 7월 초경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내용_
사법통일의 실현과 생활 수준의 평준화를 위해 국가 통일의 완수와 기능 면에 있어 필수적인 서독법의 규정들은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어야 할 법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데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 특수한 정치적 의미(예: 민주주의 및 법의 원칙)
- 사안의 긴급성(기대되는 법적 교류의 강도)
- 법적 수요(세부 문제를 규정하는 특별법보다는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규정을 우선 이전)
- 국제법 및 EU법과의 조화 의무
- 전문적 특수성
- 재정적 영향력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Hofmann, Daniel.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Nr. 328 B, S. 1274

문서 번호 11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 여부 문제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서독 외무부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형태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였다.

이 외무부 문서는 2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는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과 관련한 동독 측의 1990년 7월 1일 자 '쟁점 검토 리스트'가 논의되었다. 이 동독 측 리스트 중 4항에서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조치 및 처분들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리스트에서는 동·서독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그 조치 및 처분들에 상응한 의무를 인정함을 밝히고, 나머지 4개국은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의 일환으로 이를 양지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실현은 국가적 통일의 완성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이 동독 측 제안은 소련의 1990년 6월 22일 자 "독일과의 '국제법적 최종 규정'을 위한 기본 원칙"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통일 전 4개 전승국이 내린 모든 조치들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독일에 대한 '국제법적 최종 규정'에 넣거나 혹은 이러한 내용을 동·서독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고 4개 전승국이 이를 양지하는 방식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처분과 조치라는 표현은 점령법의 지나친 정형적 해석을 불러올 것인데, 이는 통일 이후의 독일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3E

문서 번호 12

동독 민법(ZGB) 개정과 보완에 관한 법(민법개정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1975년 6월 19일에 발효된 동독 민법은 이 개정안의 부록에 의거해 개정되고 보완된다.

- 국가 공증에 관한 1986년 2월 5일 자 법 개정
- 토지거래규정: 국민에게 주어진 법적 수단에 관한 규정 통일 및 행정 결정에 관한 후심사를 위한 관할 법원 결정에 관한 1988년 12월 14일 자 규정
- 민법전 제17조, 제20조, 제22조 1절의 인민재산 비분리성과 비부담성은 철폐된다.
- §62 가격: 가격은 계약 당사자와 합의된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가 정한 가격 결정에 관한 법규정은 그대로 남는다.
- §257 피보험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 해지 가능성
- §454 청구 저당의 비독립성
- §480 강제집행 기한은 10년이다.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72a. 22.07.1990.

문서 번호 13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해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2+4 회담 편집위원회 파견 단장 마르틴 나이

내용_

이 외무부의 문서는 기본법 23조 2항에 따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경우 국제법적·헌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의 통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었다. 외무부는 동독 정부에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 및 가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법 23조 2항의 규정 내용은 헌법적 단일체(Verfassungseinheit)의 형성에 대한 것이다. 헌법적 단일체의 구성은 개념적이자 시간적으로 국가적 단일체가 선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법적·헌법적 관점 양자 모두에서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은 가입에 의해 실현되며, 이때 가입과 가입 선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가입 선언 상의 표현이 국가적 단일체의 형성 시점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48E

문서 번호 14

동독이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에 즉시 가입하는 것이 가져올 국제법적 영향

1990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법무국 (일반 국제법 담당) 500과 힐겐베르크, 서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23조 2항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변화 영향에 관해 외무차관과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즉각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동독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어떤 조약도 체결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며,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는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로서 붕괴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국가로 지속되며, 그의 국경이 확대된 것이고,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5E

문서 번호 15

제29차 사법위원회 회의 결의 회의록

1990년 8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법사위원회, 구(Bezirke) 판사 및 검사

내용_

- 판사선출위원회를 위한 판사 검증 작업 지속

– 제출된 판사의 인사기록을 추가 검증

– 전 구에서 구 단위 판사선출위원회 후보로 10명의 판사를 선출

– 판사 및 검사의 슈타지 협력 여부 검증 →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임명위원회의 모든 후보로부터 서면 성명을 요구

- 검사임명위원회를 위한 검찰 검증작업 지속: 전 구에서 신규 선출; 검사임명위원회당 한 명의 후보
-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임명위원회는 잘츠기터(Salzgitter) 소재 중앙법무기록보관소와 제1 후보자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법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동독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시한다.

출처_ 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index.htm, 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mets/17482/index.html?target=midosaFraContent&backlink=http://startext.net-build.de:8080/barch/MidosaSEARCH/DA1-26809/xml/inhalt/e17cbd30-2280-480f-9286-9f4699f2867e.htm

문서 번호 16

통일조약 제3장-사법통일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 제8조 서독법의 이전: 서독법은 가입 지역에 발효된다.
- 제9조 효력이 유지될 동독법:

– 주정부의 기본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유럽연합법과 합의된 동독의 법은 효력이 유지된다.

– 제2, 3항에 의거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이 연방정부의 독점 입법 대상일 경우, 연방법이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 유럽연합법: 개정과 규정 보충을 포함한 유럽 연합에 관한 협약과 국제 협정 및 협약, 결의안들은 가입 지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 제11조 서독의 협약: 국제법적 협약 및 협정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는 부록 I에 언급된 협약을 제외하고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 제12조 동독의 협약: 동독의 국제법상의 협약은 그 지속성과 통일, 철폐를 규정하기 위해 참여 국가의 이해관계와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 질서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동독과 협약을 맺은 유럽연합 가입 상대국의 권한을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
- 제13조 기관 이전:

– 가입 지역 내 행정 기구를 비롯한 공공 행정 및 사법과 관련된 기타 기관들은 주정부가 관할한다.

– 서독 정부의 기본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담당 최고 관청이 관할한다.

- 제15조 주정부의 행정을 위한 과도기 규정:

– 신연방주 내 주정부 대변인과 연방정부 담당자의 책임을 주정부 총리 선출 시까지 인수한다.

– 재건과 전문 업무 수행에 있어 구연방주와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행정을 지원한다.

- 제19조 공공 행정 결정의 효력 유지:

– 가입 발효 전까지 이루어진 동독의 행정 결정들은 효력이 유지된다. 법치국가적 원칙 혹은 본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들은 철회될 수 있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stz, Juristisches Informationssystem für die BRD (juris).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Kapitel III bis V; (https://www.gesetze-im-internet.de/einigvtr/EinigVtr.pdf (Stand: 19.07.2018)

문서 번호 17

독일통일의 사법정치적 영향

1990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사민당 슈라이버 의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법무 장관 크룸직이 연방주의회 법사위원회에서 통일조약의 부록 1,000페이지 중에서 약 200페이지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 부록에는 어떤 법률이 동독지역에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크룸직은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 등과 같은 법률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크룸직은 이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또한 동독지역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동독지역에서 '탈비밀경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작업은 동독이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당의 클로제 의원은 지금까지 동독에서 활동 중인 판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판사로 근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1945년 이후 서독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사민당의 한 의원은 동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판사들이 교체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아펠 의원은 동독 판사들의 재사회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사민당의 슈라이버 의원은 동독의 민법 담당 판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사들을 전원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ß, 2. Sitzung, Ausschußprotokoll 11/39

문서 번호 18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점령법의 폐지

1990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정치국 (베를린 및 전 독일문제를 포괄하는) 국제정치 210과 율리우스 게오르크 루이, 연방법무부, 연방경제부

내용_

본 암호화된 외무부의 전문에서는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4대 전승국의) 점령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독일 측 실무단이 만든 안에 따르면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해지 혹은 종료와 함께 점령법은 베를린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관할권 소재의 협의를 포함하여 확정된 절차는 각 관할지의 정치적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추후 시점에 다시 논의가 될 것이다. 외무부는 이 때문에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이 해지 및 종료되는 문제를 독일 각 연방 간에 조정해 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문서의 다음에서는 그 상세 제안 내용을 6개항에 걸쳐 요약하고 있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문서 번호 19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 해지에 대한 성명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외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외무부에서 작성한 보고로 4대 전승국의 권한 및 책임의 해지에 대한 성명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를 위한 형식 및 범위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 보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걸쳐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35개 헬싱키 협정 회원국 외무 장관 회담이 개최되기 전 1990년 10월 1일에 뉴욕에서 동 성명에 4개국 외무 장관이 서명해야 한다.

둘째, 영국이 동 해지 문제와 얽힌 복잡한 문제들의 조정 역할을 맡는다. 영국 측은 성명의 문안을 우선 프랑스, 미국 및 독일 측과 협의한 이후에 소련 측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영국 측이 동일한 내용의 성명안을 프랑스, 미국 및 소련 측에 제안한 후, 동·서독의 두 외무 장관의 배석하에 4개국 외무 장관들이 성명에 서명을 할 것이다.

서독 외무부는 이러한 영국 측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4개국 외무 장관들이 성명에 서명을 하면, 동·서독의 두 외무 장관은

동 문서의 추가 문서 형식을 통해 이를 양지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대안으로 독일이 이 권한 해지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이 더 잘 표현될 것이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98468E

문서 번호 20

신연방주의 판사선발심의위원회

1990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기민당 클로제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에서 법무 장관 크룸직과 기민당의 클로제 의원이 5개의 신연방주 판사선발심의위원회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먼저 클로제 의원이 법무 장관에게 구동독의 판사들이 신연방주 판사선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동시에 브란덴부르크주 판사선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비숍이 임명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 장관은 브란덴부르크주의 6개 판사선발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 법무 장관이 비숍을 6개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는 했지만, 비숍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숍 자신도 본인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법무 장관은 신연방주의 판사를 심의하는 작업이 정해진 3개월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클로제 의원은 비숍이 과거에 동독의 사법 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ß, 3. Sitzung, Ausschußprotokoll 11/74

문서 번호 21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법적 지위 존속 문제(동유럽 해양 채굴산업 국제해양금속 컨소시엄)

1990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외무부, 법무부 (남극회의 및 해상법,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특수 부분 담당) 504과, 연방재무부

내용_

본 외무부 차관에 대한 보고 초안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법적 지위 존속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유럽 해양 채굴산업 컨소시엄인 국제해양금속(Interozeanmetall)이 문제가 되었다.

외무부 차관은 상기 컨소시엄에서 동독 지분의 유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 동 보고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외무부는 상기 컨소시엄에서 동독 지분을 유지하는 문제는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의 권리문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무부의 모든 관련 담당 부처는 동 컨소시엄 내 구동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원자재 정책이나 미래 학술적-기술적 협력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 컨소시엄 참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인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해양금속 협정을 관리하고 있는 폴란드 측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을 통해 독일의 동 컨소시엄 회원국 지위가 소멸하였음을 전달할 것이다. 연방재무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구동독의 컨소시엄에 대한 (약 백만 마르크 상당의) 기존 의무적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Akte ZA 151668E

문서 번호 22

통일 이후 국가 간의 조약과 국제 민사법 및 재판

1990년 11월

담당자 / 기관_ 하이델베르크대학 하인츠-페터 만젤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이 각기 체결했던 다양한 국제조약과 관련된 것이다. 통일로 인해 이전에 체결된 국제조약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국제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그것이 독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조약이 체결되었던 시기에 따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만 했다. 그럴 경우 후속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에 주의해야만 했다. 후속 국가에 의한 국가 간 조약의 승계 문제를 규정한 유엔 비엔나 협약이 1978년에 체결되었지만, 동독이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었다. 이 협약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영토의 일부로 통합될 경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두 국가가 통합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게 될 때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약을 통해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기 위해서 조약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독일 화폐통합 조약의 13 II조는 국제무역에서 동독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통일독일이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57년에 자를란트 지역이 서독으로 통합되었을 때 서독 정부는 자를란트 지역이 가지고 있던 국제법적인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는 않았다. 통일조약 11조에 따라 서독이 체결한 모든 국가조약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동독이 체결한 국가조약은 조약 파트너와 논의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일된 독일은 법적으로 해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이런 조약들이 모든 독일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동독지역의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나아가 동독지역의 법원만이 이 조약을 다룰 권한이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자료의 저자는 동독이 체결한 조약의 파트너들과 조약의 지속성과 조정 여부를 협상하는 동안에는 이 조약들이 모두 일단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어야만 한다고 본다.

출처_ Juristische Rundschau, November 1990, Heft 11, S. 441-448

문서 번호 23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

1990년 11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신연방주 사법행정기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동독 체제하에 이루어진 형사판결을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연방주들은 1990년 10월 30일 이 계획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심사를 위한 독립위원회 설치
- 이 위원회는 복권 신청과 형 집행 취소와 중단, 사면 신청서 제출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상담한다.
- 검증은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 연방법무부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계획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01-302

문서 번호 24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구동독 출신으로 판사, 검사에 지원할 경우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사회적, 생태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 채용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 국가보위부,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
- 사회주의통일당의 지구당 이상 기관의 지도위원
- 국가전선조직의 고급 간부
- 동독 고등법원의 검사, 지역 법원장, 지역 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다른 상급 법률기관의 간부급 지도자 등과 같은 지위 보유
- 이런 직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정치적 자유화를 위해 기여한 것이 분명하면 예

외 규정을 적용해서 임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25

독일통일이 연방법무부의 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

199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디트리히 벨프 실장

내용_

이 문서는 연방법무부에서 통일 이후 법무부의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의 배경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경: 연방법무부 장관은 통일조약 제13 II조에 의거 동독 법무부의 검증 혹은 해체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방법무부 장관은 기존 기관의 해체를 결정하였다.
- 업무 영역의 확대

- 법무부 해체 이후 많은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
- 기존 업무를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동독-불법 행위에 대한 복권과 같은 새로이 생겨난 업무를 처리해야 함.

- 해체를 위한 세부 내용

- 동독 법무부: 연방법무부는 각 청사 내에 본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소를 설치한다. 업무의 범위는 사법통일과 사법 구축, 가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업의 수행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법무부는 법에 관한 형식적 지식과 더불어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정통한 인력을 인수해야 한다.
- 동독 최고 법원(Oberstes Gericht): 세부적인 해체 업무는 연방법무부와 연방대법원장이 나누어 처리한다.
- 동독 대검찰청(Generalstaatsanwalt):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검찰 총장의 관할은 통일된 독일 전역으로 확대된다. 동독 대검찰청 소속 관청들과 그곳에서 기록된 전과 기록부는 연방대법원의 연방검찰 총장이 인수한다.

- 동독 특허청: 동독 특허청은 독일 특허청의 관할하에 들어간다. 베를린 소재 기존 동독 특허청의 '구-절차'는 해체되어야 하며, 신규 신청 건은 모두 뮌헨 소재 중앙 특허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새로운 부의 신설과 인력 강화를 통해 전 분야의 업무 처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출처_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1.

문서 번호 26

독일통일과 국제법

1991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_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프란스 폰 더 던크, 레이덴대학교 페터 H. 코이만스

내용_

48페이지로 이루어진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독일통일 과정의 국제법적 측면들은 1990년도 말의 시점에서 보아 대체적으로 이미 규정된 상태라고 견해를 밝혔다. 본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관련한 국제법적 변화가 논의되었다. 그다음 부분에서는 통일 전에 동·서독이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동안의 동·서독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4대 전승국, 폴란드, 헬싱키 협정, 유럽공동체,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외부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되었다. 독일의 통일이 국제법적으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다시금 되살릴 것인지의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출처_ Faculty Publications, Paper 7,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Spring 1991, S. 510-557

문서 번호 2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의 신연방주 파견을 위한 기준

1991년 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내무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재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구동독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신연방주로 파견되는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판사 등을 선발하는 기준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로 브란덴부르크주로 그들을 파견했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파견 공무원의 선발 기준, 파견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Ministerialblat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991, Nr. 7, 06.02.1991 (Runderlaß des Ministeriums für Inner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II A 1 - 1.11.00 - 18/90, Runderlaß des Finanzministerium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B 1708 - 2 - IV B 2)

문서 번호 28

작센주 법무원법 실행에 관한 법의 초안

1991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정부가 제출한 법원과 검찰의 법무원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의 초안이다. 여기에는 법무원의 조건, 관할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원의 재교육 및 법무원 업무 구조의 재편성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상적인 법무원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유동성 있는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부연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14

문서 번호 29

(신연방주 재건 및 부흥 지원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의 독일 프로그램

1991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가 작성해서 주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독일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주 단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이 문서의 4.3장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제공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부록 3에는 브란덴부르크주 법원행정의 구축과 법무부 및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유럽, 연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 신연방주 법무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 7에는 1991년 1월 15일에 신연방주의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라이프치히 지역에 파견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판사, 퇴직 판사, 검사, 법무원, 관공서 책임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329

문서 번호 30

작센주 판사법 초안

1991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가 도입하려고 준비한 판사법 초안이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98조 3항에 따르면 판사의 임명은 각 연방주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 법안은 독일 판사법을 근거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센주에서는 이 법안도 신속하게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때까지는 작센주에서 동독의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의 기초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71

문서 번호 31

독일통일 이후 사법 재판

1991년 1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국장 겸 괴팅겐대학 교수 피터 리스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의 사법 재판에 관해 분석한 논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통일조약이 추구하는 목표, 구동독지역의 사법 기능과 재판 기능의 변화, 재판 현황 및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통일 이후 사법 재판이 전체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동시에 화폐통합이 1990년 동독의 개혁에 준 영향을 언급하고, 통일 이후에 마련된 사법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명한다. 그는 신연방지역 사법 재판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규모면에서 5개 신연방주와 유사한 규모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사법 재판을 비교한다. 그는 신연방지역에서도 재판의 수가 전 독일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출처_ Deut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Insolvenzrecht, 1991, Heft 1, S. 10-18

문서 번호 32

인건비 지원금 보장에 관한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간의 조약

1991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재무 장관 하인츠 슐로이써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지역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와 관련해 양쪽 지역의 상이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의 차액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보장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인건비의 차액을 산출하는 작업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도와주기로 합의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991, Nr. 23, 04.06.1991, S. 237-239, Nr. 27, 26.06.1991, S. 276

문서 번호 3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법 인력구조 개선방안

1991년 3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소속 사민당 의원들이 신연방주의 사법 인력구조 개선과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사법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책정된 재원은 서독지역의 판사, 검사, 법무사 등을 신연방지역으로 파견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재원의 분배는 각 지역의 인구 크기에 비례하며, 그에 따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는 70명의 퇴직 법조인, 140명의 판사, 검사, 70명의 법무사가 파견되었다고 보고했다.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994년 이후에 사법 영역의 인건비는 모두 주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급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n 1/201 und 1/262

문서 번호 34

튜링겐주 사법 관련 공무원 및 판사의 정년 규정법 초안

1991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주 법무 장관 엔취,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노이에스포럼 그룹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주 주정부가 부족한 사법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서독지역으로부터 경력직 판사를 충원하기 위해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법의 초안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32

문서 번호 3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노동법원 업무상황

1991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기민당 의원 리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기민당 소속 리만 의원이 노동법원의 업무처리 현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의 법무 장관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5월 16일 현재 주노동법원에는 16,300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법 체계의 구축을 위해 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되어 근무 중인 인원은 현재 판사 61명, 법무사 24명이다. 노동법원의 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24명의 판사직, 12명의 고급 법무사, 30명의 중하위급 법무보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현재 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된 5명의 판사와 2명의 법무사 외에 우리 주에서 16명의 판사와 14명의 법무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했다. 아직 3명의 판사와 10명의 법무 인력을 더 충원해야만 한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57

문서 번호 36

튜링겐주 판사 및 법무 인력의 정년 규정법 초안-개정안

1991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노이에스포럼 그룹,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의 노이에스포럼 그룹이 판사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정년규정법의 초안의 개정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이 법에 언급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자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제출된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어서, 199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93

문서 번호 37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6월 4일-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주 법무장관회의, 연방수상, 각 연방주 총리, 베를린시 법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체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처벌문제에 대해 신연방주의 법무 장관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구조 때문에 베를린 시정부의 법무부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 베를린에 '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 1991년 5월 17일 연방총리와 각 연방주 총리들과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베를린주 법무부와 조율하여 정권범죄수사본부에 경험이 풍부한 수사인력을 추가 충원할 것이며 각 연방주 내무 장관들에게 베를린 경찰의 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5개 신연방주(州)의 형사소추기관은 베를린 형사소추기관 및 연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연방주의 법무 장관들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출처_ 62. Konferenz der Justizminister und -senatoren der BRD vom 4. bis 6. Juni 1991 in Berlin

문서 번호 38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와 관련 주의회에 제출된 발의

1991년 6월 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법사위원회,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의 기민당이 변호사 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발의안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유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법 체계의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동독 체제하에서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던 사람이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정부와 사법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도입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튜링겐 주의회의 기민당은 주정부가 연방회의를 통해 변호사가 비밀경찰과 연루되었었다는 의혹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주정부는 비밀경찰과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변호사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제안은 주의회에서 다수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04; Thüringer Landtag

문서 번호 39

튜링겐주 명예판사들의 비밀경찰 연루 여부에 관한 검토 제안

1991년 6월 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의 여러 정당이 명예판사들이 과거에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주의회는 주정부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경찰과 연루되지 않았던 사람들만 명예판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명예판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 사람들은 명예판사 후보군에서 제외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이 선서를 통해 본인이 그런 경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05

문서 번호 40

튜링겐주 법원조직규정법 초안

1991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제출한 법원조직규정법의 초안이다. 이 법은 등기부등록소를 지방 법원에 설치, 등기부등록소 지원, 지방법원의 관할영역 등을 규정한다. 나아가 1976년 2월 5일에 발효된 법원과 국가공인을 위한 통번역사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46

문서 번호 41

작센-안할트주 노동법원법 초안

1991년 6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기스, 작센-안할트주 법무 장관 레머스,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노동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노동법원법의 초안이다. 그 근거는 통일조약이다. 통일조약에 따라 작센-안할트주도 노동법원을 설립해야만 했다. 작센-안할트주에서 발생한 노동법 관련 분쟁은 1989년 2,759건에서 1990년에 16,104건으로 증가했다. 1991년 3월 현재 이미 7,849건의 분쟁이 계류 중이다. 그것은 기존의 법원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기존의 판사는 민사, 가정, 형사법 관련 재판까지 담당해야만 한다. 이 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법 관련 분쟁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송되게 된다. 신설될 노동법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서독지역의 니더작센주에서 파견될 판사와 작센-안할트주의 판사들이 협력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노동법원이 설치될 지역 또한 명시되었다. 법원 설립의 기준은 작센-안할트주 내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 분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었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542

문서 번호 42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검사 채용을 위한 인적검사 질문지

날짜 미상–1991년경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판사, 검사 채용을 위해 작성해야만 하는 인적검사 질문지이다. 27개의 상세한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슈타지 관련 행위에 대한 검증을 위한 판단 준거를 담고 있는 초안으로 1994년 1월 만들어진 준거를 재차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를 요청한 개인이 동독에서 행했던 행위를 재임용에서 고려하는 것이 판사선발위원회의 목적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4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의 인적 구성

1991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의 인적 구성에 대한 주의회 사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검사장으로 임용될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경력에 대한 것이었다. 주정부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과 법원의 책임자급에 임용될 사람들은 전문 지식과 능력 그리고 과거 경력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임명을 위해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2,5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했었다고 답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41

문서 번호 4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조인에 대한 수사

1991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의원 그람코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법조인에 대한 조사에 관해 주의회 민사당의 그람코프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답변의 핵심은 현직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검토는 통일조약을 통해 결정된 합법적인 업무이며, 판사 또는 검사가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과제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력을 검토하고, 그들이 주관했던 재판을 검토한다고 했다. 판사나 검사가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만 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피의사실이 드러나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 기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718

문서 번호 45

신연방주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제공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사용처

1991년 9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재무부 장관 하인츠 슐로이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가구 및 재무위원회

내용_

1991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신연방주의 지원사업을 위해 1억 6,600만 DM을 예산에 반영했다. 1992년에는 1억 6,670만 DM이 될 것이다. 이 재원은 인건비, 출장비, 가족별 거수당으로 사용된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법과 법무 영역으로 1991년에 3,820만 DM, 1992년에 4,110만 DM을 필요로 한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879, Band 2: Anlagen, S. 138-141

문서 번호 46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에 대한 주의회 총회

199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변호사 허가와 관련해 열린 주의회 총회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의 슐츠 의원은 동독 체제하에서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민당의 제안을 설명했다. 과도기 동독의 크렌츠와 모드로우 개혁 정부하에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아니었다고 했다. 통일조약에 따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변호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무 장관뿐만 아니라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변호사협회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사당의 코흐 의원은 기민당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을 체제 밖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 9월에 발효되고 1994년까지 신연방지역에 계속 적용될 동독의 변호사법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런 이유로 민사당은 기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발언했다.

사민당의 바이 의원은 과도기 동독의 드 메지에르 정부가 변호사 허가와 관련해 무책임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지적하고, 사민당은 기민당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노이에스포럼의 가을슬러 의원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공직과 무관한 자영업에 대한 사상 통제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민당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튜링겐 주정부의 옌취 법무 장관은 자신이 판사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밀경찰에 연루되었던 판사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던 경력으로 인해 판사 임용에 탈락한 사람이 변호사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장관이 해당 인물의 비밀경찰 문서를 참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 장관은 기민당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민당의 제안은 주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30. Sitzung, Plenarprotokoll

문서 번호 47

튜링겐주 사법부의 중간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총리, 튜링겐주 법무부 장관

내용_

튜링겐주의 사법부 중간직 직원을 위한 교육과 시험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허가 조건, 공고와 지원, 선발, 임명, 직위 명칭, 급여, 교육기간과 목적, 업무감사와 교육기관, 연수기간과 시험.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0-551

문서 번호 48

신연방지역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검토-신문보도 및 도표

1991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 기자 프랑크 파바써

내용_

작센주를 제외하면, 신연방주에서 슈타지 연루에 대한 검증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1991년 중반 무렵의 상황을 보면 작센주는 새로운 인력으로 흡수된 동독 출신 인력의 64.5%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동독 출신의 판사는 전혀 재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주뿐만 아니라 튜링겐주도 슈타지 연루 검증 업무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상기 두 신연방주에서 높은 수준의 슈타지 연루 검증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 두 신연방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49

튜링겐주 사법부의 하급직을 위한 임시 교육규정과 시험규정

1991년 10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부 장관

내용_

튜링겐의 사법부에서 하급직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 시험규정은 선발과 채용기준 외에 교육과 직급시험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시험평가를 위한 모범 양식이 부록에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Thüringen 1991 Nr. 24, S. 552-567

문서 번호 5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공증제도

1991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팀머 의원이 공증제도 현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질문의 핵심은 현재 몇 명의 공증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명까지 허가를 내어 줄 계획인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예상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구조변화 과정에서 동독 체제하에서 활동한 국가공증사 직위는 폐지되었다. 1990년 6월 20일에 도입된 개인 공증사무실을 통한 공증활동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공증사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보장한다. 1991년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는 48명의 공증사가 등록되어 있다. 인구 33,600명당 한 명의 공증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앞으로 몇 개의 공증사 허가가 발급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적인 공증사제도 구축의 근거는 통일조약에 의해 도입된 법적인 조항들이다. 그에 따라 전업 공증사에게만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840

문서 번호 51

튜링겐주의 사법 구축 사례

1991년 11월

담당자 / 기관_ 라인란트-팔츠주 법무부,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사법제도 구축에 관한 것으로 법치국가 원칙에 입각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구축,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헤센주와 더불어 라인란트-팔츠주를 튜링겐주와 연결한다.
- 사법 구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문제

– 튜링겐주 법조인들과의 제1차 접촉: 1990년 초 라인란트-팔츠 사법부가 튜링겐주 전문 법조인 전원에게 제공한 정보 세미나. 주제: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재건, 사법권, 사법 조직, 검찰의 지위, 행정 사법권, 사법 기구로서의 변호사, 자율 사법권의 절차

– 1990년 7월 1일 자 경제, 화폐, 사회통합 발효 후 재교육 조치 확대

– '튜링겐주 교육을 위한 정치-상담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현 튜링겐 사법부의 전신이었던 '사법 하부 위원회' 등을 교육하였다.

– 1990년 10월부터 라인란트-팔츠주의 공무원 100여 명, 헤센주의 공무원 80여 명, 바이에른주의 공무원 20여 명이 튜링겐주로 파견되었다.

- 튜링겐주의 판사와 검사 검증

– 라인란트-팔츠주의 판사와 검사들은 판사선출 및 검찰임명위원회의 대표직을 맡았으며, 검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능하는 토지대장의 필요성

– 토지대장 담당 부서를 주 사법 행정부로 편입

– 토지 등기 신청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 긴급 조치로 사법보좌관 한 명과 중간 직급의 공무원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튜링겐주의 부동산 담당부로 파견.

- 구 부동산 담당부 직원의 교육과 재교육: 토지대장법 및 토지대장절차법의 입문 및 기초 코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출처_ Neue Justiz 11/1991. S. 475-478

문서 번호 52

시효 문제-주법무장관회의의 결의사항

1991년 11월 5-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주 법무장관회의

내용_

- 연방주의 법무 장관들은 형사소추 기관에 대하여 전 동독 지도부의 명령 또는 동의하에 행해졌으며, 법률 규정을 무시하여 소추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펼 것이다.
- 나치의 범죄 시효와 관련하여 마련된 기준이 사통당의 불법 행위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다.

출처_ Herbstkonferenz der Justizminister und -senatoren. 05.-06.11.1991

문서 번호 53

서독지역에서 신연방주로 파견된 공무원 및 판사의 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1991년 1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디체, 튜링겐 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 사민당의 디체 의원이 서독지역으로부터 튜링겐주로 파견된 공무원과 판사들의 정년퇴직 이후 연금과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파견된 공무원과 판사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비용을 파견 이전까지 근무했던 지역의 고용기관이 연금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파견된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주 예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튜링겐에 파견된 공무원 및 판사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튜링겐주 내무 장관은 그의 질문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기존의 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판사는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그 연금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을 위한 재정을 분할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따르기 어렵다. 신연방주 파견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이 연금을 위한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주정부 재정 및 재건지원 사업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 현재 튜링겐주에 파견된 공무원과 판사는 21명, 1991년 말까지 15명에서 20명의 공무원과 판사가 더 파견될 예정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904

문서 번호 5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동독 국가공인 공증사와 법무사의 채용

1991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켈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소속 켈러 의원이 동독 체제에서 국가 공증사와 법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의 채용과 관련해 질문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켈러 의원은 지금까지 인사채용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그렇다고 긍정했다. 성공적인 직업연수를 수료한 후에 사법부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며, 공증사의 경우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해당 인물의 과거 경력이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 다양한 능력을 검토하도록 한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00

문서 번호 55

작센-안할트주 행정법원법 초안

1991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 제출된 행정법원법 초안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연방주에 독립적인 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통일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행정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법과 관련된 사안을 기존의 법원조직으로부터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작센-안할트주를 위한 독자적인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원법에 따라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을 설치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958

문서 번호 56

브란덴부르크주 재건 프로그램 초안-4, 5장 사법(Rechtsprechung)

1991년 12월 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법무 장관 오토 브로이티감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재건 프로그램 중에서 사법 체계 구축 방안을 논하는 4장과 5장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의 우선성 및 중립성, 권력분립, 행정의 적법한 집행, 독립적 법원을 통한 행정 통제와 같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은 동독 체제하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의 추진 과정에서 동독의 법무부를 법치국가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실제에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동독에 새롭게 주를 형성하던 시기에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정부는 법무부의 새로운 재건을 위해 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a. 즉각-재건 프로그램: 법원, 검찰의 업무능력의 보장,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변호사·법무원에 대한 재교육, 법원의 재구조화, 검찰의 재구조화, 법집행·입법 분야의 조치 추진

b. 중기적 재건 프로그램(1995년까지): 새로운 법원조직의 창출, 검찰 분야의 재조직 및 인력필요의 충족, 직업교육 필요 충족, 법무 분야의 재건 콘셉트 추진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5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변호사 허가

1991년 12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소속 팀 의원이 변호사 허가와 관련해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사통당 체제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변호사 허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허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심사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허가가 발급될 당시 알려졌더라면 허가가 발급되지 못했을 사실이 차후에 알려질 경우, 그를 근거로 향후 변호사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동독의 법무 장관이 변호사 허가를 발행할 당시 비밀경찰을 위해 활동하거나 또는 법에 어긋나는 판결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허가가 거부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적 근거로 인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만 할 법적 규정의 허점이다. 사법기관의 일부로서 변호사는 어떤 의심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허가받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만 한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15

문서 번호 58

전 사통당 간부와 비밀경찰 요원의 변호사 허가

1991년 12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 킹켈, 연방의회, 연방의회 사민당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사민당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사통당 간부와 비밀경찰 요원이 변호사 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해 연방정부에 제출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정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1989년 11월 9일과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변호사 허가를 새롭게 발급받은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략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방정부는 변호사 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력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허가를 받은 변호사들이 동독 시절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연방정부는 만일에 변호사가 사통당 체제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변호사 허가가 추가로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1875

문서 번호 59

신연방주지역의 변호사 검증에 대한 독일변호사협회의 입장

1992년

담당자 / 기관_ 독일변호사협회

내용_

구동독의 판사와 검사 검증은 대부분 완료되었다. 이제 변호사 검증이 착수되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입법 기관은 기존에 내려진 변호사 허가의 효력 지속을 법적으로 정해 두었다.
  - 그 결과 검증 절차에서 통과되지 못해, 신연방주지역의 판사 및 검사직으로 인수되지 못한 구동독의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허가 신청서를 점점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이 판사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과거 검증을 받아야 하는 가이다. 변호사는 자유직을 수행하므로, 일반적인 검증에 관한 법적 토대가 결여된 상태이다.
- 개업 허가를 받은 변호사 검증
  - 자유 변호사직은 공무원과 같은 충실 의무의 저촉을 받지 않으며, 직업법적으로 판사와 검사의 위상과 동일하지 않기에 개업 허가를 받은 변호사들에 관한 특별 검증에 관한 법적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개업 허가 철회는 연방번호사법 제14조의 전제 조건하에 내려질 수 있다.
- 변호사가 과거 검증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 독일변호사협회는 일반 검증을 통한 사생활 침해를 경고하는 바이다.

출처_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79

문서 번호 60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

1992년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베를린주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판사직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한 동독의 전직 판사였던 사람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다. 판결의 근거는 베를린시가 독일 판사법을 적용하는 특수한 방식이었다. 베를린시에서 적용되는 독일 판사법 적용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베를린시 독일 판사법 적용의 특수성

- 판사 임명을 위한 전제 조건: 동독법에 따라 직업 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들은 베를린시에서 수습 판사로만 임명될 수 있으며, 과거에 베를린 시구법원(Stadtbezirkgericht) 혹은 시법원(Stadtgericht)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판결권(rechtsprechende Gewalt)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베를린시의 특수성: 사법제도와 법원조직이 완전히 새로 구축될 때까지, 신연방주와는 달리 동베를린의 시구(Stadtbezirke)로 기존 법원제도를 확대.
- 규정의 목적: 기존 주거 및 활동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판사직 수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동베를린지역에 투입된 판사들의 이익을 고려

출처_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30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drig/gesamt.pdf

문서 번호 61

신연방주 사법 체계의 조정에 관한 법 초안

1992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법무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것에 따라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될 법의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는 신연방주 각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을 설치하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지방법원, 주법원, 주고등법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신연방주들은 늦어도 1992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조정 규정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통일조약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 초안에는 구동독지역의 전직 판사 및 현직 판사, 검사의 연수 재교육 및 전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법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작업의 현황에 관해 보고했다. 나아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 법무위원회가 베를린시의 판사 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첨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절대적으로 판사의 수가 모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평생직으로 임명되지 않는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판사와 검사도 다른 직업군으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제안했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10/92

문서 번호 62

변호사 허가 및 공증사 허가 시험 법 초안

1992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연방법무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튜링겐주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공증사에 관한 것이다. 동독 체제 하에서 기본 인권을 침해 또는 법치국가의 원칙의 위반 등의 전과가 없었던 변호사와 공증사들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호사와 공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되는 변호사와 공증사들의 직업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 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연방회의에 제출한 제안 설명서에서 이 법안의 구성요소에 관해 설명했다. 연방회의는 '심각한 방식으로'와 같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표현으로 인해 일반적인 위반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명칭도 더 포괄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의회의 법사위원회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튜링겐주는 연방회의의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출처_ Bundesrat, Drucksache 20/92

문서 번호 63

장벽-국경 초병의 사살 행위에 대한 첫 번째 판결

1992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주법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동독 체제하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이다. 동독을 탈출하려던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행위에 대한 재판은 통일 이후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총격 살인으로 피소된 K., H., Sch., Schm.의 행위는 일차적으로 범죄 장소와 범죄 시점에 유효했던 동독 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에 동독 형법을 대체한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한다.
- 구동독 기본법의 총기사용 규정은 무효(nichtig)하므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 유효한 사격명령이 없었으며, 총격수가 금지에 대해 착각할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베를린 장벽에서의 총격 살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현저하게 모순되므로, 병사들이 양심을 무마시키는 주입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베를린 주법원의 견해이다.
- 베를린 주법원은 피고인 H에게 3년 6개월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출처_ JuristenZeitung (JZ). Jahrgang 1993.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S. 691-696

문서 번호 64

베를린법원 기록 인력 부족 문제

1992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시의회 기민당 하이데 의원, 베를린 시정부 법무 장관, 베를린 시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시 법원에 문서기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관해 시의회 기민당의 하이데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시정부 법무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베를린의 법원이 직면한 문서기록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판결문과 의결문 작성이 지연됨으로 인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문서기록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급속하게 증가한 재판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담당 판사가 분명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기록사 대신에 녹음기로 재판을 기록할 수는 있다.

출처_ Abgeordnetenhaus von Berlin, 12. Wahlperiode, 22. Sitzung, Plenarprotokoll 12/22

문서 번호 65

작센-안할트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2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가 도입한 사회법원 실행법 초안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연방주에 독립적인 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통일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법에 따르면 사회법원은 연방주의 고유한 관할 영역이다. 이 법안은 사회법원이 설립될 지역과 관할지역을 규정한다. 나아가 개별 사회법원의 관할 업무, 판사 임용 및 공무원 임용 그리고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원들이 담당해 왔던 사회법원 관할 소송을 분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작센-안할트주에 사회법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법원법에 따라 주사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148

문서 번호 66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울리히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이 연방정부 법무 장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91년 여름 이후 다른 신연방주들과 합의하에 제출한 주법원행정에 관한 규정 초안이다. 신연방주들에게는 과도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입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른 법무 장관은 법무위원회에 이 초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_ Bundesrat, Plenarprotokoll der 639. Sitzung, S. 84C-85B

문서 번호 67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연방정부 법무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 법무부 풍케 차관,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울리히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법무부가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연방법무부의 풍케 차관은 우선 신연방지역의 사법 체계 개선을 위해 동서지역의 해당 기관들이 동참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짧은 시일 내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연방의회 법무위원회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이 초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출처_ Bundesrat, Plenarprotokoll der 639. Sitzung, S. 85B-85D

문서 번호 68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법 초안-연방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사법 체계 조정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가 제안한 것에 동의하지만, 판사와 검사가 직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와 검사가 직위를 바꿀 경우 그들이 사법 절차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나아가 그것은 다른 직업군에도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직능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런 규정은 서독지역에서 요구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168

문서 번호 69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정부의 입장 표명

1992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에서 도입하려는 변호사와 공증사 허가법 초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법무위원회와 연방회의, 작센, 튜링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등이 제안한 '심각하게'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적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회의와 연방의회 법무위원회가 이 규정을 명예판사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에는 찬성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169

문서 번호 7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실행령 초안

1992년 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대리 골레어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준비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및 법원구조법 실행을 위한 법 초안이다. 법원조직구조법을 통해 전통적인 법원 구조가 삼단계 법원 구조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법에는 이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서독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면서도 과도기에 특별히 필요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연방입법자들이 도입해야 할 사법 체계 조정법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459

문서 번호 7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 인력 현황 및 절차 조건

1992년 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그람코프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민사당 그람코프 의원의 법원의 인력 현황과 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민들이 법원의 처리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법적 권리의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질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절차의 진행시간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2. 10개 법원의 처리 시간이 2달에서 10달로 일정하지 않다. 3. 통일 시기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 188명의 판사와 149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판사와 검사도 포함되었다. 1990년 11월에서 1992년 2월 현재까지 3,100명의 지원서가 제출되었고, 모두 처리되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476

문서 번호 7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보안법 개정안 초안

1992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사민당이 주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제출한 긴급 안건을 토론한 것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슈베린 법원의 판결 이후 주의회가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주보안법 61조 5항에 따라 나머지 경우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주보안법 61조 5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이유는 주의회의 법무위원회가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판사와 검사에 관해 주보안법 61조 5항에 따라 최종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판사와 검사가 현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551

문서 번호 73

변호사 허가 및 공증인 임명 검증에 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입장

1992년 3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변호사협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변호사 개업 허가 및 공증인 임명 검증에 관한 연방정부의 입법안에 관한 연방변호사협회의 성명이다.

연방변호사협회는 입법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변호사가 인간 존엄성 혹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였을 경우, 구동독에서 내려진 변호사 허가를 철회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출처_ Pressemitteilung der Bundesrechtsanwaltskammer vom 11.03.1992

문서 번호 7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 초안–연방의회 총회 토론

1992년 3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법무부 풍케 차관, 사민당 비트 의원, 기민당 루터 의원, 녹색당 울만 의원, 자민당 클라이너트 의원, 민사당/좌파당 호이어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연방의회 총회에서 신연방주의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법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법무 차관 라이너 풍케는 법치국가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공증사, 명예판사는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특정인의 직업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사민당의 비트 의원은 변호사와 공증사가 주민과 사법기관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 체제 말기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 결과 1990년에 동독 체제의 희생자들이 동독 체제하에서 판사로서 그들을 판결했던 사람을 변호사로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연방의회의 사민당은 1991년 12월에 연방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가 총회의 토론 대상이 된 법안이다.

기민당의 루터 의원은 과도기 동독의 개혁내각을 이끌었던 드 메지에르 총리가 정치국 위원들을 기소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를 위한 사법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의 울만 의원은 주정부 사법행정기관이 과거 경력이 문제되는 변호사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변호사협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사당의 호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동독의 변호사와 공증인들이 통일 이후에도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 통일조약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이어 의원은 나아가 서독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정도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안은 심지어 나치 체제하에서 아리아족이 아닌 변호사의 직업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1933년 4월 7일에 도입한 법안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2/82, S. 6834C–6840C

문서 번호 7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의 임시청사를 위한 예산-주정부 신청서

1992년 3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실 실장 첸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가 법무부 청사가 건축될 때까지 사용할 가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것이다. 이 비용은 850만 마르크이다. 법무부 청사와 가건물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법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며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결책이 세워질 때까지 가건물을 세워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633

문서 번호 7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의 임시청사를 위한 예산-주의회 결정

1992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예산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예산위원회가 법무부 청사가 건축될 때까지 사용할 가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783

문서 번호 77

튜링겐주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

1992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에 합의된 조항에 따라 튜링겐 주정부가 1992년 5월 5일에 도입한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이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2, Nr. 11, 25.05.1992, S. 187

문서 번호 78

작센-안할트 검사 및 법원 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1992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정부가 제정한 검사 및 법원 직원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초안이다. 이 법은 검사와 법원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검사와 법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검사와 법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464

문서 번호 79

브란덴부르크 법무부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업무 보고

1992년 5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차관 라이너 파우펠

내용_

1992년 중반에 작성된 이 자료는 브란덴부르크 법무부 재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업무진행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1. 인적 현황과 인원 채용의 기본 원칙, 자매주인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기타 다른 주로부터의 지원, 2. 재판관과 검사: 인적 평가, 새로운 채용, 전문성 신장, 3. 법무원(Rechtpfleger), 집행자(Strafvollzugsbedienstete), 기타 법무 인력(sonstiges Justizpersonal), 새로운 검찰 조직, 등기소의 재통합, 업무 영역의 변경, 자발적 재판권을 가진 토지 등기소의 검사, 법원의 새로운 조직 등.
무엇보다 상기 보고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법원의 업무성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항소심 및 상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법원, 재정법원 및 사회법원의 1992~1998년의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출처_ Faupel, Rainer: Der Neuauf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Baden-Baden 1992

문서 번호 80

작센-안할트주 법원구조법의 실행령 초안

1992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 주의회가 작성한 법원구조법 실행령 초안이다. 이 법을 통해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것처럼 신연방주에서도 법원구조법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법원 및 검찰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주 입법기관은 법원의 업무에 대한 보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사,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조건이 개선되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지방법원, 주법원, 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원구조법에 따라 검찰제도가 구축되었고, 검찰이 법질서 실행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1

문서 번호 81

작센-안할트주 법원조직법 초안

1992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 주정부가 작성한 법원조직법 초안이다. 신연방주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구조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배정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도입으로 법원의 조직 틀이 마련되었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3

문서 번호 82

통일과 형법

1992년 5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외무 장관 클라우스 킹켈

내용_

이 문서는 1991-1992년에 연방정부 법무 장관, 1992-1998년 외무 장관이었던 클라우스 킹켈이 1992년 2월에 라이프치히대학과 콘스탄츠대학에서 강연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 40년간 지속된 사통당의 지배 체제를 청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조직을 통해 행해진 불법 행위의 가해자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것은 1. 사면(남미의 사례), 2. 망각(일본의 사례), 3. 사형 등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법은 법치국가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복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체포해서도 안 된다. 구동독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법치국가의 원칙에 익숙해지도록 해야만 한다.

동독 체제의 과거청산과 관련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동독 체제하에서 문서가 만들어졌고, 현재 남겨진 문서의 양도 엄청나게 많다. 이 문서를 검토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독일의 형법은 국가조직의 불법 행위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분명한 것은 동독 체제하에서도 가해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체제하에서 행해진 범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형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동독의 권력자들이 여러 차례 자국의 형사규범을 어겼다.

비록 서독 정부가 나치 체제하에서 활동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실책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동독의 법규법에 권력자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동독의 형법과 독일연방공화국 형법 간 처벌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기간이 짧은 규정을 적용한다. 동독 체제가 4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법 행위의 경우 통일조약 315조에 따라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다.

과거청산은 형법에 의해 처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청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출처_ JuristenZeitung, 47. Jahrgang, Nr. 10, S. 485-489

문서 번호 83

작센-안할트주 금융법원 규정 실행 초안

1992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를 위한 금융법원 규정 실행법 초안이다. 이 법은 통일조약에 합의된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연방주에 전문 분야 재판이 가능한 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나아가 금융 규정에 의해 연방주법이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규칙이 도입되었다. 금융법원의 설립으로 작센-안할트주에서도 독립적인 금융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504

문서 번호 84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초안

1992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회의, 연방의회 법사위원회, 연방의회 민사당/좌파당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법사위원회가 검토한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 초안이다. 법사위원회의 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민사당만 연방정부의 초안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소급적용을 불허하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670

문서 번호 85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 초안

1992년 6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의회 민사당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민사당이 변호사 및 공증사 허가검토법의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민사당은 7개 사항을 개정할 것을 연방정부에게 요구했다. 핵심적인 것은 신연방지역에서 활동하는 동독 출신의 변호사와 공증사들 중에서 기본법에 명시된 인권 보호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위반한 것이 증명된 사람에 한해서 변호사 및 공증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사당은 연방정부가 제출한 초안에 이 문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각 주의 사법부가 이 법의 유효기간을 6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만 변호사 허가를 취소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2811

문서 번호 86

신연방주 내 사법통일을 위한 법(1992.06.26)-(사법-통일법(Rechtspflege-Anpassungsgesetz)-RpflAnpG)

1992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 판사법 및 명예판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사안에 관한 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 설치와 전문 재판소 설치의 시점과는 무관(§§1~10)

- §1 (효력이 지속되는) EhRiWO(1990년 9월 1일 자 명예판사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 혹은 임명된 명예판사의 임기는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로 끝난다. 이 기한은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통일조약(부록 I, 제III장, A부, 제III절, 1번, d항)을 통해 결정된 규정들, 즉 비종신 판사들의 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신연방주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은 만료될 예정이다.
- §6으로 인해 법원의 필수적인 업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에게 수습 기간을 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이로 인해 인수된 판사들은 수습 판사로 투입될 것이나, 신입 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7로 인해 판사 한 명이 여러 판사직을 맡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정은 신연방주 지역의 인력난에 기인한 것이며, 한 명의 판사가 두 개의 상이한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 §10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토대로 신연방주지역에서 1996년도에 모든 의장단을 신규 선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

- 독립 전문 재판소 설치에 관한 통일 규정(§§11-13): §12 구법원(Bezirksgericht)과 군법원(Kreisgericht)에서 행정, 재무,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판결을 위해 선출되고 임명된 명예판사들은 주정부법에 따라 임기 기간 동안 해당 전문 재판소로 발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법 전문 재판소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14-31)

- 원칙적으로 지역법원(Amtsgericht)이 군법원을, 주법원(Landgericht)이 구법원을 대신한다(제15조 1항). 이 등가조항은 연방법적 규정에만 해당된다. 주정부법의 규정에 군법원과 구법원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법원조직법의 조직 구성 시 주정부법의 규정이 이러한 등가조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타 지역의 특별 지시를 통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등가조항의 예외 사항은 제15조 2, 3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검찰과 공증인 영역의 특정 관할에 있어서는 고등주법원(Oberlandesgericht)이 구법원을 대신한다.
- §21 신연방주지역에 고등주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통일조약(부록 I, 제III장, A부, 제III절, 1번 1항 1문)이 정하고 있는 베를린 궁정법원(Kammergericht)의 형법 사안 담당 내역은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따라 삭제된다.

- §23은 변호사법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동독 규정 중 효력이 지속되는 규정을 구연방주지역에서 통용되는 BRAO(연방변호사법)과 통일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과도기 및 최종 규정은 신연방주지역에 관한 기타 업무에 있어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법 문제 처리를 위한 담당 관할을 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2. Teil I Nr. 29, 30.06.1992

문서 번호 87

튜링겐 행정법원 규정 실행법-1차 개정안

1992년 7월 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주 내무 장관 뵈크 ,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행정법원 규정 실행법의 개정안이다. 1991년 8월 7일에 도입된 법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정부는 설명했다. 1991년의 법에는 판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이의 신청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차 개정안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444

문서 번호 88

변호사 허가, 공증인 허가, 명예판사 임명 검증을 위한 법

1992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 변호사

– 변호사 허가 취소: 변호사가 1990년 9월 15일 이전에 개업 허가를 받은 후 인간 존엄성이나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 특히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주정부의 사법행정청들은 변호사 개업 허가 취소 및 철회를 위해 슈타지 문서를 슈타지-법 규정하에 활용할 수 있다.

- 공증인: 공증인 허가 취소(변호사의 경우와 같이)
- 명예판사: 제9조 1항에 의거 면직(변호사의 경우와 같이)
- 기타 규정의 개정: 본인 사무실에서의 공증 행위에 관한 규정 변경(사실 관계 조사, 인물 관련 정보). 지원자 혹은 공증인은 사실 관계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증자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2, Teil I, S. 1386–1388

문서 번호 89

법무부의 재편과 브란덴부르크주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구상

날짜 미상–1992년 7, 8월경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법원 소재지에 대한 계획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 체계와 관련된 법원기본법(GVG)에 부합하는 법원 체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Kreisgerichte)과 행정법원(Ämtergerichte)의 수가 축소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1993년 1월 1일부터 행정재판권 및 재정재판권의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재판권의 재체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에 소재하는 법원(주고등법원, 주고등행정법원, 행정법원 4개의 지방법원, 4개의 행정법원)의 위치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준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민에 근접해 있어야 하는 시민근접성, 주의 개발정책적 체제 및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적절한 주변 환경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문서 번호 90

브란덴부르크주 지역노동법원의 1992년 1월 1일-1992년 6월 30일 사이의 노동재판권 업무 및 통계적 공람의 체계화에 대한 보고

1992년 8월 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노동법원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노동법원 원장이 노동재판에 관한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7월 1일 이후 독립적 노동재판권이 브란덴부르크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노동재판권이 이관된 첫해에 주고등노동재판소의 7개 재판부에서 42,656건의 법적 분쟁이 다뤄졌고 결정되었다. 1992년 9월 30일 이후에는 서독지역에서 온 판사들 중 6명만이 현직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3년 이후에도 인적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문서 번호 91

튜링겐주 노동법원법 실행령

1992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제출한 노동법원법 시행령이다. 통일조약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신속하게 법원구조를 갖추고 재판규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노동법원법의 경우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법원의 특성상 외청을 여러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613

문서 번호 92

작센-안할트주 헌법재판소법 초안

1992년 1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초안이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시설, 재판 절차 및 관할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이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 온 연방주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80

문서 번호 93

튜링겐의 변호사 현황

1992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소속 바이 의원이 튜링겐지역에 변경된 사법 체계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바이 의원은 9개의 질문을 제출했다. 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일 직후 에어푸르트, 게라, 줄 지역에 96명의 변호사가 인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튜링겐 법무부의 서류에는 1989년 10월 1일에서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동독 법무 장관이 266명의 변호사 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들은 동독에서 법학 디플롬을 취득한 법률가들이다. 266명 중에서 31명은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독에서 교육받은 191명의 법조인들이 튜링겐 법무 장관에 의해 변호사 허가를 인가받았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15명의 전직 판사와 24명의 전직 검사가 변호사 허가를 받았다. 그들 중에서 10명의 전직 판사와 21명의 전직 검사들은 과거 경력 검토절차를 통하지 않았다. 1992년 10월 1일부터 1992년 10월 30일 사이에 서독지역에서 온 법조인 219명이 튜링겐주 법무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결과 튜링겐지역에는 1992년 10월 30일 현재 총 629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62

문서 번호 94

튜링겐지역의 법집행 현황

1992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소속 바이 의원이 튜링겐주의 법집행 현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 법무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집행을 담당할 인력은 총 501명 중에 1992년 11월 1일 현재 373.5명이 채용되었다. 통일조약이 허용하는 조항, 동독 체제하에서 이미 법집행을 담당했던 인력, 특히 법원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로 한 것을 튜링겐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60%는 동독에서 법원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충원될 것이다. 튜링겐주에는 1992년 11월 1일 현재 동독에서 교육받고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05명이다. 그중 4명은 판사와 검사 선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과거 경력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3명은 서독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서독지역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업무량과 함께 법집행 분야에서도 서독지역과의 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신연방지역 출신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서독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전보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

문서 번호 95

통일 후 사법 인력 구축

1993년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 비히만, 위르겐 토마스

내용_

신연방주지역의 사법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 능력의 수요는 구연방주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 신연방주지역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약 630명의 판사와 400여 명의 검사가 인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구연방주지역의 대규모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
-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법치국가 구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총 2억 9,749만 독일 마르크가 연방정부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 중 2억 7,135만 8천 독일 마르크가 인력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 신연방주지역에 필요한 인력 이동을 위해 1993년 1월 11일 재판업무부담완화법이 발효되었다.

– 지역법원의 업무 담당 범위를 넓히고, 주법원 및 행정법원의 경우 1인 판사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을 비롯해 합의제 재판소(Kollegialgericht)의 업무를 1인 결정 판사에게 이전
– 경범죄 소송 처리를 위해 임명 건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항소수리제(Annahmeberufung)를 도입
–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다수의 판사로 구성된 심사단(Spruchkörper) 투입 건수를 줄임-민사, 형사, 사회복지 재판권의 소송 절차 완화

- 1991년 2월 당시 법무부 장관 킹켈의 시니어 모델(Seniorenmodell)

– 실무 경험이나 연륜 있는 법조인의 부족으로 은퇴한 판사와 검찰, 사법보좌관들에게 신연방주지역의 사법 체제 구축에 있어 몇 년간 근무에 복귀해 줄 것을 호소
– 신연방주지역의 판사 및 사법 분야의 기타 종사자들의 복귀를 위해 법적 전제조건(연령제한 확대)을 마련
– 1992년 7월 이러한 토대를 통해 근무에 복귀한 판사는 53명, 검사는 8명, 고위 공무원은 3명, 사법보좌관은 22명이었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72-74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3, Teil I. S. 50-57

문서 번호 96

독일통일 실현 후 임금법의 과도 규정에 관한 제2차 규정

1993년 1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연방내무부

내용_

제2차 임금-과도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임금-과도-개정규정- BesÜÄndV, BGBl. I S. 60)

- 1991년 7월 1일(신연방주 임금법 발효일) 이전까지 가입지역에서의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배제는 철폐된다.
- 이를 통해 1990년 10월 3일 전까지 동독의 공무 활동 기간 역시 직무기간 결정에 참작된다(연방임금법 제29조 1항과 관련 제28조 2항 4문).
- 기본법 유효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공무 활동만이 인정될 수 있다(1991년 11월 28일 연방행정재판소의 결정 2C 11.91-1992년 독일 행정신문, 903). 이러한 전제 조건은 동독에서 행정, 인민경찰, 국가인민군, 사법, 학교 및 대학의 모든 층에 적용되었다.
- 공법적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은 인정된다.
- 기타 고용주(연방임금법 제28조 2항 4문)를 통한 활동들은 1991년 7월 1일 이후부터 참작될 수 있다; 동독의 집단주의적 계약에 따른 근무들은 제외된다.
- 인정되지 않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들로는 국경수비대(공익근무를 제외한 병역 포함)와 국가보위부, 국가안보청을 위한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수동적인 정보원이 포함되며, 서면상의 합의나 의무 성명은 제출되지 않아도 된다.
- 동독 체제와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을 통한 기타 활동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판검사와 보건기관과 연구기관, 광업 행정, 문화 분야, 신탁관리청을 통해 인수된 기관에서의 활동들은 개별 검증 대상이다.

출처_ http://vwvbund.juris.de/bsvwvbund_14041993_DII42217311.htm

문서 번호 97

튜링겐 판사법

1993년 3월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판사 임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주정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되는 판사에게 적용되는 연방판사법이 보완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24

문서 번호 98

튜링겐 검찰 및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

1993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합의에 따라 튜링겐 주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검찰 및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결정한 것이다. 주고등법원의 소재지는 예나로 결정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52

문서 번호 99

튜링겐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3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에 사회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법안이다. 통일조약에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신연방주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법에 따르면 사회법원은 연방주의 고유한 관할 영역이다. 이 법안은 사회법원이 설립될 지역과 관할지역을 규정한다. 나아가 개별 사회법원의 관할업무, 판사임용 및 공무원 임용 그리고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Parlamentsdokumentation, 1. Wahlperiode: Drucksache 1/2090

문서 번호 100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의 새로운 규정

1993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가 도입한 사법 체계에 관한 새 규정이다. 신연방주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독지역의 연방주에 실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법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이 도입되면서 브란덴부르크주도 노동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등 독자적인 전문법원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일반 사법의 영역에서는 동독 체제하에서 구축된 법원 체계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법원의 관할 구역이 재편되고 그에 필요한 과도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1900

문서 번호 101

튜링겐 법무부 중간급 공무원을 헤센주 풀다시 행정대학에서 연수시키기 위한 조약에 관한 법-튜링겐주 주정부 작성 초안

1993년 5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법무부 직원을 서독지역의 기관에서 연수시키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서독지역에서는 1969년 11월 5일에 도입된 법집행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업무는 해당 법원과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원칙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튜링겐 지역의 법집행자에 대한 수요는 아직 그렇게 높지 않아서 법원과 검찰이 법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훈련해 왔고, 그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다. 그 결과 튜링겐지역에 별도의 법집행인 훈련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튜링겐지역의 법집행자를 위한 연수를 헤센주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약 35명의 연수생을 파견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730,000 DM이다. 이 문서의 부록으로 헤센주와 튜링겐주 간의 협약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29

문서 번호 102

튜링겐 사법 체계의 전환 및 법원설립법 시행령, 법원구조법 시행령-주정부 초안

1993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사법구조를 기존의 서독지역 연방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법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한다는 시행령이다. 법원의 구조, 법원 소재지 및 법원의 관할 구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8

문서 번호 103

튜링겐 금융법원법 실행령

1993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금융법원법 시행령이다. 통일조약에 따라 모든 신연방주들은 서독지역 연방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법구조를 구축해야만 했다. 금융법원의 설치 또한 그 일환이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48

문서 번호 104

튜링겐주 법원 및 검찰의 업무부담

1993년 11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부,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검찰 및 법원의 업무부담에 관해 주의회 사민당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튜링겐주의 법원 전체에 필요한 판사는 1993년 1월 1일 총 415명이다. 1993년 7월 1일 현재 319명의 판사가 임용되었다. 이 인원으로도 법원이 담당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법원의 재판 기간은 부록 4와 5에서 볼 수 있다.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설립된 전문법원의 목록도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튜링겐주의 판사들이 실질적으로 서독지역 연방주의 판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검찰에도 해당된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866

문서 번호 105

주정부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될 구동독 법의 확정과 개정 관련 연방법무부 측의 신연방주 지원-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42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법무부

내용_

- 연방법무부의 지원을 받게 될 신연방주의 계획: 주정부법으로서 효력이 지속될 구동독 법의 확정과 개정
- 각 주의 업무 결과는 데이터 뱅크에 기록되어야 함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44

문서 번호 106

동독 사법부의 형사처벌 판결 재검토 위원회-신연방주에서 처리된 사건 목록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신연방주

내용_

표의 내용은 독립위원회들이 신연방주지역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보여 주고 있다.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들은 몇 건인가; 만약 권고를 하였다면, 어떠한 추천을 하였는가? 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사면 권고 17건, 브란덴부르크주의 형 집행 불허 재판에 관한 권고 20건, 형법전 제57, 57a조에 따른 보호감찰에 대한 임시 집행유예 가능성 활용 권고 112건
- 검증을 통해 수감 기간 단축 혹은 중단과 같은 사법적 결정 및 사면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몇 건인가?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사면 권고 58건, 석방 16건, 메클렌부르크주의 경우 형 취소 소송 권고 14건
- 검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 청문회를 통해 현재 유효한 법을 기준으로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범행에 대한 법적 존엄성이 전해졌기에, 청문회는 수감자들을 진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작센(Sachsen)주: 총 168회의 청문회는 구체적인 신청 형식이나 석방 준비, 심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295-297

문서 번호 107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검사 재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정협약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사법행정기관

내용_

1990년 9월 이래 주정부 행정기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조율된 계획에 따라 동독 출신의 판사를 위한 직무 병행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992년 이래 주정부와 베를린 주정부는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해 초지역적 재교육 학회를 제공하고 있다.

- 베를린: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주 1회 교육
- 브란덴부르크

– 독일 판사아카데미의 재교육 학회

–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한 콜로키움: 일상적 직무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문제를 선배 동료들과 토론하는 장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 민법 및 행정법: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구법원과 슈베린(Schwerin) 및 로스토크(Rostock)의 입문 과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 판검사를 위한 기초 과정

– 1992년에는 민형사법 분야의 세부 주제에 관한 9개 주 자체 재교육 코스로 9개의 학회가 개최

- 작센: 1991년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m-Wuerttemberg)주의 협력하에 기초 과정을 제공
- 작센-안할트: 주 내부적 재교육 조치(선배 및 은퇴 판사와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주간 행사)
- 튜링겐

– 1991: 바이에른주, 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와 같은 파트너 주와 기본 재교육 및 주 자체 재교육 행사

– 1992: 속성교육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hang Nr. 37) S. 338-340

문서 번호 108

신연방주 사법보좌관의 재교육–연방의회 독일통일자료집 부록 31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신연방주

내용_

분야별 사법보좌관으로 재판 업무를 맡게 된 법원사무관과 기타 인력을 위한 집중과정 및 재교육 과정

- 토지대장, 민사, 가정, 비용, 강제집행, 상속, 후견인, 등기법 분야의 재교육 과정(대부분 3개월)
- 개별 주별 재교육 조치:

– 베를린: 민사소송, 강제집행, 토지대장 분야 교육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총 165명의 직원 참여
– 작센-안할트:
1990: 토지대장법 관련 재교육 과정
1992: 협회, 재산법, 강제집행, 상속, 형사 집행, 가정, 토지대장 분야 재교육 및 사법행정 업무와 노동, 행정, 사회복지 업무 해결을 위한 교육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S. 334–335

문서 번호 109

1991–1994년 사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법치국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개요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신연방주

내용_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법치국가 구축을 위해 아래의 예산이 각 주에 지급되었다:

- 인력 프로그램 지출액 총 271,358 독일 마르크

–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인력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베를린주 간에 합의된 행정협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지출액 총 26,132 독일 마르크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82

문서 번호 110

신연방주 법치국가 체계 구축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내무 장관 칸터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작성한 독일통일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 구축 문제를 다루는 3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국가구조, 헌법, 행정 및 법집행 등을 다루고 있는 3장의 4챕터에서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 구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챕터에서는 먼저 동독에서의 사법문제와 1989-1990년의 상황을 설명한다. 거기에는 동독의 과도개혁기에 서독 연방정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과 동독의 노동사회부 직원들이 협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가 통일 후 독일의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독 사법 체계가 가지고 있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동독 사법 체계의 집행법의 요소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신연방지역 법원 체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통일 직후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가 그나마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초기에 신연방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송의 건수가 서독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소송 건수는 그 후 서서히 증가했다.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노동법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지만, 서독지역으로부터 제공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재판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검찰, 연방대법원의 경우 통일로 인해 발생할 많은 업무량에 대비해서 추가로 연구 인력을 보강했고, 판검사의 수도 늘렸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5년이 되는 1995년 말이면 사법 영역에서 내적 통합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50-58

문서 번호 111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신연방주 주정부 사법 행정부

내용_

제3장 첨부 문서 21-25번(국가, 헌법, 사법과 재판)

인력 확대

-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인력은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의 신규 인력 채용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 보고에 따르면 작센주의 사법부에서는 인력 확대의 폭이 매우 좁았다; 그러나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사법 분야의 사무 공간(부처와 소속 업무 분야)

- 주정부 사법 행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 공간 역시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 신규 건축 조치와 더불어 건물의 매입 및 임대와 같은 투자 모델이 실행되었다.
-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2월 1일까지의 사무 공간 변화 내역에 관해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투자 지출

- 주정부 사법 행정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었다;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계획중이다.
-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컴퓨터(EDV) 장비

- 신연방주들은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컴퓨터 장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토지대장청에 관한 현황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토지대장청의 인력 및 사무 공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작센-안할트주에서는 토지대장청(Grundbuchämter)과 토지등기소(Katasterämter)가 통합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토지대장청들을 지역법원에 지역별로 편입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324-329

문서 번호 112

튜링겐 헌법재판소법-초안

1994년 3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헌법재판소법이다. 통일조약에 합의된 바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자체적인 헌법재판소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독지역의 연방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205

문서 번호 113

독일통일 과정에서 민법의 역할

1994년 6월

담당자 / 기관_ 쾰른대학 법학부 노르베르트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민법학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독일통일로 신연방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과정과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과 함께 독일의 기본법이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면서,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독일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는 조항을 지켜야만 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되면서 독일 전역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 조약의 발효와 함께 시작된 과도기적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제거되게 되었다. 통일조약의 체결 과정이 시간적 압력을 받으면서 진행된 것은 분명하지만, 만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률적 통일을 이루고자 했더라면 2030년이 되어도 통합작업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다. 19세기에 독일의 민법을 통일하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 통일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이 신연방지역에 적용되면서 더 실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동독의 민법이 사라진 것을 저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독에서도 독일 민법의 규정을 비공식적 기준으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출처_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194. Band, Heft 2/3, 1994, S. 177-230

문서 번호 114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

1994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헨닝 로젠, 연방내무부

내용_

신연방주지역 행정 분야의 인력 지원

긴급 자가 구제를 위한 지원

- 구서독 출신의 인력 파견을 통해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을 대규모로 지원하였다.
-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신연방주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심을 보이거나, 신연방주지역의 새로운 관직에 부임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있었다. 몇몇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너무 완벽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심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으며, 관리직에는 구동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협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치 행정 구축

- 구서독 측의 지원이 없었다면 구동독의 행정은 지금처럼 신속히 재건될 수 없었을 것이다.
- 과거의 구동독 엘리트들은 새로운 행정 재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
- 1992년 구동독 행정에서 근무한 직원 수는 총 17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3만 5천 명이 구서독 출신이었다.

직급 강등

- 구동독 행정의 인력은 과잉 상태였다.
- 구동독 행정 인력의 대부분이 인수되었다.
- 몇몇 구동독 행정 인력들은 과거보다 낮은 직급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 구동독에서 시민 한 명당 배정된 인력은 구서독과 비교해 여전히 1/3이나 높다.

자매결연

- 연방정부는 4,200개의 관청을 재건하였다. 이를 위해 신연방주지역에서 약 420,000명의 직원들이 인수되었다.
- 구연방주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8,500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동서 간 활발한 교류

- 초기에 맺어진 지자체 자매결연은 40개였으며, 현재는 2,000여 개로 확대되었다.
- 10,000명의 구서독 출신 공무원들은 구동독 지자체로 파견되었다.
-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으로 파견된 구서독 공무원들의 낮아진 수입을 보충해 주었다. 이를 위해 1994년에는 1억 7천만 독일 마르크가, 1993년에는 1억 8,100만 독일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연방정부는 자체 직업교육 기관을 통해 1992년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였다.

출처_ Das Parlament. 17.06.1994. S. 10

문서 번호 11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헌법재판소법

1994일 7월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법은 1994년 7월 19일에 도입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1995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1994, S. 734

문서 번호 116

튜링겐주-판사 임용 절차 문제

1994년 8월 1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판사의 임용 문제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답변은 사민당의 바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다. 주정부 법무 장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사 중에 튜링겐주의 사법부에 의해 수용된 101명의 판사 중에 현재 59명이 정년보장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모두 개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과거 경력 등을 포함한 인적 측면과 새로운 사법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다. 판사의 견습 기간은 판사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작되며, 최소 3년이 걸린다. 견습 기간의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튜링겐주 판사법이 발효된 후에는 이 규정은 법무 장관에 의해 관리된다.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견습판사로 임명된 사람은 적어도 5년이 지난 후에는 정년보장 판사로 신분이 전환되어야만 한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567

문서 번호 117

과거 비밀경찰에 연루된 경력이 문제가 된 튜링겐주의 변호사

1994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자민당 의원 슈테푸타트,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비밀경찰에 연루된 경력이 문제가 된 변호사의 허가 문제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답변은 자민당의 슈테푸타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다. 주정부 법무 장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튜링겐주 법무행정은 허가된 변호사와 허가 신청자들의 비밀경찰 연루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90건의 사례에서 비밀경찰과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15건은 변호사 허가가 취소되었고, 5건은 변호사가 스스로 허가신청을 취소했다. 튜링겐주에서는 과거 비밀경찰 연루 문제가 있는 변호사가 기부금을 내고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해당 변호사의 명단은 밝힐 수 없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19

문서 번호 118

비밀경찰 연루 경력이 있는 튜링겐주의 공증사

1994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자민당 의원 슈테푸타트,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비밀경찰에 연루된 경력이 문제가 된 공증사의 허가 문제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답변은 자민당의 슈테푸타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다. 주정부 법무 장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공증사는 비밀경찰 연루 경력 여부를 검증받아야만 한다. 77명의 공증사에 대해 비밀경찰문서국에 정보를 요청했으며, 그중 두 명을 제외한 75명이 동독에 상주했던 사림들이다. 7명의 공증사에 대해 비밀경찰 연루가 확인되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허가가 취소될 것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20

문서 번호 119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행정 지원

1995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 크룸직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 장관이 주의회 법무위원회에서 신연방지역의 사법 체계 구축과 관련해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체제하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담당할 기구를 베를린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를 위해 연방검찰과 각 주의 검찰이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베를린으로 파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비교적 적은 인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베를린에 신설된 이 기구가 조사 절차를 통해 고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판사들의 자체적인 단체인 판사연맹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인원이 베를린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베를린에 더 많은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들은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가 범죄를 조사하는 특수 임무를 담당하고, 그것이 종료된 후에는 베를린의 일반 사법 체계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이 기금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주들은 연방정부가 이 기금에 참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Rechtsausschuß, 49. Sitzung, Ausschußprotokoll 11/1567

문서 번호 120

노동재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법률 초안-노동재판-노동신속화법

날짜 미상-1995년 중반 추정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내용_

1990년 이후 노동재판이 필요한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분쟁사건의 분쟁기간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 노동재판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합리화조치를 취하여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제출된 법안을 통해 노동재판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문서 번호 121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

1995년 7월 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브레멘 자유 한자시, 함부르크 자유 한자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내용_

서독 정부와 주정부들은 동독 출신의 판사 재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한다:

- 일반 코스와 속성 코스의 실행(행정법, 재정법,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 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주최하는 주정부가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교육 비용을 분담한다. 연방정부는 강사비의 절반을 부담한다.
-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 1990년도분은 1990년 10월 1일까지, 1992년도분은 1991년 2월 15일까지 예상 비용에 대해 알린다.
- 행정 협정에 관한 보충 내용

- 형사법 분야의 과정은 가입지역 출신의 판검사 및 앞으로 인수되게 될 판검사들을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27-329

문서 번호 122

브란덴부르크 주노동법원의 대표 한스 아이제만이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그라페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1995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법원 대표 한스 프리드리히 아이제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그라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의 주법원 대표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의해 제출된 초안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초안에 제시된 제안은 항소심(Berufungsinstanz)에서의 업무 경감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고등법원에서 단지 적은 수준의 업무 경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를 위해 별로 효과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 주법원 대표의 의견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문서 번호 123

사법 업무의 협력에 관한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시 간의 조약에 관한 법 초안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시정부,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딥겐,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법무 장관 브로이티감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사법 업무 협력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 관한 법의 초안이다. 동독의 사법 체계에서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은 라이프치히 지역법원이 담당했었다. 이 기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6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베를린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있고, 담당해야만 하는 사건의 수가 적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 제기되는 재판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베를린시에 조약 체결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약에 따라 베를린시는 이런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브란덴부르크주에 청구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베를린시가 갖기로 했다.

출처_ Abgeordnetenhaus von Berlin, 13. Wahlperiode, Drucksache 13/42

문서 번호 124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사통당 정권의 정권범죄(국경 난민에 대한 발사 명령) 가벌성

1996년 10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 구동독 군정책 지도부 케슬러, 슈트렐레츠, 알브레히트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국경에서의 총격 명령에 대해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동독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책임지는 문제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 3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청구자들은 주법원 판결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판결이 기본법 제103조 2항의 소급효 금지조항과 기본법 제25조의 국가지도부의 면책권 조항을 위배하는 판결이라 주장하였다.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시행법(EGBtGB) 제315조 1항과 형법(StGB) 제1조에 의거하여 동독법, 특히 동독국경법(DDR-GrenzG) 제2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행위는 행위 시점에 이미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들은 국경 문제에 있어 소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위의 재량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03조 2항에 의거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에 충실한 민주적 입법자가 제정한 형법에 담겨 있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를 통해 그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국가 권력자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서 범죄적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만들어 그것을 가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특별한 신뢰의 토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 기본법 제103조 2항에 근거한 엄격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독 정부 및 헌법상 기관의 고위 인사였던 헌법소원 청구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는 국제법의 일반적 규칙(면책권)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의 면책권이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가의 존립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_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Verfassungsbeschwerden am 24. Oktober 1996. zitiert in: Marxen, Klaus / Werle, Gerhard: Strafjustiz und DDR-Unrecht - Dokumentation, Band 2/2. Teilband: Aufrechterhaltung des Grenzregimes - Nationaler Verteidigungsrat. Berlin 2002. S. 608-641

문서 번호 125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민법 통합

2000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로타 드 메이제르 변호사

내용_

예상치 못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중요해진 대규모 업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일통일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 1976년 1월 1일 동독의 민법전을 통해 무효화된 독일민법전(BGB)은 1990년 10월 3일 5개 신설주와 동베를린지역에 재발효된다.
- 민법 통일의 의미: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어려운 과정을 법적으로 인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Privatautonomie)를 위해 국민을 해방한다.
- 민법 통일의 과정:

– 1990년 1월 1968년에 제정된 헌법 제12조 1항 삭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원과 광물, 발전소, 산업시설부터 우체국과 통신시설에 이르는 사유재산 소유가 불가능했다.

– 1990년 3월 7일 자 '인민 소유 건물 매매법'과 '기업 참여와 민간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 1990년 6월 17일 자 동독 헌법 기본원칙 제2, 3조: 토지와 땅,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소유와 동등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사유재산 소유가 보장되었다.

– 화폐, 경제, 사회통합 건설에 관한 조약을 통해 동독 규정의 전환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통일조약을 통해 지속되었다.

– 통일조약의 부록 II에는 동독에 의해 철폐되거나 통일될 동독법이 언급되어 있으며, 부록 III에는 동독이 법 적용 지역을 위해 새로이 입법해야 할 법이 정해져 있다.

– 통일조약: 원칙적으로는 서독의 법이 유효하며,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동독법이 신연방주를 위한 무기한 혹은 기간이 정해진 연방법이나 주정부법으로 신연방주지역에서 지속·유효할 것인지를 정해 두고 있다.

- 인민의회를 통한 민법전 개정

– 민법전 제17, 20, 22조 1절의 인민재산의 비분리성과 비부담성의 철폐

– 민법전 제46, 62, 69조 2절의 계약 자유 철폐

– 보험법 및 총 저당권법 통일

– 국가 저당법의 우선순위 철폐

- 미해결 재산문제 집중 논의: 부록 III
- 민법 단일화 과정에 있어 동독 정부는 재산 대상에 대한 동독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사법통일은 통일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제8, 9조
- 민법의 규정 통일: 부록 I 제III장 알파벳 B 이하에 규정

- 중요한 것은 민법전 도입법(EGBGB) §5 231조에 의거해 동독의 민법상 토지 및 건물 소유의 분리 가능성이 지속·유효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동독 민법전에서도 민법 제295조 1항이 토지 및 건물 소유의 통일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_ Erste Internet-Zeitschrift für Rechtgeschichte, http://rewi.hu-berlin.de/FHI; Vortrag gehalten am 15.11.2000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Potsdam

문서 번호 126

통일과정 연대기-1989.5.2-1989.11.1

2001년

담당자 / 기관_ 동독, 서독

내용_

1989년 5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동독(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정치적 변화와 서독의 사법 정책에 관한 연대기

- 1989.11.16: 사법 개혁 및 정치 형법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복권에 관한 비텐벡(Wittenbeck) 동독 법무부 차관의 발표
- 1989.11.30: 법무부 장관 회의를 통해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된 연방-주-실무단'을 설치. 1989년 12월 5일 제1차 회의, 1990년 1월 18일 사법 지원을 주제로 한 회의
- 1990.1.4: 예정된 동독과의 협상에 연방법무부가 참여하는 사안에 관한 연방법무부 측의 내부회의. '내독관계실무단' 설치
- 1990.1.24: 동독의 새 법무부 장관으로 쿠르트 뷘쉐(Kurt Wünsche) 취임. 정치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6만 명에 대한 복권 발표
- 1990.2.1: 정치권 최초의 킹켈(Kinkel) 서독법무부(BMJ) 차관과 펠러(Peller) 동독법무부 차관 간 회동
- 1990.2.13: 형법 지원에 관한 동서독 법무부와 주정부 간 제1차 전문가 회담
- 1990.3.5: 사법통일 실무단의 제1차 보고서 제출
- 1990.3.26: 미해결 재산문제에 관한 부처 간 회의. 주관 부처: 연방내독관계부
- 1990.4.25: 연방법무부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화폐통합 협상 속행, 사법통일과 개혁에 관한 동서독 법무부 간의 회담 속행
- 1990.4.28: 광범위한 동독 법조인 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동서독 법무부와 주정부 사법 행정부 간의 협정
- 1990.5.1: 미해결 재산 문제는 연방법무부가 관할

- 1990.5.9: 사법제도 구축 지원 및 입법 자문에 관한 5개항 프로그램: 뷘쉐(Wünsche) 동독 법무부 장관과 엥겔하르트(Engelhart) 연방법무부 장관 간 협정 체결. 서독의 법무부 전문가들은 동독 법무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함
- 1990.10.3: 연방법무부는 통일조약 제 15조에 따라 재판과 형 집행 분야에 있어 각 지역의 대변인과 담당자들을 전문적으로 감독한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221-232

문서 번호 127

국가협약을 토대로 하는 사법 분야의 법 개정

2001년

담당자 / 기관_ 서독 법무부, 동독 법무부

내용_

사법통일을 위해서는 법원조직과 소송법, 법조인 직업법의 개정이 시급했다.

-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독의 헌법과 법원조직법 규정이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 93조 3항 폐지
- 헌법 94-96조 개정
- 헌법 95조 3문 삭제

- 민사소송법의 근본적인 개정은 필수적이었다. 여러 규정들이 시장경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부합되는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했다.
- 판사 직업법

- 1990년 6월 8일 자 인민의회 결의안: 판사와 배심원의 임기 연장
- 1990년 7월 5일 자 판사법: 독일 판사법에 의거

제I부-판사의 독립성, 법과 권리, 그 한계에 대한 판사의 구속성

제II부-판사직 자격, 판사로의 이직 및 면직. 판사 임명은 법무부 판사법 제12조에 명시된 판사선출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결정

- 1990년 9월 13일 자 변호사법

- 독립적 사법 기관으로서의 변호사 직업법은 서독의 법에 맞춰 통일되었다.
- 변호사 이직 자유 보장

- 독립적 공증인 양성: 자가 사무실에서의 공증인 활동에 관한 1990년 6월 20일 자 규정

은 의뢰인에 대한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공증인의 위치와 업무,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59-64

문서 번호 128

사법보좌관법

2001년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 비히만, 위르겐 토마스

내용_

사법보좌관의 부족

- 의미: 신연방주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사법보좌관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 분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해결책: 일명 영역별 사법보좌관의 연구소 도입; 사법보좌관의 책임 영역 중 일부를 인수
- 재교육 조치: 분야별 사법보좌관으로 계획된 인력군을 위한 집중 과정과 (토지대장 혹은 상속 분야와 같은) 분야별 직무 병행 과정
- 1994년 6월 24일 자 사법보좌관법 및 기타 법 개정에 관한 법: 본 법은 분야별 사법보좌관의 투입과 직업교육, 재교육 및 '사법보좌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단순화
- 통일조약 부록I, 제III장 A부 제III, IV절에서 발췌한 첨부 EV: 주정부법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구법원 사무관들은 사법보좌관들이 재교육으로 인해 부재할 경우 그들의 업무를 대리한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7;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rpflg_1969/gesamt.pdf

문서 번호 129

연방법무부의 동독 판사와 검사 인수

200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내용_

- 판사와 검사 수의 부족으로 연방법무부 대표와 동독 협상 대표는 인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직 판사의 판결 집행에 합의하였다.
- 검증 목적: 인력 쇄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법제도 구축. 판사선출 및 검사임명위원회의 투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위원회의 결정은 각 주정부의 사법부를 통해 준비되었다. 신연방주지역에서는 지원자의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고 준비하는 예비검증지소가 설치되었다(판사법 §13).
- 결정 근거: 인사명부, 슈타지 활동에 관한 '가우크-관청(Gauck-Behörde)'의 정보와 복권 및 파면 소송 서류, 잘츠기터 소재의 동독 사법 불법 행위 자료보관소와 슈타우스베르크 (Strausberg) 소재 군기록보관소, 룸멜스부르크(Rummelsburg) 소재의 수감자 인사 기록의 정보
- 지원자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세 개인 청문회
- 이러한 검증의 출발점은 통일조약 부록I 제III장 A부 제III절 8번 y), aa)와 z), cc)에 나타난 규정이었다.
- 새로운 법규정을 위해 지원자 전원을 포함
- 변호사 혹은 공증인으로 직업을 변경해 인수율이 상이
- 판사 혹은 검사의 임명 철회는 통일조약 부록I 제III장 A부 제III절 8번 h), cc)에 나타난 규정에 따라 가능했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8-74

문서 번호 130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바이에른주의 경험

2003년 4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정치재단인 한스 자이델재단이 독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사법과 관련된 경험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 논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은 독일에게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가져다주었다. 사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한 편의 논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서독 두 국가를 통일하는 작업은 먼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의 틀 위에서 이루어졌다. 기본법에는 통일 방식을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23조와 새로운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는 방식의 146조 두 가지가 있었다.

나아가 사법통합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몇 가지 특정한 법률만 정해서 그것을 신연방주에 적용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신연방지역에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연방주를 위한 특수규정을 두는 방안이었다. 예를 들어 토지법, 형법과 같은 조항들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는 작센주와 튜링겐주의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했다.

출처_ Hanns-Seidel-Stiftung, Electronic Working Paper, Nr. 06-03

문서 번호 131

사통당 정권과 관련한 1989년 가을 이후의 사법적 청산과 그 한계

날짜 미상–2005년 추정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 법무 장관, 정권범죄수사본부장 겸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베른하르트 얀츠

내용_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Berliner Staatsanwaltschaft beim Kammergericht)에 설치되었다.
- 동독 정권과 관련하여 형법적 고찰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소위 동독의 배신자에 대하여 사법적 형식의 절차 이전 또는 그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행한 국가안전부 소속 인물들의 행위, 대내외의 정치적 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과거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행위였다.
- 형사소추 업무는 각 연방주 검찰청 중점수사부의 수사관할권(구동독 주정부 차원의 범죄 담당)과 베를린주 고등검찰청 및 연방검찰청(주로 첩보사건 관련 담당) 산하 정권범죄수사본부(후에는 제2 베를린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의 수사관할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 정권범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는 초기에 베를린주 검찰청 소속 검사 7인으로 구성되었다. 연방주법무장관회의에서 정한 최대 60명까지의 추가 인력이 모두 채워졌던 것은 1992년 잠시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정권범죄수사본부는 최대 정원수를 채우지 않았다.
- 수사를 위해 경찰에 정권·통일범죄 수사센터(ZERV: Zentrale Ermittlungsstell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가 설치되었다.
- 형사소추 과정의 장애 요인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소송 무능력이었다.
- 베를린 형사소추기관에 접수된 약 23,000건 중 16,503건은 중급(中級)의 정권범죄(특히, 슈타지 소속 인물에 의한 도핑, 법 왜곡 행위, 무력)였다. 이 중 261건은 기소 처리되었다. 내독 국경지대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된 6,429건 중에서는 112건이 기소 처리되었다.

출처_ Jahntz, Bernhard: Die Strafrechtliche Aufarbeitung des SED-Regimes seit dem Herbst ,89 und ihre Grenzen. http://www.fes.de/magdeburg/pdf/d_27_10_5_3.pdf

문서 번호 132

1945년 이후 정치적 탄압에 대한 보상의 차이

2006년 5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울리케 글라이니히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과 나치 체제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나치 체제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950년과 1960년대 서독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나치 체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면, 사회주의통일당의 희생자들은 생활 지원의 차원에서 보상을 받았다. 서독은 이미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통일당 희생자를 위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의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평가는 독일 전역을 관장하는 입법자들이 할 일이다.

1990년 9월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는 사통당-희생자들을 위한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통당 희생자들이 통일 이후 받는 보상 금액은 서독지역에서 법적인 오류로 감옥에 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이다.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통일조약 17조에도 소련 점령군과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_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Symposium zur Verbesserung der Unterstützung der Opfer der SED-Diktatur,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atur, Berlin

문서 번호 133

동독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사실과 통계

2007년

담당자 / 기관_ 법무부, 정권범죄수사본부, 신연방주 검찰청 중점수사부

내용_

- 형사소추에서는 다음의 범죄 유형을 구분하였다:

- 내독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 선거 조작
- 법 왜곡
- 밀고
- 국가안전부의 범죄
- 체포자 학대
- 도핑
- 직권남용 및 부패
- (기타) 경제범죄
- 간첩활동
- 기타

- 2005년 모든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었다. '형사사법과 동독 불법 행위(Strafjustiz und DDR-Unrecht)'라는 연구 프로젝트에 의하면 간첩사건 소송 외에도 피의자 총 1,731명에 대한 1,20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중 753명에게 벌금형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었다.

출처_ Klaus Marxen/ Gerhard Werle/ Petra Schäfter (Hrsg.). 2007. Die Strafverfolgung von DDR-Unrecht: Fakten und Zahlen. Berlin: Gutendruck.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문서 번호 134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의 과업 완수'

2008년

담당자 / 기관_ 니더작센 검찰

내용_

니더작센주 검찰은 중앙 증거 및 문서관리국(과거 중앙조사처)이 2008년 업무를 종결했다고 공지했다.

1990년 10월 통일 후, 관련 문서들은 형사소추와 판사의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형사법적 고찰이 종결된 후, 4만 2천여 건의 문서가 코블렌츠에 소재한 연방문서보관소로 옮겨졌다.

출처_ Staatsanwaltschaft Niedersachsen (www.staatsanwaltschaften.niedersachsen.de; Stand 11.08.2011)

문서 번호 135

연방주 법무행정청의 중앙조사처

2009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 전 고등검사 한스-위르겐 그라제만

내용_

중앙조사처(ZESt) 전임 부대표인 한스-위르겐 그라제만이 이 기관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중앙조사처는 1961년 11월 15일 빌리 브란트가 창안하여 법무장관회의를 거쳐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조직적으로는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 소속이었으나, 전략상으로는 연방법원 산하에 있었다.

중앙조사처가 맡은 임무는 예를 들어 국경 살인, 정치적으로 부당한 판결, 형집행 파행과 같은 구동독 측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지키는 일이었다.

주 정보원은 3만 4천 명에 달하는 보석 석방자들이었다. 중앙조사처는 4만 건가량의 자료를 수집했다.

중앙조사처는 구동독 정부에 의해 주권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1988/1989년 사민당이 집권한 연방주에서는 중앙조사처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출처_ Vogel, Bernhard / Piepenschneider, Melanie / Arnold, Klaus Jochen: „Orte der Freiheit und der Demokratie in Deutschland". in Konrad Adenauer Stiftung (Hrsg.). Sankt Augustin, 2009

문서 번호 136

뉴욕에서 포츠담으로-한스 오토 브로이티감의 기억

2010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전 법무 장관 한스 오토 브로이티감

내용_

여기에 제시된 자기기록적 자료는 전 브란덴부르크 법무부 장관이 기록한 것으로,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새로운 시작 시기인 1990년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주(州) 형성, 특히 법무 분야가 형성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의 법무 분야가 재건되고 형성되었던 내용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하였다. 법무 분야를 재건하는 시작단계 과정에서 그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했는가를 보여 준다: "서독 출신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이 중요한 책임 분야를 맡아야 하지만 동독 출신의 법률가들도 동일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다. 그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동독인을 계속 참여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기본 원칙을 그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처_ Bräutigam, Hans Otto. Von New York nach Potsdam – Ein Diplomat wird Landespolitiker. in: Von Gersdorff, Andrea / Lorenz, Astrid (Hg.), Neuanfang in Brandenburg. Potsdam 2010.

문서 번호 137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야당: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도 동독 슈타지와의 관련 여부를 검증해야 함'

2011년 7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야당(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경찰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판사 약 800명에 대해서 구동독 슈타지와의 협력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압력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경찰이 동독 슈타지 연루 여부를 조사받았으니,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민 정신으로 행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 분야 신뢰성에 이바지한다.
지금까지는 관청 대표에게만 이러한 검증이 가능했다.

출처_ Metzner, Thorsten. 2011. Opposition: Jetzt auch Stasi-Check für die Justiz. In: Potsdamer Neueste Nachrichten, 21.07.2001, S. 16.

문서 번호 1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법집행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진 전 독일 법무 교육

2011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전문대학교 마틴 클래쎈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법무전문대학교의 교원이었던 저자가 통일 이후의 경험을 개인적인 일화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저자는 통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온 젊은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 훈련시킨 것이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회상한다. 법률전문대학에서는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출신 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휴식시간에도 서로 섞이지 않았다. 학생들 간에 적대심은 없었지만, 동독지역 출신 학생들은 '이방지역'에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동독지역 출신 학생들은 3주에 한 번 정도 고향으로 돌아갔고, 집에 가서는 그들은 '서구화'되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그들은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모두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야만 했다. 교육 초기에는 동독지역 출신 학생들의 성적이 서독지역 출신 학생들보다 저조했지만 1995년에는 성적에 차이가 없었다. 탈락률도 차이가 없어졌다. 저자는 동서독지역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_ Fachhochschule für Rechtspflege Nordrhein-Westfalen. (Hrsg.). Erinnerungen 1991-2011. Bad Münstereifel, 2011

문서 번호 139

신연방주로의 판사 파견

2011년 1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에르빈 젤레링

내용_

이 문서는 2011년 11월 24일 슈베린에서 열린 독일 판사연맹 기념식에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지사의 환영사이다. 그는 환영사를 통해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주정부들이 부딪혔던 가장 큰 과제는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사법 체계와 법집행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사와 검사 중의 다수는 정치적인 경력으로 인해 새로운 사법 체계로 인수될 수 없었다. 통일 이후 새로이 구성된 신연방주들이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었다. 그래서 서독지역의 연방주

들이 이를 위해 도움을 주어야만 했다. 특히 재교육과 연수 인력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출처_ Deutscher Richterbund, http://www.drb.de/cms/fileadmin/docs/20_jahre_rede_sellering.pdf

문서 번호 140

신연방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011년 1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판사연맹 회장 크리스토프 프랑크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판사연맹 회장 크리스토프 프랑크가 2011년 11월 24일 슈베린에서 열린 신연방주 독일 판사연맹 구성 2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의 전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통일된 법치국가와 통합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 하나는 국가에 의해 행해진 불법 행위, 그로 인해 동독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한 피해자들의 복권 및 피해보상 그리고 주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이미 1995년에 우리는 사법 체계의 통합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독에서 법학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또는 평화적인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젊은 법조인들과 서독지역에서 온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서독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이 협력해서 신연방지역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들의 판결은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통일된 법률 체계를 독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통일된 법률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다.

출처_ Deutscher Richterbund, http://www.drb.de/cms/fileadmin/docs/20_jahre_rede_frank.pdf

문서 번호 141

작센-안할트의 20개 법원 건물

2012년 10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마틴 루터 대학교 교수 하이너 뢱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법무부가 발행한 팸플릿으로 작센-안할트주의 법원 중에 20개 법원 건물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1990년 이후 건물 건축을 위해 투자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용은 법원 1곳당 평균 60만에서 100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어떤 법원은 건물에 임차한 경우도 있다. 이 팸플릿에는 나아가 법원 건물의 향후 사용방식도 설명되어 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Justiz und Gleich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Referat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Hrsg.); https://mj.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J/MJ/publik/20_gerichtsgebaeude.pdf (Download 25.04.2018)

문서 번호 142

브란덴부르크주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 검토 문제

2012년 10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슈타지문서관리국 특임관 크리스티안 보스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과거 경력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의 과거 경력은 사법 체계와 변호사 직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경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검증된 사람은 변호사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다. 이런 투명성을 통해 변호사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과거 경력에 일절 문제가 없는 일종의 신원보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과거 경력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현재까지도 절차와 결과의 투명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공개된 결과 보고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법치국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인가를 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1990년 이후 이런 검증과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동독 체제하에서 비밀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

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허가 절차에 대한 검증과정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로 인해 과거 경력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사람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검증과정은 다른 신연방주의 상황과 아주 다르다고 한다.

출처_ Deutschland Archiv, 45. Jahrgang, 10/2012,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40072/schwierigkeiten-mit-der-wahrheit

문서 번호 143

통일 이후 사법 체계의 개편

2015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전 작센-안할트주 법무 장관 쿠어트 베커

내용_

이 문서는 2015년 8월 16일에 있었던, 작센-안할트주의 법무 장관이었던 쿠어트 베커 씨와의 인터뷰이다. 인터뷰의 포커스는 독일통일 이후 사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조망하는 것이었다. 베커 씨는 한국과 독일의 사법 체계 비교를 통해 독일 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사법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었다.

출처_ Becker, Curt: Manuskript für einen Vortrag vor koreanischen Beamten am Institut für Koreastudie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unveröffentlicht, 2015